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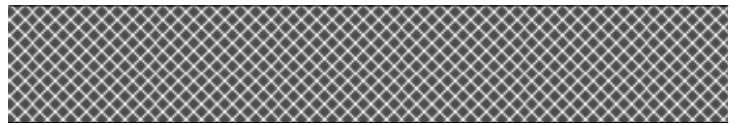
# 2018년 지방선거 공동공약 워크숍

- 일시 : 2018년 4월 4일(수) 오후 1시
- 장소 :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 회의실
- 주관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지역위원회
- 주최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2018년 지방선거  
공통공약 워크숍

# 순서







## □ 워크숍 진행 순서

13:00~ 인사말, 참가자 소개(각자)

---

13:15~ 2014년 지방선거 사회적경제 공약  
- 돌아보기 & 나아가기

---

13:45~ 2018년 지방선거 공약 개발활동 공유

1. 제도 전반  
- 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 류홍번
  2. 학교교육 관련  
-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주수원
  3. 협동조합, 마을, 농업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안인숙
  4. 지역별 논의 중인 공약  
- 연대회의 지역위원회 하재찬
- 

14:45~ 휴식

---

15:00~ 2018년 공통공약 제안 및 선정  
- 분임토의 및 종합 발표

---

17:00~ 지역사회를 바꾸는 좋은 공약  
- 발굴과 실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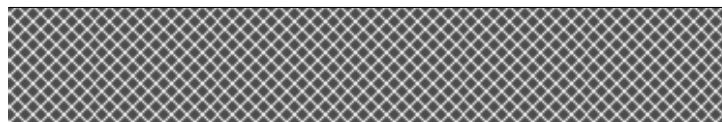
---

## ■ 자료집 순서

■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회적경제 공약 자료 .....	3
■ 2018년 공약개발 활동 공유	
1) 마을 부문 .....	95
2) 농업 부문 .....	104
3) 학교 부문 .....	123
4) 지역 부문 .....	126
■ 지역사회를 바꾸는 좋은 공약_ 개발과 실천	
■ 붙임자료	
1) 서울시 자치구별 사회적경제관련 기초현황 .....	165
2) 사회적경제 관련 자치법규 조례 .....	170

2018년 지방선거  
공동공약 워크숍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회적경제 공약**





## 2.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회적 경제 공약권고안

### 전국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 ❶ 행정조직 개편, 민관 거버넌스체계 수립 등을 통한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 강화

1. 사회적경제 통합 부서 설치 및 운영
2. 민관 사회적경제위원회 신설
3. 사회적경제 정책조정협의회 설치
4.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센터 설치
5.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6.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우선구매촉진 조례 제정

#### ❷ 사회적 경제 조직 역량강화와 기반조성

7. 공공분야 서비스사업의 사회적경제 조직 위탁 운영 확대
8. 유휴 공공자산 사회적경제 조직 위탁 경영
9.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중개센터 설치
10. 사회적경제 조직 생산품 복합매장 설치
11. 지자체 주관행사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 촉진

#### ❸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재생

12. '내 고향(지역)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조성
13. 사회적경제 우선투자지구 지정 및 종합지원 추진
14. 주민참여형 지역공동체회사 설립을 통한 지역재생

#### ❹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사회서비스 제공

15. 지역 돌봄 서비스를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강화
16. 주민들의 건강지킴이 '마을건강위원회'와 '건강 협동센터' 운영
17. 사회적경제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❺ 사회적 경제 교육과 인력양성

18. 초중고생 사회적경제 기초교육 실시
19.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 진로체험·동아리 활동·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및 활성화
20.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육성
21.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한 지원 및 거점 공간 제공



# 공약 01

## 사회적경제 통합 부서 설치 및 운영 **광역 기초**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사회적경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함으로써 행정에서 사회적경제 지원업무의 효율성 제고

### 1. 제안 배경

- 대부분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지자체는 사회적경제 정책수행의 핵심적인 주체이지만,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경제 담당부서가 분산되어있거나 일자리정책부서 등에 속해 있어 정책지원, 사업 효과 등에 있어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역사가 짧고, 지원정책도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 있는 등 사회적경제 정착 초기 단계에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주기적인 부서 이동으로 인해 사회적경제 담당공무원의 교체가 빈번하여 사회적경제 이해도 결여, 민관협업의 기능 저하, 지원정책의 일관성 부족, 사회적경제 지역기반 정착 저해 등의 문제점 존재

### 2. 제안 내용

- 사회적경제 행정·지원·정책·사업의 일관성·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통합 부서 설치  
- 사회적경제 전담·유관 부서의 신설·통합 또는 승격방식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부서별로 분산된 정책과 행정부서의 기능을 신설·통합 또는 승격하여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평가관리를 충실하게 하여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 모색
-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지원체계 수립에 대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도 이에 부응한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의 통합추진



# 공약

## 02

### 민관 사회적경제위원회 신설 **광역** **기초**

민간과 행정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조직으로 민관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립·운영

#### 1. 제안 배경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사회적경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민간과의 조정·협의를 위한 기구 필요

#### 2. 제안 내용

- 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조례안에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산하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련 내용을 포함
- 광역·기초지자체 사회적경제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민관협력을 필수사항으로 설정하여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 구조의 수립과 운영에 근거를 마련
- 신설되는 민관 사회적 경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50% 이상을 사회적 경제 조직의 대표자로 위촉하는 등 실질적 민관 협력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



# 공약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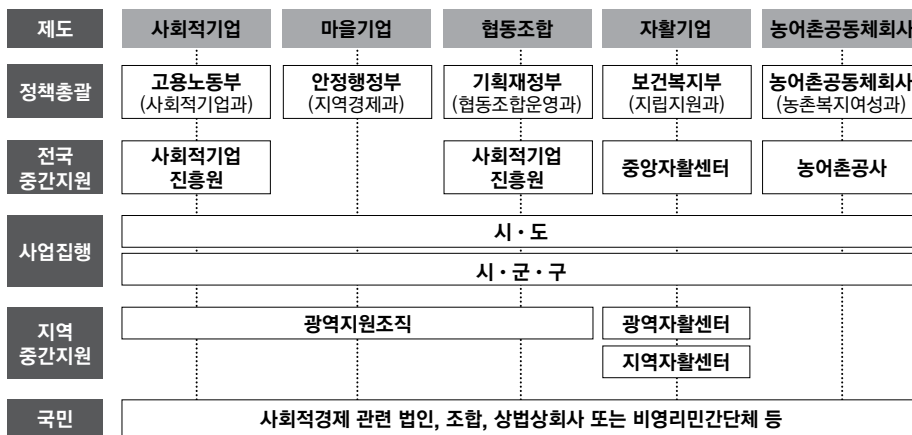
## 사회적경제 정책조정협의회 설치 **광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사회적경제 정책 협력을 위해 사회적경제 정책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

### 1. 제안 배경

- 현재 국내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전달체계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어 통합적 지원정책을 수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황
- 특히 기초, 광역 등 지역단위에서 수행되는 사회적 경제 정책의 융복합적 성격을 고려하면, 현재 전달체계는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

〈사회적경제 정책 전달체계〉



### 2. 제안 내용

- 사회적경제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과 부문 간 유기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정책을 협의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조정협의회'를 광역별로 설치
- 광역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각 정부부처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정책을 광역단위에서 통합하고, 개별 부처의 사업들과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정책간의 조정과 연계를 용이하게 지원
- '사회적경제 정책조정협의회'는 광역시·도의 관련 부서(과)와 중간지원조직 등 민간조직을 포함하는 개방형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
-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개편 등과 연계





# 공약 04

##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센터 설치 **광역** **기초**

자치단체별로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기능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 지원센터 운영

### 1. 제안 배경

-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되며 정부 정책도 소관 부처에 따라 분산되어 있지만,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의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등 동일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점에서 통합적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대두
- 특히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사회적경제의 부문별 특성보다 '지역'이라는 기반을 바탕으로 한 사업수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부문별로 나누어져 제공되는 지원기능은 중복과 비효율성이 발생

### 2. 제안 내용

- 사회적경제의 정책사업과 지원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센터'를 설치
- 통합 지원센터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위탁 혹은 민간협력 방식으로 설치하여 민간 사회적경제 영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운영
-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구로서 역할하게 하고, 기반조성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
- 지원센터 설치에 있어 단일한 성격을 가지도록 일률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지역의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환경에 따라 통합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적절히 설정
- 필요한 경우 특화된 서비스가 필요한 부문별 지원기관을 존치하고 통합 지원센터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구성



# 공약 05

##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광역 기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역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제정

### 1. 제안 배경

- 정치권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의 입법이 추진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는 상황
- 일부 선도적인 자치단체(충남, 서울, 경기 등)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중앙부처별로 나누어진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통합적 수행에 대한 제도기반을 구축
- 여러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사회적경제 관련조례(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관련 조례') 등과 연계하여 제5기 지방자치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을 확산하고, 지역별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할 필요

### 2. 제안 내용

- 각 자치단체별로 (현재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가 없을 경우)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가칭)를 제정
- 기본 조례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방향, 개념 정의, 지원체계의 틀 등 일반사항을 담고, 사회적경제 부문별·분야별로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정책 및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별 조례에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조례제정을 추진
- 기본 조례 제정준비는 자치단체(광역-기초), 자치의회(광역-기초), 그리고 해당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함으로써 실제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 <공약 6>에 언급되는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우선구매촉진 조례' 등 개별조례와 연계하여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자치단체 단위의 체계적인 법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추진



# 공약 06

##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우선구매촉진 조례 제정 **광역 기초**

자치단체별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

### 1. 제안 배경

- 인건비 지원 등 직접지원방식을 탈피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시장조성 등 간접지원방식으로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구매 시장 참여지원은 핵심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대두
- 정부와 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참여는 제한적인 수준
  - 2012년도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총 구매액 가운데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은 평균 1.2%
  -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1% 미만을 나타내어 사회적경제 기업제품의 공공구매가 아직 미진함을 드러냄.
-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관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가 가장 필요한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정책으로 확인(국회입법조사처, 2014년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장보고서).
-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과 시행이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따라서 향후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 대두

### 2. 제안 내용

- 각 자치단체(광역·기초)별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촉진 조례'(가칭)를 제정
- 조례는 자치단체(광역-기초)별 '사회적경제 육성계획'(가칭) 수립 등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조건들을 구축하도록 구성
- 조례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을 실현시키고, 공공구매 시장에서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리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자치단체의 공공구매 방식을 혁신하는 계기로 활용



# 공약 07

## 공공분야 서비스사업의 사회적경제 조직 위탁운영 확대 **광역 기초**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공분야 서비스 위탁 운영 확대로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등 공공성 강화

### 1. 제안 배경

-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수가 서비스 분야 업종에서 사업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예: 사회적기업 중 50% 이상이 서비스 분야)
- 정부와 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위탁할 경우 공공성 확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등이 긍정적 효과가 여러 사례로 확인됨.
  - 별도의 신규예산편성 없이 전달체계의 개편을 통해서 낮은 서비스의 질, 서비스의 안정성 부족 등 현재 드러나고 있는 공공서비스 시장의 단점을 극복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
-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공급이 활성화될 경우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상당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 경제의 사회서비스 부가가치 비중은 4.6%로 OECD 평균 6.7%보다 낮음.
  - OECD 수준으로 증가시킬 경우 사회서비스업 분야에서 약 32만7000명의 신규고용창출이 가능

### 2. 제안 내용

- 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사회적경제 조직에게 위탁하여 공급
  - 예: 생활폐기물 수집업 운반업(청소업) 신규 허가 시 사회적경제 조직에 위탁

특히 지역내 사회적경제조직이 공급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위탁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지역내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함으로써 사회적경제 공공시장 조성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 예: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청소용역업체 선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제한입찰을 실시하여,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조건 향상, 지역경제 공헌 등의 효과를 발생시킴.



# 공약

## 08

### 유휴 공공자산 사회적경제조직 위탁 경영 **광역 기초**

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 내 유휴공간 등의 공공자산을 지역내 사회적경제 조직이 위탁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1. 제안 배경

- 지역 내에 존재하지만 활용도가 낮은 유휴 공간 등 공공자산을 주민공동체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 공공기관 이전, 인구 유출, 상권 침체, 지역 산업 쇠퇴 등으로 인해 지역 내에 다양한 유휴공간이 발생하나 적절한 대책 없이 방치되는 경우에 주변지역을 전반적으로 쇠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지역활성화와 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유휴 공공자산을 관리 및 활용하는 정책방안이 필요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필요한 활동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문제 해결을 지원

#### 2. 제안 내용

- 공공성이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조직 또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조직 등에게 자치단체 또는 산하기관이 보유한 공공자산 중 활용도가 낮은 자산을 위탁하여 관리
- 유휴공간 등 공공자산을 위탁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반으로 활용
- 자산의 위탁비용은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화하거나,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무상대부 등으로 책정
- 공공자산의 위탁을 받은 조직은 주민과 지역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참여하는 '공유자산 공동체운영위원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체신탁' 등을 설립하여 공동체 자산화
- 위탁관리를 통해 행정의 유휴공간 관리 부담을 낮추고, 주민전체에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채널로 생산적으로 활용



# 공약 09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중개센터 설치 **광역시**

지역 내 사회적경제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을 구매하려는 공공기관에게 적절한 공급처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구매 중개센터'를 설치

### 1. 제안 배경

- 사회적경제 조직이 공공시장에 참여를 시도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수요와 필요제품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
- 반면 공공기관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공급 가능한 제품을 파악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시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애로점 발생

### 2. 제안 내용

-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적경제 공공시장 중개 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참여를 활성화
- '사회적경제 공공시장 중개센터'는 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간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역할과 함께, 판로지원 상담, 공공시장 관련 정보공유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
  - 공공시장 중개센터를 통한 공급역량 강화 등 컨설팅을 제공하여공공시장에 참여하려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등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



# 공약 10

## 사회적경제 조직 생산품 복합매장 설치 **광역 기초**

자치단체별로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을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경제 복합매장' 설치

### 1. 제안 배경

-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수행함으로써 감당해야 하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판로지원이 필요
  - 사회적경제기업이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판로개척의 어려움'이 꼽히는 등 판로지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핵심요소(2012년 수행된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총괄보고서')
- 현재 고용노동부와 일부 지자체 등이 복합매장을 설치·지원하고 있으나 양적으로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지역별로도 고르지 않게 분포하고 있는 상황(서울 10개점, 경기 8개점, 충북·충남·전북·광주·경남·울산·제주 각 1개점).
- 지방자치단체가 매장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역의 상품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한계를 노정

### 2. 제안 내용

- 각 자치단체별(광역-기초)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고 소개할 수 있는 '복합매장'을 설치·운영
- 복합매장은 제조상품의 전시·판매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사업의 홍보 등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
  - 사회적경제 조직의 다수가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현실을 고려
  - 지역의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
- 복합매장을 통해 공동마케팅, 공동브랜드 등 사회적기업 간 협업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사례
    - 예) • 충청남도 - "따숨" / • 대전광역시 - "같이유" / • 강원 - "마음고리" / • 춘천시 - "봄내가 자란다" 등
  - 이탈리아의 경우 국가차원의 사회적기업 브랜드인 'Welfare Italia'를 개발하여 대대적 홍보
- 해당지역의 기업, 대학,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단순히 사회적경제 제품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 각계의 자원과 연계하는 중심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추진
- 민간기업 또는 단체가 보유한 유희 시설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복합매장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세제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여 복합매장 확산을 유도
- '복합매장'을 단독(별도)매장으로 구성하기 어려운 현재 운영중인 대형 유통매장 내에 Shop-in-shop 형태로 설치하여 가급적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알려질 수 있도록 운영



# 공약 11

## 지자체 주관행사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 촉진 **광역 기초**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지역축제 등의 행사에서 지역사회 공동체성이 강화되도록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확대

### 1. 제안 배경

- 지자체 주관 행사 및 축제는 지역 사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획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지역사회의 참여가 강화되는 것이 당연
- 지역사회의 사회문제 해결을 주도한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 행사 및 축제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자체 주관 행사 및 축제를 의미 있게 만들고, 지역주민과 사회적경제기업간의 상호교류를 확대·강화할 필요

### 2. 제안 내용

- 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축제 등의 지역행사에 필요한 행사기획 및 운용, 콘텐츠 제공, 청소 및 시설물 관리, 방역, 행사 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 등 다양한 용역을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행사 운영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행사 참여를 제고함과 동시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확대에도 기여
- 많은 지역축제가 수도권 등지의 대형기획사 중심으로 기획, 운영되는 경향이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한 지역기업들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행사를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은 물론 지역의 우수기업들을 육성하는 효과를 창출
  - 행사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지도 제고 등도 가능
-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역축제 운영참여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평소 추구하던 사회적 목적을 통해 행사의 사회적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 가능
  - 예를 들어, 환경적 가치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행사 및 축제에 참여할 경우 해당 행사의 환경친화적 성격과 지역고용 창출을 강조하기 용이함.
  - 2012년 영국 런던올림픽의 준비와 운영과정에서 영국 정부는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를 달성하는 유산'을 남기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독려했으며, 실제로 사회적경제기업이 대거 참여하여 런던올림픽의 사회적 의미를 제고
- 자치단체별로 축제관련 사회적경제기업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광역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역축제 참여 등을 유도





# 공약 12

## '내 고향(지역)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조성 **광역 기초**

내 고향(지역)의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을 지역주민과 지역 출신의 출연을 중심으로 조성

### 1. 제안 배경

- 지역의 사회적 문제 해결,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자금의 수요는 상존하지만, 실제로 지역 내에서 이러한 수요에 부응해야 할 사회적 금융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금조달에 애로 존재
- 미소금융 등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전국단위의 금융시스템과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일부 만들어졌으나, 현장의 필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는 상황
- 정부 예산회계제도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탄력적이고 신속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성된 지방자치단체 기금이 존재하지만, 법·제도적인 한계와, 재원조달의 어려움, 자금 운용의 보수성 등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에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
-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사업체의 성격상 주식시장, 사채발행 등 일반적인 기업이 이용하는 자금조달 경로를 활용에 제약 존재
  - 사회적기업의 경우 이익배당 제한(배당가능이익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이 있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금융시장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낮거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취지가 자금조달에 제한요소로 작용
  -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출자를 통한 자본금 조성 외 재원조달이 용이하지 않으며 제약이 많음
- 이에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지역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지자체형 사회적경제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의제 해결에 앞장 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할 필요성 대두

### 2. 제안 내용

- 지역주민, 지역기업, 자치단체, 정부, 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이 함께 출연하는 공동협력기금인 '내 고향(지역) 사회적경제 발전기금'(가칭)을 조성
- '내 고향(지역)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은 지역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목적에 활용
  - 풀뿌리 지역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공간 지원을 위한 공동체 채권 발행,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채권 프로젝트, 지역 신용보증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소액자금 융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 기금의 조성에는 개인(지역주민과 지역출신 인사)의 기부 또는 신탁, 자치단체 및 지역기업의 출연, 지역주민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출자 등 가능한 모집수단을 모두 동원
  - 개인과 기업 등 자신이 속한 지역이 발전하기를 희망하는 공동체적인 의미를 강조하여 기금을 조성
  - 기금 조성 목적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상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임을 알림으로써 많은 지역주체의 참여 유도
  
- 기금의 운영은 민간과 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태로 관리, 운영하여 독립성을 확보
  - 기금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 및 조례 제정을 통해 기금 조성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격 부여
  
-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 발생 시 기부, 용자, 투자, 보증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통해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요 및 성장단계에 부합하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 기금의 법적 형태는 지역상황에 따라 적절한 형태를 선택
  - 일반적으로는 비영리 재단법인 또는 공제조합 설립방식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지만, 지역의 상황을 감안한 금융수단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법적 제약조건이 가장 적은 형태가 되도록 선택
  
- 기금을 통해 지역사회의 중요 의제들을 행정의 직접 해결하는 것보다 민간 주체들이 행정과 함께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홍보



# 공약 13

## 사회적경제 우선투자지구 지정 및 종합지원 **광역 기초**

도시지역의 원도심과 신도심의 발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원도심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우선투자지구를 지정하여 지원

### 1. 제안 배경

- 국내 대부분의 도시에서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지역 발전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
-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해소를 위해 뉴타운 등 물리적 재개발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재생 전략을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지역현실이 고려되지 않은 전략 등으로 인해 상당수가 진행되지 못하거나 실패하고 있는 상황
-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물리적 재생보다 지역주민의 수요대응과 지역공동체 복원을 핵심목표로 하는 '주민참여형' 지역재생 전략이 부각
- 주민참여형 지역재생 전략은 낙후지역의 주거지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공동체 회복 등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마을단위로 사회·경제적 재생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방식의 연계가 필요
- 하지만 현재 중앙부처간의 칸막이로 인해 마을만들기 정책과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의 일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으며, 지역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수행될 필요성 대두
- 따라서 원도심과 신도심간 격차해소를 위한 원도심 재생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지역재생형 주민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목표지역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개발하며 사업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하는 접근이 필요

### 2. 제안 내용

- 자치단체별로 공동화되고 있는 원도심과 인구과소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우선투자지구'를 선정하고 집중육성
- '사회적경제 우선투자지구'는 (1)원도심지역 가운데 기존의 산업구조 유지로는 지역재생 가능성이 낮고, (2)사회적경제에 대한 수요가 확인되며, (3)자치단체 내의 사회적경제조직이 보유한 자원 및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
- 우선투자지구의 재생과 개발을 위해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지구단위의 '사회적경제 창업 및 지역재생 종합계획'을 수립
  - 이 과정에서 주민조직의 참여와 지역개발형 사회적경제 조직(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전문성 연계 등을 담보하고 주민참여형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
  - 사업기간은 최소 5년을 원칙으로 하되 단계별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추진
  - 지원규모는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정하고, 별도예산 편성 등과 함께 주거지재생사업 등 기존 사업예산과도 연계

- 우선투자지구 내에서 소득활동이 필요한 주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창업하여 운영하고, 자원의 공동활용 등을 통한 주민 주도의 생산 및 재생산 기반 구축이 가능하도록 지원
- 지역 내의 대학, 연구소, 사회적경제협약체, 지원조직, 지역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주도로 창업된 지구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역량을 강화
- 필요시 법적 추진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계획에 사회·경제적 재생계획을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
-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전략 수립, 공동사업 추진, 기업 간 상호 시너지 효과, 규모화
- 시장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꾀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단지 조성



# 공약 14

## 주민참여형 지역공동체회사 설립을 통한 지역 재생 **광역 기초**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직접 주민들이 만들어나가는 지역공동체회사 설립 지원

### 1. 제안 배경

-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91%에 달하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많은 도시들에서 인구 감소, 산업의 이탈,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 쇠퇴 현상이 심각
  - 전국 144개 시 또는 자치구 중 96개(67%)가 도시 쇠퇴 징후 또는 진행지역으로 나타남(국토연구원 자료).
- 하나의 도시 내에 신도심과 원도심간 격차가 드러나는 도시 이중화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
  - 기반시설 면적에서도 구도심이 전국평균 10~15%인 반면 신도심은 45~50%를 차지하고 있음.
  - 쇠퇴도시는 농어촌지역의 생활 여건에 비해서도 열악함.
- 심각한 도시 이중화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재생의 기본 방향을 정부와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철거위주의 도시 재정비에서 벗어나 아래로부터의 주민주도로 경제·사회·문화 등 도시의 종합적 기능이 회복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필요

### 2. 제안 내용

- 주민주도형 사업을 통해 원도심을 비롯한 쇠퇴지역의 재생과 활성화를 주도하도록 '지역재생추진협의회'(가칭)와 지역단위의 '지역공동체회사(Community Business)'를 설립
- '지역재생추진협의회' 및 '지역공동체회사'의 구성과 운영은 민간과 행정의 거버넌스 구조로 진행하며, 지역사회 주체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하도록 지원
- 이 조직들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과정에서 쇠퇴지역의 결핍유형과 주민역량 향상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고,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지역재생 사업을 주민주도로 추진
  - 예: 성북구 장수마을, 은평구 산새마을 등의 재생사례
-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통한 사회적경제형 지역재생, 물리적 재개발보다 공동체 회복을 우선하는 순환 방식 재개발을 확대



# 공약 15

## 지역 돌봄 서비스를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강화 **광역 기초**

지역내 돌봄 서비스를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사회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제공

### 1. 제안 배경

-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자치단체의 돌봄 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 돌봄 서비스 기관은 이용자가 많은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도시와 농촌지역의 서비스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농촌지역의 경우 이용 가능한 돌봄 기관이 부족하여 주민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발생
  - 적합한 돌봄기관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따라서 지역에서 돌봄 영역의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을 잘 아는 돌봄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
  -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돌봄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연대화 도모

### 2. 제안 내용

- 지역내 돌봄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
- 지역에서 운영되는 돌봄서비스 관련 기관과 돌봄분야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협력을 통한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추진
-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돌봄서비스 공급 참여 확대를 위해 '바우처사업 연계 돌봄서비스 모델' 등을 추진
  - '바우처사업 연계 돌봄서비스 모델'은 '지역사회투자바우처'사업 중 고부가가치 돌봄 분야에 역량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하는 모델임.
  - 장애아동 치료 사업, 노인대상 치료 사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을 확대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등의 사업 분야가 가능
- 현재 자치단체 돌봄서비스 공급자 선정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방식을 도입
  - 현재 방식은 대체로 재정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사회복지관과 소규모의 사회적기업에 동일한 기준의 은행잔고 증명을 요구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돌봄서비스 공급 진입 기회를 차단하는 상황임.
  - 중앙정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한경쟁 입찰방식 등을 적극도입  
(공약 7. 공공서비스의 사회적경제기업 위탁 확대 참조)



# 공약 16

## 주민들을 위한 '마을건강위원회와 건강 협동센터' 운영 **광역 기초**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 돌봄서비스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을 전달체계로 한 통합서비스 제공

### 1. 제안 배경

-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애주기별 서비스 - 돌봄, 의료, 문화, 일자리 등 -을 제공하기 위해 개별적인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특히 서비스 공급에 특화된 전문성이 필요한 의료, 돌봄 서비스 등의 경우 더욱 개별적 공급의 비효율성이 높은 것이 현실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본수요인 인구가 많지 않은 농촌지역의 경우 서비스의 지속적인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수요가 충분한 도시지역에서도 서비스의 질 유지와 다양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
- 따라서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다양한 보건의료복지 관련 사회적경제조직을 한 공간에 입주시켜 서비스의 질 유지와 다양성 확보를 도모할 필요

### 2. 제안 내용

- 각 지역별 주민자치위원회 산하에 지역주민들과 서비스 운영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건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마을건강위원회가 운영하는 '건강 협동센터'를 각 동, 면단위에 설립
- 마을건강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이 지역(동네 단위)의 건강복지문제를 파악하고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
- '건강 협동센터'의 서비스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제공하도록 하여 일자리를 창출
- '건강 협동센터'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 보건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번기, 휴일, 야간 서비스가 가능한 구조로 운영
  - 제공이 필요한 서비스의 예 : 산모도우미, 영유아 재가 보육 서비스, 영유아 시설 보육 서비스, 방과 후 아동 돌봄 서비스, 노인주간보호 서비스, 농번기 농민 밀반찬 배달 서비스, 동네 식당 운영 등
- '건강 협동센터'의 운영을 시군구 건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주민중심의 의료, 건강증진사업 실행
  - 마을단위 건강반상회, 건강반장 활동 지원
  - 서비스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자원연계
  - 마을단위 건강증진 프로그램 진행
- '건강 협동센터'를 서비스 공급은 물론 주민 북카페 등 주민의 문화공간이자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공약 17

## 사회적경제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광역 기초**

경제활동에서 배제되고 있는 지역의 어르신, 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

### 1. 제안 배경

- 우리나라의 고령자 비율(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013년 기준 12.2%이며, 매년 빠르게 증가중임.
- 이처럼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상승하고 있으며,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 확보가 필요한 어르신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 노인 집단의 증가를 나타냄.
- 장애인의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3% 설정, 2014년부터는 50인 이상 민간사업장의 의무 고용률 2.7% 실시 등 제도상으로 장애인 고용을 늘려오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 장애인고용의 의무고용률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형태는 결혼, 출산, 육아부담으로 인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발생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 30년간 50% 내외를 유지한 채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하며, 고학력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에 있어 경력단절 여성의 발생·증가는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
- 여성의 일 참여를 방해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지역기반 여성 일공동체 방식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경제조직은 여성의 서비스 수요와 동시에 여성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생활경제 영역에서 빈번히 조직되고 있다는 점에서 취업곤란을 겪고 있는 40대 이상의 여성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이에 어르신과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이 필요하지만 고용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분야의 직업을 가지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함.



## 2. 제안 내용

- 일부 지자체에서 시니어클럽의 혁신 등을 성공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적경제기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지자체 및 지역자원의 연계를 강화하여 '자립형 어르신 일자리 모델'을 확대
- 기존에 성공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을 수행해온 지역별 자활센터 등 사회적경제 영역과 결합된 시장진입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취약계층 친화 사업장에 대한 '보호된 시장'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 우대 조치 시행
- 지역사회의 필요와 빈틈을 메우는 공익 노동에 어르신 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업무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혁신적 방식의 일자리를 개발하여 안정된 취약계층 고용체계 구축
- 필요시 지역특화형 사회서비스 사업개발을 위한 민관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
- 육아, 교육, 주거, 농산물·식품 등 생활용품 직거래 등 영역에서의 여성커뮤니티 활동공간의 확대 및 지원
- 자발적 품앗이 방식의 문제해결을 위한 시도 촉진
- 지역여성 협동조합 설립 및 협력 지원



# 공약 18

## 초중고생 대상 사회적경제 기초교육 실시 **광역**

함께 성장하고 협동하는 방식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의 사회적경제 교육을 실시

### 1. 제안 배경

- 상생, 연대, 나눔, 협동이 핵심인 사회적경제에 대해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이해하고 운영원리를 체화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할 필요
- 영국, 미국 등 사회적경제 선진국에서는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의 중요성과 혁신적 경제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게 하고, 사회적 경제 분야 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유도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양성의 통로로 활용 중
-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해 '함께 잘 사는 경제'가 가능함을 인식시키고, 지나친 입시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우리 청소년들이 협동과 우애, 민주주의에 익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움 필요성

### 2. 제안 내용

- 지역별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연2회(2시간) 이상 사회적경제 교육을 실시
  - 필요할 경우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 공약 19

## 사회적경제분야진로체험·동아리·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및 활성화 **광역 기초**

청소년들에게 사회적경제 분야의 진로체험과 동아리 결성,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등을 지원하여 진로선택의 폭을 확대

### 1. 제안 배경

- 사회적경제 분야의 세계적 확대추세를 감안할 때 미래의 직업으로서 사회적경제 분야 직업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정작 청소년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은 낮은 실정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을 학생 스스로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
-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진로탐색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으로서 문제해결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는 혁신적 교육방식이 필요

### 2. 제안 내용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지자체가 운영
-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 분야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하여 사회공헌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학습 및 연구, 체험활동 동아리의 결성과 운영을 적극 지원
- 각 학교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방과 후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책임성 강화
- 27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진행중인 청소년 프로그램의 확대



# 공약 20

##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육성 **광역 기초**

사회적경제, 지역문제 해결과 관련된 주민들의 학습동아리 운영을 지원

### 1. 제안 배경

-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 경제시스템이므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 자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
- 사회적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주민 스스로 학습욕구를 느끼고 사회적경제를 체험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사회적경제를 이해할 기회가 필요
- 사회적경제 학습과정의 지원은 주제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지역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협동적으로 주민이 함께 고민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만드는 효과
- 특히 주민 누구나 필요한 주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유연한 개방적 학습 형태를 제시하여 '평생학습'의 기제로서 기능

### 2. 제안 내용

-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학습동아리'를 결성하게 하고, 이미 결성되어 있는 학습동아리의 운영을 지원
- 학습동아리란 '일정한 인원의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주제에 따라 학습과 토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모임'을 의미
- 학습동아리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지자체가 지원
  - 예: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등록제를 통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를 각 자치단체별로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학습동아리에 대해 학습 공간, 교육지원인력, 학습교재 및 학습 커리큘럼, 학습자료, 교수학습비용 등을 선택적으로 지원
- 사회적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문제 발굴 및 해결에 관한 주제별 학습동아리의 결성과 운영을 독려
- 실천적인 학습동아리 활동과, 실천기반 학습체계 구축(action learning) 방식의 학습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실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을 촉진할 수 있는 형태로 학습동아리 운영을 추진



# 공약 21

## 청년리더 육성을 위한 지원 및 거점 공간 제공 **광역 기초**

지역의 청년리더 육성을 위한 기금인 '지역인재 펠로우십'을 조성하고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청년 및 지역주민의 거점 공간을 제공

### 1. 제안 배경

- 지역인력의 유출로 인한 지역 성장 잠재력의 감소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임.
- 특히 청년층 인재가 출신지역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외지로 가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최근 일부 청년층을 중심으로 농촌, 지방도시 등 지역을 기반으로 진로를 설계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책이 없어 지역에 자리잡으려는 개인적인 의지에만 의존하는 상황임.
- 실업문제 해소, 주거문제 해결 등 사회전반에 청년층의 정책 요구와 참여는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청년과 지역을 매개하는 적절한 정책수단이 부재함.

### 2. 제안 내용

- 잠재적 지역리더로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생활비, 활동비 등을 일부 지원하여 외지로 갔던 청년들이 지역에 돌아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인재 펠로우십(fellowship)' 프로그램 운영
-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형 청년단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립형 청년단체, 마을살이를 위한 공동체형 청년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청년 거점 공간' 구축
- '청년 거점 공간'은 청년단체 및 청년인력의 활동공간으로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청년스타트업 기업들이 창업을 위해 필요한 사무공간으로도 사용하게 하고,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진행
- '청년 거점 공간'의 조성은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의 유휴공간들을 활용하고, 조성 후 운영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공간(Co-working space)가 되도록 운영
- '지역인재 펠로우십'과 '청년 거점 공간'을 통해 학업,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이동이 잦아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만들기가 어려운 조건에 놓인 청년층의 지역정착을 위한 유인동기를 제공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는 청년인재를 육성

## [부록 2]

# 사회적 경제 관련 기관별 지방선거 공약제안 모음

1.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 2014 지방선거 사회적기업 전국 공통공약
2. 협동조합연구소 - 2014 지방선거 협동조합 전국 공통공약
3.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2014년 제6차 동시 지방선거 자활사업 정책공약제안(안)
4.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주민참여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 제안
5. 대전충남충북세종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정책기획단 - 대전충남충북세종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정책공약
6. 경기도 사회적경제 대표자회의 - 경기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매니페스토 10대 공약권고안
7. 기타 추가제안 공약안 (전국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수집)

##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2014 지방선거 사회적기업 전국 공통공약]

❶ 사회적기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노력 확대

- 취약계층 일자리 지속가능성 제고
-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사회적기업의 전략 및 비전과 결합

❷ 사회적기업의 판로지원

-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설치
-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촉진 조례 제정

❸ 초·중고 사회적경제 교육 확대

- 초·중고생 사회적경제 기초교육 전면 실시
- 학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 연계 진로체험·동아리·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및 활성화
- 테마형 수학여행 확대

❹ 유·휴 공공자산의 사회적기업 위탁 경영

- 유·휴 공공자산 사회적기업 위탁 경영
- 사회적기업 공유자원허브 설립
- 1공공기관 1사회적기업 매점/카페 설치

❺ 사회공공서비스분야 사회적기업 위탁운영 확대

- 공공분야 서비스사업의 사회적기업 위탁운영 확대

❻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및 사회적경제위원회

- 광역단위의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❼ 사회적경제 관련 행정 통합 및 지원체계화

- 사회적경제 통합 부서 및 통합지원기관 설치
- 사회적경제 전담공무원(우수인력) 장기간 배치
-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센터 설치

❽ 지자체 형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 민관 합동 로컬 거버넌스 형 공동 협력기금 조성·운영

❹ 지자체 주관행사 및 축제에 사회적기업의 참여 촉진

- 행사·축제 환경관련 용역 사업 사회적기업 참여 보장
- 행사·축제 주요 콘텐츠에 관련 분야 사회적기업 참여 보장

❺ 사회적경제 지역재생 거점지구제 도입

- 사회적경제 우선투자지구 지정 및 장기적 종합지원 추진



##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근대 정부의 산업화 전략과 더불어 특유의 국민성을 기반으로 빠른 경제적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규모나 인구로 보았을 때 아시아 속 작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과 경쟁을 펼치며 선진국의 반열(GDP 15위, 2013년 기준)에 올라있다. 하지만, 국가의 경제적인 성공이 국민의 행복과도 직결될까? 국가가 아닌 국민으로 눈을 돌리면 현실은 초라해진다. 경제성장을 위해 달려온 우리나라는 국민의 삶, 국민의 행복에 관한 성적표에서 거의 낙제 수준이다.

국가 GDP에 비해 개인 GDP는 33위로 추락하고, 2013 UN 세계행복보고서에서의 순위는 41위에 머무른다. 2012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혼률 1위(11만 4,300여 쌍), 이에 따른 가족의 해체로 인한 노인 빈곤율 1위(50.1%, OECD 평균 4배), 비정규직 비율 1위(49.4%), 고용안정성지수 36개국 중 최하위, 8년 연속 자살률 1위(인구 10만 명 당 28.1명), 노인 자살률 1위(인구 10만 명 당 81.64명) 등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여기에 취업·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삼포 세대까지 등장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마저 도래하고 있어 국가의 경제적 성공과는 반대로 불행한 국민들이 계속해서 양산된다.

불평등 구조도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2년 노동소득분배율(1)은 59.7%(OECD 평균 70%)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상위 100대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52.1%, 20대 기업은 49.9%로 대기업으로 올라갈수록 근로자에 돌아가는 몫의 비율은 현저히 줄어든다. 반면 2012년 기준 45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313조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183조 861억 원, 이 중에서도 삼성의 사내유보금만 101조 6512억 원에 달하며 경제순환의 막대한 피해를 가늠케 한다.

자본이 순환되지 않고 기업으로의 일방적인 흐름은 경제적 양극화 및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로 직결된다. 여기에 대기업 중심의 고용 없는 성장은 저성장시대를 주도하고 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이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악순환을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물론 우리나라에 국한된 현상만은 아니다. 다만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에서의 사회적·경제적 병폐가 우리나라에서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날 뿐이다.

OECD는 대기업과 대도시에 집중되는 경제적 순환 구조를 탈피하고자 지방화 전략의 원칙을 내놓았다. OECD는 지방화 전략의 원칙으로 1) 혁신에 기반을 둔 양질의 일자리 창출, 2) 기술, 고용과 관련한 통합적 서비스 구축, 3) 파급효과가 큰 부문에 선별된 재정 투자, 4) 지역 내 기업이 정신의 고취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이 의미하는 것은 지역의 경제발전과 이를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 전체 국가 수준의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있어 좋은 지역거버넌스의 구축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 거버넌스의 구축에 있어 가장 현실적 모델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경제 모델이다(경기도 사회적경제 실태와 정책방향, 최석현 외, 경기개발연구원, 2013).

사회적경제의 중심에 있는 사회적기업은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지만, 기업이 추구하는 주요 목적이 이윤 창출 극대화가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목표의 달성이며, 사회적 소외와 실업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공익적 활동을 하는 민간 조직 또는 기업’으로 OECD는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기업과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중앙 중심의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삶의 질 영유 보장을 목표로 지역에 뿌리를 내리며 상생의 경제를 열어가는 것이 사회적기업이다. 자본주의에서 내몰린 소외된 계층을 끌어안고 기업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활동으로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를 펼쳐온 결과, 최근에는 여야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사회적기업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회 차원의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 구성을 서로 제안하였다. 이 일이 있기 이전에도 국회 사회적경제 연구 포럼이 구성되었으며, 여당의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발족,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사회적가치 기본법' 및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관한 법안 초안 연구,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법제화 등 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초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도 말미암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경제적·사회적·지역적 보완으로 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이 핵심적 역할을 해낼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경제적·사회적·지역적 역할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열악한 생태계의 환경이 발목을 잡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사회적기업은 기업으로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과 같은 공공성의 사회적 목적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사회적기업은 그 자체로 공공성의 확보와 경제·복지·사회 정책으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에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정책, 감시·평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노력이 기울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본업과 연관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는 것은 공공기관 입장에서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책임 제고방안, 김지숙, 대통령실 기획관리실, 2011).

사회적기업이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고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사회적기업 생태계 마련을 제고하여야 한다. 단지 민간주체의 사회적기업과 정부 중심의 사회적기업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회적기업이 지역을 무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무엇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사회적기업 발전에 앞장서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김정열 상임대표, 이하 한기협)는 2014년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앞서 사회적기업 당사자의 합의와 사회적기업 전문가의 연구 결과물로 빚어진 '2014 사회적기업 전국 공통공약'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가 공약 및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앞으로 제안할 '2014 사회적기업 전국 공통공약'은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제안이다. 전국을 단위로 하는 공통공약이기에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보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내용 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광역 및 기초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는 전국 공통공약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공약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기협은 공약 제안을 통해 지방선거의 입후보자가, 나아가서는 지방선거의 최종 당선자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2014 지방선거 사회적기업 전국 공통공약'의 수용과 실행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적 문제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

1) 노동소득분배율은 임금근로자의 급여와 기업의 영업잉여의 합에서 임금근로자 급여의 비율을 뜻한다. 즉 기업의 이익 가운데 근로자의 임금으로 돌아가는 몫을 비율로 보여주는 것이다.

## 공약 1. 사회적기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노력 확대

- 취약계층 일자리의 양적 확대 전략에서 지속가능성 제고 전략으로 전환 선언 필요
- 공공근로사업, 자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사회적기업의 전략 및 비전과 결합하여 혁신

### 1) 제안 배경

- 그간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양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이었으나 일자리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음
    - 특히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단기적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는 유효한 수단이지만 기업의 경쟁력과 사회적 가치 창출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예비사회적기업 외에도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인큐베이팅 단계의 공동체 기업들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 공동체의 관심이 늘어나야 함
  -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취약계층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 지난 4년간의 정책 노력을 계승하면서 앞으로 4년 동안 취약계층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비전을 선포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할 필요 있음
- ☞ 2013년, 사회적기업은 근로자 수가 총 22,533명이고, 이 중 취약계층은 13,661명(60.6%)으로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대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하지만, 2007년 사회적기업의 평균 유급근로자 수가 50.8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3년 5월 평균 유급근로자 수는 23.3명으로 떨어짐. 이것은 사회적기업의 양적 확대와 취약한 수익기반 때문으로 해석. 또한 사회적기업 수 증대를 차치하더라도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면 기존의 사회적기업 수만으로도 일자리 창출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가 가능함

### 2) 세부 내용

- 지역 내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단순한 소득보조에 그치고 일회성 사업에 머무르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새로운 전략 수립
  - 공공근로사업의 일자리 디자인을 혁신하여 경력을 쌓고 숙련을 쌓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하는 재구성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일자리 전환을 수행하고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
  -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지속적인 시민들의 필요가 확인되는 사업들은 지자체 정규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행정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사업 중 일부는 사회적기업을 통해 수행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참여하는 자활사업을 통해 우수한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창출된 전통을 계승하여 취약계층이 스스로 자활, 자립하는 자조 기업(self-help firm)에 대한 적극적 지원 강화
  -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재점검하고 취약계층 주도의 자조 기업이 인큐베이팅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 인큐베이팅 및 지원 기능 강화
- 일부 지자체에서 시니어클럽의 혁신 노력을 통해 성공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적기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 및 지역자원의 연계를 강화
  - 소득보전기능에 그치고 있는 저생산성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재편하여 근로무능력 노인에 대한 현금복지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확대하는 노인 관련 지자체 정책의 혁신이 필요

## 공약 2. 사회적기업의 판로지원

- 사회적기업 상품·서비스의 복합매장(상품·서비스의 전시·홍보·판매, 정보공유, 소통 공간) 설치·운영 지원
- 공공시장 판로확대 및 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립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 1) 제안 배경

□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가·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목적을 안고 감당해야 하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판로지원이 필요

☞ 2012년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총괄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기업가의 전수조사에서 기관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판로개척의 어려움' 이 45.8%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부족' 이 17.3%, '근로자의 역량 부족' 이 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판로확대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복합매장 등의 설치·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양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지역별로 고르지 못한 분포(서울 10개점, 경기 8개점, 충북·충남·전북·광주·경남·울산·제주 각 1개점)를 보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판로지원을 할 경우 지역상품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사회적기업의 업종 구성으로 볼 때 제조업종의 상품의 경우 소량 생산과 직접 판매중심으로 지역별로는 품목의 수가 제한적일 수 있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5개 오프라인매장(복합매장 7개, 스텝숍-미니스토어 18개)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 10개의 판매장 또는 스텝숍을 운영하고 있으나 판로확보에 크게 미흡한 수준

□ 지자체에서 사회적기업의 판로지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사회적기업 친화적 공공시장 조성이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2012년도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총 구매액 가운데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은 1.2%에 그침. 지역별로는 강원도 0.69%, 경기도 2.25%, 경상남도 0.33%, 경상북도 0.54%, 광주광역시 3.18%, 대구광역시 0.98%, 대전광역시 3.36%, 부산광역시 1.35%, 서울특별시 0.7%, 세종특별자치시 0.24%, 울산광역시 0.64%, 인천광역시 1.77%, 전라남도 0.95%, 전라북도 3.75%, 제주특별자치도 1.3%, 충청남도 1.02%, 충청북도 1.97%의 구매 실적비율을 보이고 있음

☞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현황: 광명시, 서울시 도봉구·성북구, 완주군 4개의 기초자치단체만이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 현황 -광역자치단체 : 강원도, 경기도, 광주시, 인천시, 충청남도 등 5개기초자치단체 : 광주시 북구, 서구, 서울시 성동구, 아산시, 안동시, 인제군, 천안시, 화성시 등 8개

### 2) 세부 내용

□ 사회적기업 상품·서비스 복합매장 설치·운영 지원

-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 제품의 개발 및 복합매장 등의 설치·운영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함
- 민간업체의 유희 시설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자원 연계 방안으로서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사회적경제 조직의 다수가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조상품의 전시·판매 이외에도 서비스사업의 홍보, 비즈니스 플랫폼, 커뮤니티 공간 운영 등의 복합매장 구성이 바람직할 것임

□ 공동마케팅, 공동브랜드 등 사회적기업 간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기업, 대학 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 각계의 협력·지원 필요

☞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기업 공동브랜드: 충청남도 - 따숨/ 대전광역시 - 같이유/ 강원 - 마음고리/ 춘천시 - 봄내가 자란다

☞ 이탈리아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기업 브랜드 'Welfare Italia'를 개발하여 대대적 홍보

- 사회적책임조달 관점에서 사회적기업 친화적 공공시장의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경제) 제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
  - 사회적기업이 지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단위에서의 판로지원이 필요
  - 지자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판로지원의 방안으로 사회적기업에 우호적인 공공조달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지자체 별로 사회적기업(경제) 제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기회 확장 도모
    -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 지속될 필요가 있는 정부의 지원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가 2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인건비 지원이 20.6%, 사회적가치의 공유·확산 및 환경조성이 14.7%로 나타남. 가장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정부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17.9%)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국회입법조사처, 2014년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장보고서)
  - 사회적기업(경제)을 위한 ‘사회적경제 공공시장 중개 센터’ 를 설치하여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활성 정책 보완
    - 사회적기업에서는 공공기관의 수요 제품을 파악하기 어렵고, 공공기관에서는 사회적기업에서 공급 가능한 제품을 파악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시장을 형성하는 데에 애로점 발생
    - 광역 단위로 ‘사회적경제 공공시장 중개센터’ 를 설치하여 공공기관과 사회적기업(경제)의 수요와 공급을 매칭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공약 3. 초중고 사회적경제 교육 확대

- 초중고생 사회적경제 이해를 위한 기초교육 전면 실시
- 학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 연계 진로체험 교육 및 동아리 활동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 테마형 수학여행 확대

### 1) 제안 배경

-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해 사회적 가치창출과 혁신적 경제활동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지나친 입시위주의 경쟁으로부터 협동과 우애,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움
- 청소년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를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진로탐색을 지원함

### 2) 세부 내용

- 초중고생 사회적경제 이해를 위한 기초교육 전면 실시
  - 초중고생 연2회(2시간) 이상 사회적경제 교육 실시 조례 제정
    - 이를 위한 교재 제작 및 보급
      - ☞ 영·미 등에서는 사회적기업가 학교,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교육부 및 지방 교육청 단위에서는 관내의 공립학교들이 Outside the Classroom이라는 사회적기업의 인터넷 기반 교과목 구매에 대한 지원 시행, 영국은 교육기술부가 초중고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가 관련 자료를 배포·교육
      - ☞ 그리스, 고등교육으로 사회공동체(Social Amphictiony)인 사회적경제를 위한 학교(School of Social Economy) 설치·운영
  - 매점운영, 교복 등 물품 공동구매, 지역사회 가이드 등을 위한 학교협동조합 설립 지원
    - 협동조합 설립, 운영 참여를 통한 교사, 학부모, 학생간의 협력과 연대의식 강화
    - 협동조합 교육지원을 통해 학교 구성 주체들의 건강, 참여, 자치능력 강화
    - ☞ 영국 내 협동조합 학교는 2013년 기준 약 450여개
- 사회적경제조직 연계 진로체험 교육 및 동아리 활동 지원
  - 사회적기업 탐방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기업 연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사회적경제 관련 학습 및 연구, 체험, 활동 동아리 지원
    - ☞ 울산시교육청·사회적기업개발원 진로직업체험처 개발 업무협약으로 중·고등학생 대상 사회적기업 모의 창업 프로그램(월 2회\*3시간, 멀티미디어 활용 실습) 운영
    - ☞ 서울시,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 작업장학교, 네트워크학교, 일일직업체험프로젝트, 직업체험캠프, 창의캠프, 토요일진로학교, 진로교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경제조직 연계 방과 후 프로그램 활성화
  - 방과 후 프로그램에 교육분야 사회적 참여기회 확대로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책임성 강화
- 테마형 수학여행 확대
  - 농촌과 지역 커뮤니티 경제, 과학과 생태, 역사문화 등 테마형 수학여행의 확대 실시
  - 학생 참여형 좋은 수학여행 경진대회 실시

## 공약 4. 유휴 공공자산의 사회적기업 위탁 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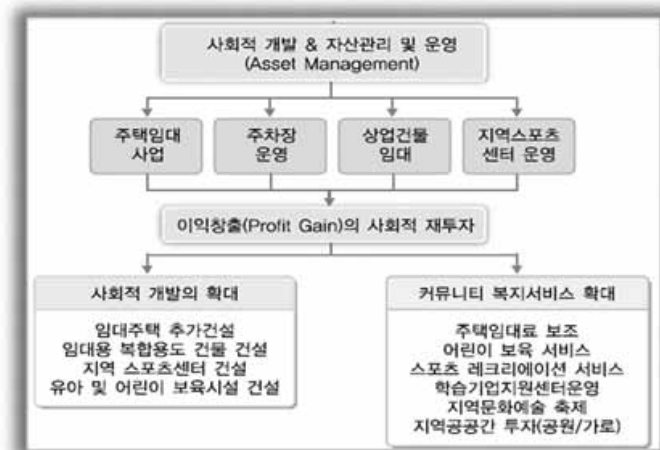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소유한 유휴 공공자산이나 관리비용 적자발생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하여 사회
- 적기업의 자산위탁 경영을 통한 지역사업 활성화 및 공간운용 수익금 이용한 내부 비용이전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자산운용을 혁신
- 사회적기업 공유자원허브 설립
- 1공공기관 1사회적기업 매점/카페 설치

### 1) 제안 배경

- 도시 내 방치되어 있는 유휴공간의 주민공동체 자산화 필요
  - 공공기관 이전, 인구 유출, 상권 침체, 지역 산업 쇠퇴 등으로 인해 도시 내 다양한 유휴공간이 발생하나 적절한 대책 없이 방치되는 경우에 주변지역에 악영향과 쇠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함. 이에 도시 근린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재생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유휴 공공자산을 관리 및 활용하는 정책방안이 필요
  -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협력의 공간을 만들고 지역사회 내 사회적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공간경영을 추진하는데 지역고용과 자립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공간 코디네이팅 필요
- 사회적기업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들이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술적 자원과 융합하는 기술 집약화 인프라가 필요
  - 기술집약화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노동생산성을 향상과 품질경쟁력 제고
  - 기술과 결합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고도화 필요
  - 이에 지역사회가 보유한 다양한 민간 자원을 활용한 공유자원 허브 필요
- 공공기관 근로자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부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윤리적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매점/카페 설치 필요

### 2) 세부 내용

- 커뮤니티시설의 공동체 자산화 및 공동체신탁 설립 근거 마련
- 지역별 사회적경제 조직 및 주민공동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유자산 공동체운영위원회’ 를 조직하여 커뮤니티의 공간 자산 경영을 위탁
  - ☞ 지역자산을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의 성공적 모델이 되고 있는 Locality의 경우 잉글랜드 지역 461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1,100억원 규모의 커뮤니티 자산을 소유/관리/개발하여 자립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 커뮤니티 시설의 사회적기업 점유/관리/활용/개발을 위한 관리기구 설치 근거 마련<sup>2)</sup>

-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의 ‘(가칭)공동체신탁’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등 개정
- 건축물 및 토지 대장에 유희공간 관련 정보를 기재하고 지자체별 행정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현황 관리체계 구축

□ 사회적기업 공유자원 허브 구축

○ 사회적기업들의 기술융합형 창업 지원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혁신 LAB 설치

- 사회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각종 디지털장비 (레이저 커터, 3D 프린터, CNC 조각기 등)와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비즈니스로 만드는 혁신적 공유작업장을 지자체별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사회서비스업종 사회적기업의 부가가치 제고

- 기술보유자, 디자이너, 교육자, 사회적기업가가 협업하는 기술교육&창작 워크숍 지원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활용도가 높고 보다 생태적인 적정기술<sup>3)</sup> 개발 및 보급

- 신재생에너지 개발설치업종, 노후주택 에너지저감 건축업종,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이동보조기구 국산화 업종 등 적정기술을 개발, 활용 가능한 사회적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기술이전을 돕는 적정기술 연구기반 구축

○ 사회적기업 공유경제<sup>4)</sup>망 구축

- 공동 물류배송시스템 구축 지원 : 공공이 보유한 유희 공간 및 운송시스템을 연계하여 업종별 사회적기업들의 공동 물류 창고 및 배송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제조유통 기반의 사회적기업의 비용 감축 및 협력 기반 조성
- 고가 장비 공유경제망 구축 :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홍보나 판촉 행사에 필요한 물품(행사 천막, 판매대, 월동장비, 음향기기, 탁자의자 등), 폐업한 사회적기업들이 사업개발비를 활용해 구입했던 고가의 기계장치 등을 창업기 조직들이 저가로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재활용 소재은행 운영 : 소재 수급과 가공 비중이 크고 수율이 낮은 소재 재활용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공간 활용의 한계를 겪고 있는 재활용 디자인 기업의 소재 보관 및 가공 시설 운영

□ 1공공기관 1사회적기업 매점/카페 설치

- 공공기관 근로자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사회적기업 제품 이용을 통한 윤리적 소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사회적기업 매점 또는 카페 설치 필요<sup>5)</sup>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매점/카페 설치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판로지원, 경영개선 등을 도모하고, 더불어 매점/카페 운영 근로자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

---

2) V.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 국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대부에 관한 실질적 지원대책 미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사업장 또는 시설·장비로 활용하는 사례는 거의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음, (2014. 2. 28, 국회입법조사처,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적정기술은 슈마허(E. F. Schumacher)의 ‘중간기술’ 개념에서 유래함, 중간기술은 현지 재료와 소자본, 비교적 간단한 기술을 활용하여 그 지역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규모의 생산 활동을 지향하는 기술을 의미

4) 공유경제,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로런스 레식 교수가 개념화한 것으로 개인이 구입하여 소유한 제품을 여러 사람이 대여방식을 통해 공유하며 사용하는 협업소비를 의미함

5) VI. 지원제도 개선방안: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유희시설 등을 활용하여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14. 2. 28, 국회입법조사처,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약 5. 사회공공서비스분야 사회적기업 위탁운영 확대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개발과 판로 지원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
- 서비스 분야에서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공공분야 서비스사업(보, 교육, 돌봄, 의료, 복지) 사회적기업 위탁운영 확대

### 1) 제안 배경

- 현재 사회적기업 중 50% 이상이 서비스 분야이고, 공공사회서비스는 사회적기업의 발전과 함께 사회적목적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위탁으로 공공성 확보 및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안정된 공공시장 제공
  -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서 광역단체장의 강력한 의지로 공공서비스 시장의 단점을 극복하고 공공성을 높일 수 있음
- 우리나라 경제의 사회서비스 부가가치 비중은 4.6%로 OECD의 평균인 6.7%에 훨씬 못 미친다. 하지만 이것을 OECD 수준으로 올리면 부가가치 약 24조 원, 사회서비스업 32만7000명의 신규고용창출로 이어짐
  - ☞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제공 고용-복지 연계모델로 인한 각 나라별 사회적경제의 고용비중은 스웨덴 11.2%, 핀란드 7.7%, 덴마크 7.2%
  - ☞ 프랑스는 서비스 관련 25,000개 사회적기업, 30만 명의 일자리 창출(2010),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소속된 민간단체의 재원조성은 약 1/3은 기초 지자체, 주, 도, 중앙정부 등 공공부문과의 거래를 통해 조달

### 2) 세부 내용

- 사회적책임조달 정책에 따른 공공서비스 사회적기업 위탁
  - 새로운 예산 투입 없이 기존 공공서비스 예산을 사회적책임조달 정책에 편성하여 다양한 정책효과 산출: ① 사회적기업의 경영과 취약계층 고용의 안정화, ②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③ 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 상승 등 노동의 질 개선
    - ☞ 『서울특별시립 중랑노인전문요양원』을 서울시의 사회적책임조달 정책에 따라 사회적기업인 『도우누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 ☞ 충청북도가 청주의료원에 보호자 없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추진. 4개 병동 21병상, 보호자 없는 병원에 들어가는 인력을 사회적기업 가운에 위탁 운영
    - ☞ 포르투갈의 협력계약(Co-operation Agreements), 공공 사회 보장 시스템과 IPSS(사회적 연대 민간 기관) 사이의 협력계약은 자치 지역인 아조레스 제도(Azores)와 마데이라 제도(Madeira Islands)를 포함한 포르투갈 전 지역에서 시행, 예를 들어 아이들을 위한 지역 사회 복지시설 운영을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고, 기술 지원, 모니터링 및 감독과 함께 연간 보조금을 지원
    - ☞ 체코, 지역차원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서비스가 비영리기구를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 ☞ 스웨덴, 보육·재활 등 사회서비스를 사회적경제 기관에 위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사회적협동조합 활용, 지역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고용정책 프로그램 운영
    - ☞ 영국, 지역사회 서비스 위탁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사회적기업 육성, 공공부문 사회서비스를 지역단위 민간단체에 위임, 사회서비스 대행기관으로써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사회적기업을 육성
    - ☞ 이탈리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사회적협동조합 활용, 사회적협동조합들에게는 조달에 관한 우선순위 부여와 컨소시엄을 통한 사회서비스 위탁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청소업) 신규 허가 시 사회적기업에 위탁
- 새로운 공공서비스 영역 개척
  - 방과 후 돌봄교실 위탁 운영
    -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가운데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열어 돌봄영역 보편적 제공 2014년부터 단계적 실시(2014년 초등학교 1·2학년, 2015년 초등학교 3·4학년)
    - 이러한 돌봄 영역을 사회적기업에 위탁 시 공공성을 높이고,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맞벌이 부부의 직장생활을 보장하는 등 공공사회서비스의 혁신을 가져옴

## 공약 6.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및 사회적경제위원회 신설

- 사회적경제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직할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조정·통합체계 구축·실행력확보
- 사회적경제의 효율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광역 의회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또는 포럼 구성

### 1) 제안 배경

- 최근 여야 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조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국회 단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포럼 및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법안을 준비·발의하는 등 시장경제에 대한 문제점 보완의 핵심으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고, 사회적경제 주체의 시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
- 또한 정부부처(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와 기초지자체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을 시행·추진하고 있으나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비하므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 지자체 차원의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위원회 설치,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
- 광역 의회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사회적경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연구·논의·조정·협의를 기구 필요

### 2) 세부 내용

- 사회적경제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
  - 기본 조례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 또는 규제의 지향점이나 방향성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사회적경제 부문별·분야별 구체적인 지원 및 규율은 개별 조례에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기본 조례 제정 시, 기본 조례는 현재 사회적경제 부문별 개별적으로 제정된 지원조례들과 법체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총론-각론의 연계성을 갖게 되면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체계적인 법제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됨
  - ☞ 광역자치단체 중 사회적경제 지원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강원도, 경기도, 광주시, 인천시, 충청남도 등 5개 사례에 그침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산하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각 정부부처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정책을 광역단위에서 통합하고, 기초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정책 실행과 효율적인 연계가 가능한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산하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운영 필요
  - 사회적경제위원회를 통해 기초지역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의 관리·감독도 병행하여 사회적경제 정책지원의 효율성 향상 제고
- 사회적경제의 효율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통해 공공성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수립
  - 사회적경제 발전전략과 계획을 담은 기본계획이 민관협력을 통해 정기적으로 수립 및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수립, 시행, 평가가 민관협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건으로서 사회적경제 기업 수 늘리기에 매진하여 폐단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질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
  - ☞ 강원도 2013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비전·전략·주요과제) 수립 및 사회적경제 비전선포식 개최
  - 기본계획에서 성장단계별, 업종분야별, 사회적경제 조직체간의 협력체계를 지원하여 규모화를 통해 자생력 강화
- 광역 의회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또는 포럼 구성
  - 광역 의회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와 논의가 가능한 기구의 마련이 필요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정책의 수립과 조정·협의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 의회에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또는 포럼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

6) V.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 과도한 일자리창출 중심의 사회적기업제도 운영, 양적 확대에 치중함으로써 질적 성장에 소홀(2014. 2. 28, 국회입법조사처,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약 7. 사회적경제 관련 행정 통합 및 지원체계화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한 행정을 통합하고 지원을 체계화하여 지역사회 경제문제 해결 능력 강화 및 역할 확대 도모
- 행정 통합과 지원체계화 방안으로 사회적경제 통합 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전담공무원을 장기간 배치하며,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센터 설치 등을 마련

### 1) 제안 배경

-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되며 정부 정책도 소관 부처에 따라 분산되어 있지만,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등 동일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점에서 사회적경제라는 큰 틀로 통칭되고 있음
- 지역을 기반으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회적경제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조직 및 부서가 분산되어 운영되거나 일자리정책에 한정되어 행정과 정책지원, 사업효과 등에 있어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역사가 짧고, 지원정책도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 있는 등 사회적경제 정착 초기 단계에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주기적인 부서 이동으로 인해 사회적경제 담당공무원의 교체가 빈번하여 사회적경제 이해도 결여, 민관협업의 기능 저하, 지원정책의 일관성 부족, 사회적경제 지역기반 정착 저해 등의 문제점 존재
- 정책 및 사업 추진에 있어 광역↔기초, 광역↔정부, 지자체↔민간, 부서↔부서 간 조정·협의를 할 수 있는 기구의 부재

### 2) 세부 내용

- 사회적경제 행정·지원·정책·사업의 일관성·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통합 부서 설치
- 사회적경제 전담·유관 부서의 신설·통합 또는 승격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부서별로 분산된 정책과 행정부서의 기능을 신설·통합 또는 승격하여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평가관리를 충실하게 하여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 모색 필요
  - 국정 운영 차원에서 각 사회적경제의 지원체계에 대한 통합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서도 이에 발맞춰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의 통합 논의와 진행이 이뤄지는 것이 시기적절
  - ☞ 현재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 발의가 진행되었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가치로 인정하는 '사회적가치 기본법',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초법안인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의 법안 준비가 이뤄지면서, 법제상으로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목적 추구하는 사회적경제를 인정하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준비가 한창
-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센터 설치·운영
  - 사회적경제의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위탁 혹은 민간협력으로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 적절한 인원 및 기간 동안 전담공무원을 배치
  -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공무원의 전문성, 행정지원의 연속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동하고, 타 업무가 병행되는 환경 속에서 사업·행정 처리 등이 지연되는 현상 발생
  - 태동하는 사회적경제가 지역을 기반으로 올바르게 정착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의 일관성·전문성 등을 유지할 필요가 존재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인원을 투입하여 적정기간동안 사회적경제를 전담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
  -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등 강화

## 공약 8. 지자체 형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 지역이 안고 있는 주요 사회적 의제 해결을 위한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성장 방법의 일환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로컬 거버넌스형 공동 협력기금을 조성·운영

### 1) 제안 배경

□ 사회적경제 기금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의제 해결에 앞장 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공동체, 비영리단체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기금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자금 지원체계가 불비한 우리 현실에서 이들의 성장·발전을 돕는 자원 조달창구 역할 가능

- 사회적경제 기업은 주식, 사채 등 일반적인 기업이 이용하는 자금조달 경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며, 사회취약, 사회문제 등의 지역 의제들을 사회적경제가 문제 해결 소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다분하여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활용이 필요
- 정부 예산회계제도의 경직성을 탈피, 탄력적이고 신속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경우, 법·제도적 한계, 재원조달의 어려움 및 자금 운용의 보수성으로 인해 사회적경제 기금의 합목적성에 맞는 자금 운용을 수행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

□ 따라서 로컬 거버넌스 기반 하에서 정부, 지역기업, 주민 사회적경제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공동 협력기금을 조성하여 별도의 독립성을 부여한 후 기부, 융자, 투자, 보증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통해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요 및 성장단계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가는 것이 필요

### 2) 세부 내용

□ 기금 조성 방법

- 개인의 기부 또는 신탁, 지방정부 및 기업의 출연, 지역주민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출자 등 가능한 모집수단을 모두 동원
- 기금 조성 목적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상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임을 알림으로써 많은 주민 참여 유도 필요

□ 기금 법적 형태

- 비영리 재단법인 또는 공제조합 설립방식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나 금융수단 활용 측면에서 법적 제약조건이 가장 적은 형태를 가져가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및 조례 제정을 통해 기금 조성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격 부여

□ 기금 성격 및 방식

- 기금의 성격은 기금의 기금(Fund of Fund) 형태를, 방식은 직접 자금 제공 방식
- 지원대상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한다는 점에서 지역개발기금 혹은 지역발전기금으로 명명

□ 기금 활용 방안

- 풀뿌리 지역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공간 지원을 위한 공동체 채권 발행,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채권 프로젝트, 지역 신용보증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소액자금 융자 등

☞ 공동체 채권(Community Bond): 캐나다 토론토시 사회혁신센터가 지역 공동체기업들에 대한 공간 확보 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채권이 대표적

☞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 정부, 투자자,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의제 중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방식으로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호주·아일랜드·캐나다·남아공·이스라엘 등에서 활성화

☞ 사회적거래소(Social Stock Exchanges): 사회적 프로젝트 혹은 사회적기업을 거래소에 상장시킨 후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공급받는 주식시장으로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간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브라질, 남아공, 싱가포르, 캐나다, 영국 등에서 활발히 진행

7) 사회적기업의 경우, 이익배당 제한(배당가능이익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을 두고 있기에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취지가 자금조달에 제한으로 작용

## 공약 9. 지자체 주관행사 및 축제에 사회적기업의 참여 촉진

- 행사와 축제에 필수적인 청소 및 시설물 관리 서비스, 방역 서비스, 행사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서비스에 환경 문제와 취약계층 고용에 앞장서 온 사회적기업의 참여 보장
- 지자체 주관 행사 및 축제의 핵심 메시지 및 콘텐츠와 관련된 지역 사회적기업이 행사 및 축제의 일부를 기획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1) 제안 배경

- 배경 내용지자체 주관 행사 및 축제는 지역 사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획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 주관 행사 및 축제에 지역사회의 참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사회적기업이 지역 행사 및 축제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자체 주관 행사 및 축제를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음
- 영국의 런던올림픽에서 사회적기업이 대거 참여하여 런던올림픽의 사회적 의미를 제고한 바 있음
  - ☞ 영국 정부는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를 달성하는 유산' 을 남기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독려했으며 실제로 공정무역 관련 사회적기업이 대거 참여하였고 훈련시설 운영, 스태프 운송 등에서 사회적기업이 활동

### 2)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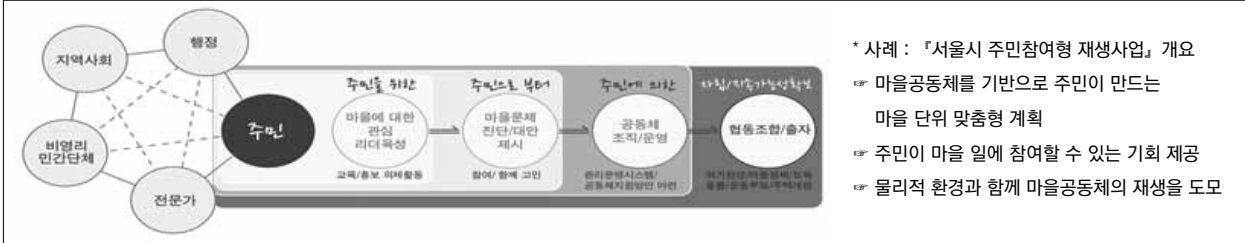
- 행사 및 축제에는 청소 및 시설물 관리, 방역, 행사 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 등의 영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바, 해당 분야의 사회적기업 참여를 촉진할 필요 있음
  - 환경적 가치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상징하는 이 분야의 사회적기업이 행사 및 축제에 참여할 경우 해당 행사의 사회적 의미가 부각될 수 있을 것임
- 행사 및 축제의 주요 콘텐츠에도 관련 분야 사회적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행사 참여를 제고함과 동시에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에도 기여
  - 서울의 대형 기획사 중심으로 지역 행사 및 축제가 기획, 운영되는 경향이 있는바 지역의 관련 영역 사회적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행사 일부를 기획,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 사회적기업만을 모아서 실시하는 행사가 아니라 관련 영역의 업체와 기관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사회적기업 영역을 확보하고 참여하는 것은 인지도 상승과 판로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임
- 개별 사회적기업 차원의 참여가 아니라 광역 단위 사회적기업협의회와 광역자치단체 간의 협의와 협상을 기초로 일정 비율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적절
  - 개별 사회적기업의 참여 노력은 있었으나 일선 부서나 조직위원회의 이해 부족과 사회적기업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성과를 맺지 못하였음
- 광역지자체 주관의 행사에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
  - 기초지자체별 충분한 수의 해당 지역 사회적기업이 부족하고 다양한 분야를 사회적기업이 포괄하고 있지 못한 바, 기초지자체 행사 참여에 대한 기초 단위의 조직과 기업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됨

# 공약 10. 사회적경제 지역재생 거점지구제 도입

-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재생 수요가 높고 민관의 추진역량이 우수한 지역을 사회적경제 집중육성 지구로 선정하여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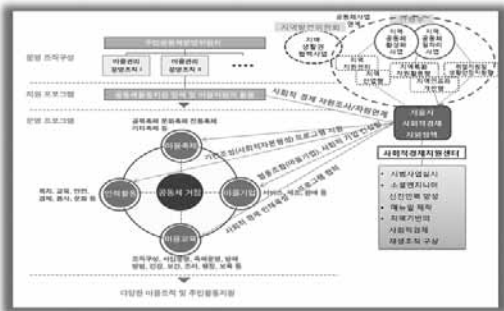
### 1) 제안 배경

- 주민참여형 낙후지역 주거지재생사업이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과 공동체 회복을 이룰 수 있으려면 물리적 환경재생과 함께 마을단위 사회·경제적 재생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 필요
  - 해당지역 주민역량과 지역자원을 결합하여 주민참여형 사회적경제 조직을 설립, 자주관리형 집수리사업과 지역고용 활성화, 지역사회내 이주동기가 된 교육·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순환경제 구축 필요
- 중앙 부처 간에 칸막이행정이 일어나고 있는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재생형 주민공동체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모델의 기반조성이 필요



### 2) 세부 내용

- 사회적경제 우선투자지구 지정 및 장기적 종합지원 추진
- 지방자치단체별로 원도심 공동화 및 인구과소지역 대상의 우선투자지역 선정 및 장기 지원사업 추진
  - 기존 산업요소를 통한 지역재생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수요 및 추진역량이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투자지구 선정, 집중 육성
  - 인근 지역 내 소재한 지역개발형 사회적경제 조직(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peer consulting을 연계하고, 주민주도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 창업 및 지역재생 종합계획' 을 수립하여 추진
  - 사업기간: 최소 5년을 원칙으로 하되 단계별 추진상황을 엄격 평가하여 추진
    - 지원내역: 기초지자체단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간 5~10억 원 규모 지원
  - ▽ 별도로 사회적경제·주거지재생사업 등 기존 지원 자원 연계
  - 주민 주도의 생산 및 재산산 기반 구축 지원
  - ▽ 소득활동이 필요한 주민들의 참여 및 강점에 기반을 둔 경제사업 추진
  - ▽ 대상지역을 포괄하는 자치구내 지역화폐운동, 공유경제 활성화 등과 협력망 연계 지원
  - 자치구 단위의 다자간 파트너십(기초 지자체, 지역 대학, 기술연구소, 사회적경제협의체, 지원조직 등) 형성을 의무화



- 법적 추진근거 마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정비계획에 사회·경제적 재생계획을 포함하도록 법률개정 및 지자체 조례 개정

## 협동조합연구소

[2014 지방선거 협동조합 전국 공통공약]

## 공약 작성의 개요

- 사회적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일반에 적용되는 공통공약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추가 작성하지 않음
- 협동조합 진영의 합의된 내용이라기보다 그동안의 협동조합 관련 의견을 통합하여 작성
- 가급적 보조금 지급은 지양하고, 기존의 정책의 재구성을 통해 협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약 생산

---

## 협동조합연구소 5대 공약

### ① 협동조합 공동창업센터 설립 및 운영

- 초기 협동조합의 체계 안정화에 대해 기여
- 시군구 협동조합연합회 혹은 협의회에서 운영 위탁

### ② 전략분야 협동조합 육성(광역 중심)

- 전략분야 협동조합의 탐색과 연구
-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원/지역개발협동조합 육성
-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전략분야 확산 추진

### ③ 협동조합 교육 다양화 및 강화

- 협동조합 운영 심화교육프로그램 운영
- 협동조합 학습조직 지원
-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지정 및 역량강화

### ④ 협동조합 전담팀 설치 및 담당자 역량강화

- 협동조합팀 설치 (사회적경제과 설치와 연계)
- 자원에 의한 담당 지정 및 최소 2년 업무배치
- 공식정책협의 월 1회 이상 실시/분기별 지자체장 협의

### ⑤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 협동조합 설립 활동에 대한 공적 지원
- 해당 바우처의 30~50% 수준의 우선배분 조례 제정



## 공약 1. 협동조합 공동창업센터 설립 및 운영

- 기본법 초기 협동조합의 공동사무실 및 공동연구, 정보교류를 위한 공동창업센터를 설립하고, 적정한 비용으로 임대하여 신규협동조합 운영 지원
- 시군구 협동조합연합회 혹은 협의회에 운영을 위탁하여 협동조합 클러스터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내 협동조합의 성공률을 강화

### 1) 제안 배경

- 신규 협동조합이 다양하게 설립되고 있지만, 초기 자본금이 부족하여 사무실 확보가 어렵고, 초기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곳과 떨어져 있어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음
- 시군구 협동조합협의회 및 연합회와 설립 초기 협동조합의 공간을 결합함으로써 초기 협동조합에 대한 민간 협력 차원에서의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성공을 증진 및 협동조합의 협동을 촉진

### 2) 세부 내용

- 기초지자체가 기간 진행한 벤처기업 및 지역내 기업 창업보육센터들을 활용하거나 대학이 있는 경우 대학과 협력하여 협동조합창업보육센터를 지정, 필요한 경우 별도 협동조합창업지원센터 설립
- 설립 초기 협동조합의 입주 요건 및 유지기간, 임대료, 졸업 요건 등을 정리하여 저렴한 임대료 및 운영비 여건이 되도록 하여 초기 부담 감소
- 협동조합협의회 혹은 연합회에 운영을 위탁하여 초기 협동조합안정적인 지원서비스 및 상호부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함

## 공약 2. 전략분야 협동조합 육성(광역)

- 전략분야 협동조합의 탐색과 연구
-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원/지역개발협동조합 육성
-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전략분야 확산 추진

### 1) 제안 배경

-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경영모델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필수적임
- 전략분야 협동조합이란 1)사회적 임팩트가 크고, 2)직면하는 시장의 범위가 작아 성공사례가 나올 경우 경쟁 없이 확산가능하며, 3)비슷한 사업여건을 가지고 있어 병렬적 혁신이 용이한 협동조합을 의미함
  - 중고등학교의 매점, 교복 공동구매, 수학여행 및 연수 등을 담당하는 학교협동조합이나, 아파트단지의 합리적 소비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구매, 공동육아 등을 수행하는 아파트협동조합 등
- 이런 시도들이 일부 진행되었지만 산발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탐색과 설립, 운영을 통해 성공모델 개발이 필요

### 2) 세부 내용

- 지역 현황에 대한 종합적 분석으로 전략분야 협동조합 유형의 발굴
- 발굴된 유형의 설립 및 운영 시범사업을 통한 모델 구성
- 필요한 제도적 제약의 우선적 해결
- 기초지자체 등에 전파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설립 주체 육성
- 설립 및 운영 컨설팅 등을 집중
- 민간의 역할과 함께 지자체의 협력과 지원이 있어야 빠르게 전개될 수 있고, 지역사회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기대할 수 있음

### 공약 3. 협동조합 교육 다양화 및 강화

- 협동조합 운영 심화교육프로그램 운영
- 협동조합 학습조직 지원
-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지정 및 역량강화

#### 1) 제안 배경

- 협동조합은 인적조직이면서 사업조직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우수한 인적역량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조합원 교육, 초·중·등 학교교육, 평생교육, 기업교육 등이 서로 어우러질 때 협동조합 인재육성이 가능한데, 민간의 역량과 의지만으로는 부족
- 특히 설립 초기 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등의 조속한 육성과 적절한 권위의 부여를 민간 조직이 주도하여 수행해야 하고, 이를 행정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컨텐츠의 개발에 민관의 협력과 자원의 집중이 있어야 함

#### 2) 세부 내용

- 협동조합운영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운영 심화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진행
- 강의식 교육의 효과보다 직접 세미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협동조합학습조직에 대한 지원 정책 개발(선정 및 진행 관리, 결과 평가, 시상)
- 시군구별로 1인의 협동조합 코디네이터를 지정하고, 협동조합 설립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함으로써 신설협동조합의 성장과 성공을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계약직 공무원)

## 공약 4. 협동조합 전담팀 설치, 담당자 역량강화

- 협동조합팀 설치 (사회적경제과 설치와 연계)
- 자원에 의한 담당 지정 및 최소 2년 업무배치
- 공식정책협의 월 1회 이상 실시/분기 1회 지자체장 협의

### 1) 제안 배경

- 협동조합의 발전을 구상하고, 별도의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전담팀이 있을 때 협동조합의 체계적인 육성이 가능함
- 협동조합은 인적조직이므로 협동조합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인적 관계망이 조밀하고, 상호신뢰가 쌓여야만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수립된 정책을 취지에 맞게 운용할 수 있음
- 협동조합 담당 공무원의 이해도 증진과 지속적인 근무, 자발적인 학습을 통한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
- 수평적 민관 거버넌스 구조가 체계화될 때 협동조합의 성장이 촉진될 수 있을 것임

### 2) 세부 내용

- 협동조합과 혹은 사회적경제과 내에 협동조합팀을 모든 지자체에서 설치
- 협동조합의 열정을 가진 공무원을 내부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2년 이상 업무배치하여 협동조합 민간진영과의 협력의 안정화 및 전문성 강화
- 협동조합협의회와 담당팀간의 월 1회 공식 정책협의테이블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분기 1회 지자체장과 협동조합 민간진영의 협의테이블을 가져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지자체 정책에 반영

## 공약 5.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 사회서비스 분야 협동조합 설립 활동에 대한 공적 지원
- 해당 바우처의 30~50% 수준의 우선배분 조례 제정

### 1) 제안 배경

- 사회서비스분야 사업은 종사자들의 역량강화 및 서비스마인드 제고가 핵심역량인데 비해 이를 담당하는 영리기업은 조직원리상 이런 핵심역량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모두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다중이해관계자성을 가질 때 상호 만족도를 높이기 쉬움
- 현재 사회서비스는 바우처 방식이 도입되어 있어 영리기업이 9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시장실패'로 인해 발생한 정책의 취지와 전달체계가 부합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2) 세부 내용

- 돌봄사업,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영역을 주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활동에 대한 지자체의 홍보 및 조직화 지원, 전담팀과 협력활동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
- 관련 사업의 바우처 대상자에 대해 소비자조합원 가입을 유도하여 실질적으로 3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바우처 사업의 지침을 정비하여 선정대상자를 우선 배분하도록 제도 개선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2014년 제6차 동시 지방선거 자활사업 정책공약제안(안)]**

## 2014년 6차 동시 지방선거 정책공약 제안배경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정책위원회에서는 2014년 제6차 동시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각 지부에서 지방선거라는 열린 공간을 계기로 자활사업관련 공약을 현실화하고, 지방 정치권에 자활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자라는 취지에서 정책공약을 작성하게 되었음
- 정책공약 제안의 방향으로는 포괄적으로 필요성과 문제점 그리고 정책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사회복지나 빈곤정책 전반적인 방향보다는 직·간접적으로 자활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나, 빈곤 정책중 자활사업과 연관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명분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로 작성하였음
- 자활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국가사업인 관계로 지방선거라는 장에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공약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자활사업의 시행이 지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선거에서 활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책공약을 정리하였음
- 정책공약 제안시 현재 현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나, 지방선거인 관계로 그 부분은 각 지부단위에서 준비해야 할 것임. 여기에서는 앞서 언급한데로 포괄적인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었고, 현황도 간단하게나마 전국적인 내용으로 정리하여 정책공약을 제시하였음
- 각 지부별로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정책위원회에서 제시한 정책공약(안)을 참고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선택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라며, 또한 지역별 특색에 맞는 자체공약도 발굴하여, 이번 6차 동시 지방선거에 자활관련 정책이 적극적으로 홍보되어지고 채택되어지기를 희망함

## 공약 1.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지원 조례 제정

###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2000년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자활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산적 복지라는 정책이념에 따라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임
- 자활사업은 시·군·구 지역단위로 사업이 진행되는 특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사업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역할이 불분명하고, 전국적으로 자활지원조례가 제정된 곳이 15곳(시행규칙까지 제정된 곳은 2곳 정도에 불과) 정도에 불과하여, 지역 차원에서의 발전적인 사업기반을 형성하는데 한계로 작용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차원에서의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촉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빈곤문제 해결 및 지역복지 발전에 기여할 필요성이 존재함

### 2) 제안 내용

-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에 ‘자활사업지원조례’ 제정
- 자활사업지원조례의 내용에 자활지원계획 수립, 사업자금 융자 및 우선구매, 자활지원위원회 설치, 지역특색에 맞는 자활사업 발굴지원등 지원내용 정리
- 지자체 ‘자활사업지원조례’ 제정과 더불어 ‘시행규칙’ 도 제정하여, 실제적인 조례운용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 공약 2. 자활기금 활성화 방안 마련

###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운용하는 기금임. 그 용도는 2014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에 의하면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산형성지원, 탈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자활사업 연구개발비, 기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조례로 정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자활기금조례가 별도로 제정된 지자체는 148곳으로, 2010년 지방선거 당시의 34곳에 비해 확장되었으나, 시행규칙까지 제정된 지자체는 37곳으로 실제적인 자활기금 운용면에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별도 조례로 자활기금조례 제정이 전국 단위로 확산되어야 하며, 시행규칙 제정을 보다 확대하여 실질적인 자활기금 운영이 현실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지자체에서 자활기금을 사용하는 실태를 보면 대부분 전세점포임대 보증금 지원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일부에서는 복지증진비 명목으로 교육사업비 등에 사용하기도 하고, 시설보강비등에 사용하기도 함
- 자활기금은 자활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물임. 따라서 자활기금의 사용 폭이 참여주민의 자활지원을 위해서, 그리고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임. 이에 따라 자활기금의 사용 폭을 사업자금 대여, 사회보험료 지원, 시설보강비 지원, 참여주민 복지증진비용, 유통망 구축, 자활기업 규모화, 품질향상 지원 등 자활지원을 위해 선제적이면서도 다양한 용도로 기금이 활용되어야 함

### 2) 제안 내용

- 별도 조례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및 시행규칙 제정
- 조례의 내용에 사업자금 대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도록 내용 마련

### 공약 3.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맞춤형 기초보장제도 신설

####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임.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0년 수급자가 약 156만 명인데 반해, 사각지대 규모는 460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음. 이중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규모는 108만 명이며, 재산기준에 의해 배제된 규모는 298만 명임
- 이러한 사각지대가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규모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2009년 156만 명을 정점으로 2010년 약 155만 명, 2011년 146만 명, 2012년 139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이는 2009년 대비 약 17만 명이 감소하였음을 뜻함. 최근 생계를 비관한 자살사건에서 보듯 수급자 규모의 대폭적 감소는 현실적 조건과 동떨어진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빈곤 정책은 국가가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지자체에서도 일정한 빈곤정책 수립이 필요한 형국임. 한 예로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라는 이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음. 서울시는 2014년 37,000명을 목표로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함. 이러한 지역형 기초보장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사각지대를 일정정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임
- 지역형 기초보장제도가 단순히 생계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지역형 자활근로 등 지방재정 일자리 정책의 수립도 이루어져야 함. 노동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신선한 행위로, 차상위계층 등 빈곤계층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일자리 마련은 매우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임

#### 2) 제안 내용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신설
- 차상위계층 등 빈곤계층을 위한 '지역형 자활근로사업' 시행

## 제안 4.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역할 확대

###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송파 3모녀 생계비관형 자살사건을 계기로 사회안전망의 강화에 대한 논의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주지하다시피 송파 3모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수급자 신청을 하였어도 자격기준에 미달하여 선정되지 못하였을 것임. 이후로도 생계비관형 자살사건이 줄을 잇고 있고, 2012년 8월 수급자에서 탈락한 할머니가 경남 거제시청 앞에서 자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사회에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어야 함
- 사회안전망 강화의 한 방안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위기가정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이 요구되어짐. 앞서 말한 지역형 자활근로사업을 활용해도 좋으나, 특화 형태로 한부모, 가정폭력, 비자발적 실업 등 긴급한 사정에 처한 위기가정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적 방향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등 빈곤계층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임.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위기가정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내 노동연계복지 수행기관으로서 사회복지인프라로서의 위상 강화가 필요함

### 2) 제안 내용

- 한부모, 비자발적 실업 등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 일자리 정책 마련
-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긴급 일자리 제공기관으로서의 지역자활센터 지정 및 지속적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 마련

## 제안 5. 지역자활센터 기본시설 지원 및 운영 지원

###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지역자활센터는 공공부조 전달체계로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전국 246개 지역자활센터는 시·군·구 지역 단위를 근거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를 일구어나가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시설지원은 매우 열악함. 한국협회에서 2013년 전국 238개센터(96% 응답률)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자체 무상 및 임대지원이 64%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높은 임대료 부담, 넓은 관공서 건물 활용뿐만 아니라 상담실과 교육장이 없는 곳이 30%에 달하고, 회의실조차 없는 곳이 43%에 달하는 등으로 효율적인 자활사업 수행에 애로사항이 존재함.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예산을 편성, 지역자활센터 건물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은 인건비 90.5%, 운영비 9.4%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러하다보니 시설비, 교육사업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순으로 예산 책정조차 하지 못하는 센터가 부지기수임. 공공부조 전달체계로서, 사회적경제의 주요한 인프라로서 지역자활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시설지원과 운영 지원에 대해 지자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임

### 2) 제안 내용

- 교육장, 상담실 등 필수적인 공간마련이 가능한 국·공유지 무상임대 지원
- 무상임대를 넘어 지역자활센터 독자적 건물(공간) 마련을 위한 예산지원
- 지역자활센터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운영비 지원

## 제안 6.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보편적 복지관련 정책이 중요한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는 요즈음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쟁점은 형성되지 않고 있음. 특히, 노동연계 복지정책을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임
- 2013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공무원 보수의 95%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2013년 한국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월평균 임금은 사회복지 공무원 임금의 85%, 사회복지관 종사자 임금의 88%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형국임
- 이로 인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이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직률이 높고, 경력이 있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활사업 수행을 담보하기가 어려움
- 지자체에서는 지방 이양된 사업 중심으로 공무원과의 급여차이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조례 제정 등이 진행 중이나, 지역자활센터는 그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엄연히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급여수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공통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되어짐
- 또한 전국의 지역자활센터중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는 센터수가 70%에 달하고, 그중 복지수당은 17.6%, 처우개선비는 10.5%만이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보건복지부 봉급월액표에서도 낮은 연봉제가 적용되고 있는 비정규직들에게 지역자활센터 정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지수당이나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함

### 2) 제안 내용

- 지자체별 지역자활센터를 포함한 사회복지종사자 공통 인건비가이드라인 마련
- 지역자활센터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 처우개선비 지급

## 제안 7.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자활기업은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탈빈곤을 위해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국가로부터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받는 자활근로와는 달리 자체 경영을 통해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자활, 자립의 직전 단계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유사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고 있는 반면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태임
- 자활기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정한 지원내용은 사업자금 융자, 국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 또는 지자체 사업의 우선 위탁, 생산품 우선 구매, 인건비 지원 등이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유명무실하다고 말할 정도로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함
- 전국적으로 1,300여개의 자활기업이 운영 중이나, 월평균 인건비가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고, 경영의 안정성도 상당수가 불안정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서, 지자체 차원의 직접적인 지원이 절실한 형국임
- 자활기업은 지역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비해,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 할 수 있으며,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을 지자체에서 별도로 책정하기도 하는 것에 비해 자활기업에 지원이 없는 것은 문제임

### 2) 제안 내용

- 자활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우선구매, 무상임대 등 자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제적인 내용 반영
- 자활기금 활용 등 자활기업 지원예산 마련 및 조세감면 등 세제지원

## 제안 8. 지역일자리 창출형 사회서비스 사업 개발

###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우리사회는 지속적 경제난속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취약한 사회안전망 체계의 강화와 보편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확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현재 우리사회는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 되는 등 일반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일정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필요성 증대로, 사회서비스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고 또한 취업애로계층의 증가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은 13% 내외로 OECD 회원국 평균수준인 21~22%에 비하면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임
- 사회서비스 사업에 있어서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진행이 필요하고, 나아가 취업애로계층의 일자리 창출에서 일정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과 연계한 지역특화형 사회서비스 사업의 개발이 요구되어짐
- 특히 정부의 지원으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음. 인천광역시의 경우 자활사업으로 수행하던 장애아동학습지원서비스 사업을 광역지자체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선정하여 6개 지역자활센터에서 특화형으로 진행한 사례도 존재함

### 2) 제안 내용

-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특화형 사회서비스 사업개발을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
- 자활사업과 연계한 지역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공약 9. 자활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제도 마련

###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사회복지의 성장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한계를 배경으로 탄생한 서구의 사회적경제는, 우리나라에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이제는 하나의 사회현상이 되었음. 최근 협동조합이 4,000개가 넘게 설립이 되었고, 기존의 사회적기업이 1,100여개, 마을기업이 780여개, 자활기업이 1,300여개에 달하는 등 사회적경제는 일자리 정책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였음
- 문제는 민간진영의 생산공동체 운동을 뿌리로 하고 있는 자활기업이 행정상 사업지원 영역상의 구분에 따라 사회적경제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점임. 자활기업은 자활공동체 시기부터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어왔고,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라는 의제를 탄생시킨 하나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이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임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의 제정 등이 실현되고 있으나, 최근의 동향에 비하면 그 전개속도가 미미한 편임. 2012년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조례가 제정된 이래 19곳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중 2곳은 시행규칙까지 제정하였음
- 조례의 형태도 다양하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명칭으로 제정한 곳이 14곳, 사회적경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로는 4곳, 특히하게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1곳으로 나타나고 있음. 조례는 지자체의 자치법규로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 토대인 만큼 전국적으로 다양한 조례 제정 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2) 제안 내용

- 자활기업을 범주에 포함하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시행규칙 제정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범주에 자활기업 포함
- 보다 내실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조례 제정



## 공약 10.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중산층 자가 소유 중심의 주택공급정책에 중점을 두어, 주택의 절대적 부족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하였으나, 저소득층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여, 주거문제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은 개선의 여지가 높지 않은 실정임
- 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주거환경의 열악함과 불안정성으로 빈곤을 탈피하여 일반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재고율은 4~5%선으로, 영국 22%, 독일 20%등 20%내외의 수준에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고, OECD 국가평균인 1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한 예로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재고율이 5%대로 2020년까지 선진국 평균수준인 10%까지 확산한다라는 복지기준선을 2013년에 마련한 바 있음.
- 대한주택공사의 '공동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체납율이 21.9%로 12만 1134호에 달하고 있음. 이는 2008년 8만 2,488호에 비해 최근 5년간 4만호가 증가한 수치로, 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 우리나라 주거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의 주택공급위주의 정책이다보니, 지자체가 주택 및 주거정책을 실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더 이상 중앙정부에만 의존해서는 곤란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2) 제안 내용

- 공공임대주택재고율 10% 달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

[주민참여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 제안]

## 1) 필요성

□ 우리사회는

-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성장률 둔화, 고용 없는 성장 시대, 실업률 증가
- 사회복지수요 증가, 사회안전망 취약
- 개인 간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심화

□ 사회적경제는 지역 재생, 공동체 복원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경제위기에 탄력적이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유지가 가능해 지역경제 운용에 유리
- 사람중심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에 탁월한 기능 보유

## 2) 정책방향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지원의 확대

⇒ 시민사회가 스스로 지역사회 욕구를 찾아내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우선

□ 사회적 경제를 위한 생태계 조성

⇒ 사회적 경제 조직은 개별 조직의 지원보다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밀도를 높였을 때 지속가능성이 커짐.  
따라서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업종별 협의회 강화를 통한 내부 지원체계 조직화가 중

## 공약 1. 주민 참여를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적 개혁

### 1) 제안 목적

-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입 확충이 필요하나, 부정수급 등 투입된 예산의 비효율성이 사회문제화 됨. 민간 이양시 품질저하의 가능성이 높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별 불균형으로 취약지역이 발생함
- 공공성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해 사회서비스 위탁기관을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할 필요성 있음
- ※ 공공서비스: 지역안전, 교육, 건강, 환경, 사회적 돌봄(육아, 노인, 장애인 등), 주택, 레저, 학교지원 등, 복지 서비스 중앙정부 제도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나 지자체별 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있음(경기도: 75개 사업, 3백억 예산, 1만 1천여 명 고용, 공공병원, 교육청 사업 등)

### 2) 개요

- 공공서비스 사회적 경제 조직 우선 위탁 가산제도 도입
- 공공서비스 수행 기관 주민 및 직원 참여 제도 마련
- 공공서비스 수행 기관 평가 시 서비스 질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여, 이용자 참여, 근로조건 항목을 추가하여 인센티브 제공
- 서비스제공기관 지역별 불균형해결- 취약지역, 비선호시간대 서비스 제공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인센티브 체계 개발 필요
- 신규 공공병원, 복지시설 건립 시 지역주민 출자방식 도입
  - 665센터 내에 시립 혹은 구립 어린이집, 요양원을 지어서 보육,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

## 공약 2. 돌봄, 의료, 문화, 일자리가 함께하는 “건강 협동 센터” 설립

### 1) 제안 목적

□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생애주기별 돌봄, 의료, 문화, 일자리 등 다양한 요구들이 존재함. 그러나 이를 전문가에 의해 개별로 해결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해당 인구가 적어 개별 조직의 지속가능성은 낮음. 따라서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다양한 보건의료복지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이 한 공간에 입주하여 자산을 공유하면서 효율성도 높이고,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동체성을 회복함

### 2) 개요

- 동, 면단위 “건강 협동 센터” 설립
- 지역주민들과 서비스 운영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건강위원회” 에서 운영함. 각각의 서비스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운영하도록 하여 일자리를 창출함
  - ①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서비스 제공 (농번기, 휴일, 야간 서비스)
    - 산모도우미
    - 영유아 재가 보육 서비스
    - 영유아 시설 보육 서비스
    - 방과 후 아동 돌봄 서비스
    - 노인주간보호 서비스
    - 재가노인, 장애인 방문 서비스
    - 노인요양서비스 - 아픈아이 돌봄서비스
    - 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
  - ② 건강한 영양 서비스 제공
    - 독거 노인, 소년소녀 가장 밑반찬 배달 서비스
    - 농번기 농민 밑반찬 배달 서비스
    - 동네 식당 운영
  - ③ 주민 북카페 운영
    - 주민 문화, 소통의 공간
    -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건전한 문화 육성
  - ④ 시군구 건강지원센터와 연계한 주민중심의 의료, 건강증진 사업실행
  - ⑤ 마을단위 건강반상회, 건강반장 활동 지원
    -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자원연계
    - 마을단위 건강증진 프로그램 진행
- 센터 내에 시립 혹은 구립 어린이집 , 영양원을 지어서 보육,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

### 공약 3. 민간·지역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사회적 경제 지원기관 육성

#### 1) 제안 목적

□ 최근 사회적경제 지원기관들이 많이 생겨났으나, 설립지원에 치중되고, 업종별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함. 보건의료 복지 지원기관은 설립은 물론 프로그램 운영,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함. 개별 사회적경제조직간 연대, 지역별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보건의료복지 체계 구축의 중심이 됨

#### 2) 개요

- 시군구에 설치 (건강협동센터 10여 개당 1개소)
- 보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위탁 또는 관련 조직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운영
- 건강협동센터 운영지원: 보건의료복지 전문 인력 순회 프로그램 지원, 종사자 교육
- 보건의료복지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 운영 지원
- 마을건강반장 양성 및 활동 지원

## 공약 4. 보건의료복지 사회적 공간 확대

### 1) 제안 목적

□ 공공기관 이전, 인구 유출, 상권 침체, 지역 산업 쇠퇴 등으로 인해 도시 내 다양한 유휴공간이 발생하나 적절한 대책 없이 방치되는 경우에 주변지역에 악영향과 쇠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함. 공공서비스 시설은 접근성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유휴공간을 공공서비스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 2) 개요

- 1천원 임대 : 유휴 국공유지 및 건물을 보건의료복지 사회적 경제 조직에 장기 임대
- 사회적 공간 확보 신탁제도 : 사유공간인 경우라도 사회적 경제 조직이 구매의사가 있는 경우 우선구매권을 인정,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일정기간을 확보
- 1:1 민관협력 : 농촌 등 취약지역 공공서비스 제공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위해 건물, 토지 구입 시 출자금비례 지원

## 공약 5. 주민 중심의 건강 마을 만들기

### 1) 제안 목적

□ 이제는 지역자치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임. 현재 복지정책은 민관협력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상태임. 현재는 시군구처럼 넓은 지역에서 민을 대표해서 서비스 제공기관이 참여하는 정도임. '우리 마을 건강은 우리가 살핀다'는 취지하에 생활공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보건의료자치에 나서야 함. 이럴 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중심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음

### 2) 개요

- “마을건강위원회” : 주민자치위원회 산하 지역주민, 복지서비스 제공자가 참여하는 마을건강위원회를 구성. 우리 동네 복지문제 파악, 계획 수립, 보건의료복지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 건강반상회 : 건강생활실천을 마을단위로 진행
- 건강반장 : 지역사회 복지 대상 발굴, 초기 상담, 자원연계, 건강반상회 운영



## 공약 6. 사회통합형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 지원, 육성

### 1) 제안 목적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우 단일대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짐. 취약계층도 대상에 따라 장단점을 갖고 있으므로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높임

### 2) 개요

- 청년 실업,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 확대
- 각자의 능력에 따른 역할분담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성 확대
- 노인, 장애인 복지, 일자리 해결

# 대전충남충북세종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정책기획단

[대전충남충북세종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정책공약]

## 대전충남충북세종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정책공약

### ❶ 사회적경제 지원시스템 강화

- 공약 1. 광역단위 사회적경제 협의체 설치
- 공약 2. 광역단위 사회적경제과 설치
- 공약 3. 기초단위 사회적경제 협의체 및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 공약 4. 각 지자체에 사회적경제 전담공무원 배치
- 공약 5. 지역수요를 수렴할 수 있는 민간 사회적경제 대표조직 육성

### ❷ 커뮤니티 뉴딜 방식의 도시재생 실현

- 공약 6. 쇠퇴지역의 결핍유형과 주민역량 향상 가능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지역적 특성 구분에 입각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 공약 7.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통한 연대와 협동경제형 지역재생의 추진
- 공약 8. 주민주도형 커뮤니티뉴딜 방식의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커뮤니티지원센터 설립 운영

### ❸ 연대와 협동에 기초한 좋은 일자리, 행복한 일터 확대

- 공약 9. 여성 : 경제활동참여 확대와 가족 친화적 일터 만들기
- 공약 10. 노인 : 지역사회의 필요와 결합된 생산적 공익 노동

### ❹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자금 조성 및 확장

- 공약 11. 사회적경제 자금 : 사회적경제 조직과 기존의 제도와의 연계
- 공약 12. 사회적경제 자금 :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기준 마련
- 공약 13. 사회적경제 자금 : 사회적 투자 조성 및 강화
- 공약 14. 사회적경제 자금 : 금융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 확보
- 공약 15. 다양한 주체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가칭)사회적금융재단 조성

### ❺ 협동과 상생의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 공약 16.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 공약 17. 정규 교과과정에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내용 확산
- 공약 18.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100개 육성

### ❻ 지역에너지체제 구축을 통한 사회적경제 확대

- 공약 19.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도입
- 공약 20. '소규모'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지원
- 공약 21. 적정기술(사회기술)에 대한 지원강화

### ❼ 지역혁신을 만드는 지역인재 육성

- 공약 22. 청년단체 활성화 및 네트워크 거점 공간 제공
- 공약 23. 사회자본형 청년 정책 플랫폼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 공약 24.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창출 및 확대
- 공약 25. 인재육성 펠로우 자금 조성
- 공약 26.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지역형 학사학위제도 도입

### ❽ 당사자 조직 입장에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통제안

- 공약 27. 지자체 행사와 연계한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
- 공약 28. 사회적경제 조직 생산품 유통채널 확대
- 공약 29. 사회적경제 조직 공공시장 참여 확대
- 공약 30. 사회적경제 활동공간 확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변화
- 공약 31. 생활권 단위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구축
- 공약 32.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자금 조성
- 공약 33. 충북형 전문 사회경제연구기관 설치

### ❹ 활동 영역별 발전 모델 및 신규 사업 모델

- 공약 34. 환경 및 자원순환 분야 시스템 개선
- 공약 35. 교육 및 문화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 공약 36. 지역돌봄 서비스를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강화
- 공약 37. 농식품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 경기도 사회적경제 대표자회의

**[경기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매니페스토 10대 공약권고안]**

## 경기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메니페스토 10대 공약권고안

### • 경기도 사회적경제 관련 산업의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의 확대
  - 2012년 484개 → 2013년 1005개
- 사회적경제기업의 직원 증가
  - 2008년 1134명 → 2004년 1만2472명
- 매출의 증가
  - 매출 : 2007년 9억2000만원 → 2011년 13억원
  - 순익 : 2007년 3000만원 → 2011년 1300만원(감소)

### • 다양한 정책적 필요성

- 일자리 창출의 기반 : 정부는 ‘고용율 70%’ 달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 발표
  - 사회적경제부문의 고용율을 현재 0.2%에서 2%로 올려 일자리 48만개를 신규로 창출하겠다는 전략
- 사회문제 및 갈등의 해소 : 사회적경제는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소외지역과 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우선으로 양극화, 복지 등 사회문제 해소 가능

### • 경제사회위기에 대한 대응

- 사회적가치와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는 모험투자를 회피함으로써 경제위기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
- UN은 사회적경제의 이 같은 특성을 파악,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 로 규정하고 각국에 협동조합 관련 법규 정비 및 활성화 방안 강구 권유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영역의 충격은 시장경제 영역보다 훨씬 적었으며 사회경제적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추진

- 여야는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갖는 이점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 방안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새누리) 또는 ‘사회적가치기본법’ (새정치민주연합) 제정 추진
- 부처별로 분리 운영되던 업무의 통합, 중간지원기관 등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사회적경제 영역 확대, 사회기금 설치, 이해당사자 조직 강화, 공공시장 우선 구매,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 위원회 신설 등이 핵심이고 사회적경제 조직간에 협력과 연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확대 필요

- 경기도는 2014년 지방선거를 맞아 그 동안 실시해 온 사회적경제 정책의 개선 및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사회적경제는 본질적으로 민간 참여가 생태계 구축과 발전의 핵심으로 민간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요 정책 제안

## 정책공약 1. 정책추진체계 및 민관거버넌스 구축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흐름에 발맞추어 경기도 내 '사회경제과' 를 신설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등 사회적경제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민간에 기반한 경기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설립과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강화를 기반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 1) 배경

- 사회적경제는 통합 운영이 중요하나 중앙 및 지방에서는 별도 조직 운영으로 비효율과 혼선이 발생
- 중앙은 부처별 사업 통합 추진 중이며 경기도 역시 남북을 1차 통합했으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등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은 추가통합 필요
- 다각화된 민간조직 역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통해 대표성 키운 뒤 민관 거버넌스 구축 필요

### 2) 현행

- 경기도 조직
  - 경제정책과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 복지정책과 : 자활기업
  - 도시정책과 : 마을만들기
    - ※ 중앙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마을기업(안행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후 통합 예정
- 경기도 민간 조직 : 사회적기업협의회, 마을기업협의회, 협동조합협의회, 자활기업협의회 등 분절화, 다각화
- 거버넌스 : 2014년 민관거버넌스인 '경기도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발족' 되었으나 연 2회 정도 형식적인 회의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 3) 방안

- 현행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등 사회적경제의 연합조직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확대개편
- 경기도 내 사회경제과를 신설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만들기 등 사업 통합운영
- 민간 조직으로는 명실공히 경기도 사회적경제 영역을 대표하는 '경기도사회적경제협력네트워크' 의 구축 유도하여 민관협력생태계 구축
- 중앙정부의 권역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와 연계한 경기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기관을 민간위탁방식으로 설치
- 경기도와 전문가 및 민간을 대표하는 '경기도사회적경제협력네트워크' 의 참여 통한 광역 사회적경제 정책협의체(민관거버넌스) 운영 필요

## 정책공약 2. 예산증액

경기도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최소 5배이상 증액해야 합니다.

### 1) 배경

- 사회경제는 양극화 시대에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경제위기에 대한 탄력적 대응 효과에 주목하여 세계 각국은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최근 여야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
- 사회적경제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은 서울시, 충남, 광주시, 강원도등에 비해 미비해서 대폭 강화 필요

### 2) 현행

- 사회경제지원액 및 직접사업비 13억(중앙정부와의 매칭사업비 별도)
  - 지원기관통합위탁사업 : 7억5000만원(사회적기업 1억9000만원, 마을기업 3억2000만원, 협동조합 2억4000만원)
  - 직접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 5억5000만원
- 서울시 32,587백만원(2013년도 44,244백만원), 충남 25억임

### 3) 방안

-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위탁사업액 및 직접사업비 50억으로 5배 증액
  - 지원기관위탁사업 : 15억원(사회적기업 6억원, 마을기업 4억4000만원, 협동조합 4억8000만원)
  - 직접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35억(지역특화사업, 청년일자리허브 구축, 인재양성사업,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초시군 지원체계 강화사업등)

## 정책공약 3. 경기도 사회적경제 연구원 설립

경기도는 도 산하에 <경기도 사회적경제 연구원>을 설립하여 사회적경제의 주체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빅 데이터를 구축, 향후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1) 배경

-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 실태조사의 분산으로 종합관리 미비
- 경기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전략 수립, 교육훈련등 정책싱크탱크 역할 강화

### 2) 현행

-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모니터링 등 일부 시행 중
- 빅 데이터 구축 노력 및 종합정책 수립 불가
- 경기개발연구원내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현행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 3) 방안

- 개별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통합 실시 및 운영으로 빅 데이터 구축
- 조사연구, 전략수립, 교육연수등 정책싱크탱크 역할 부여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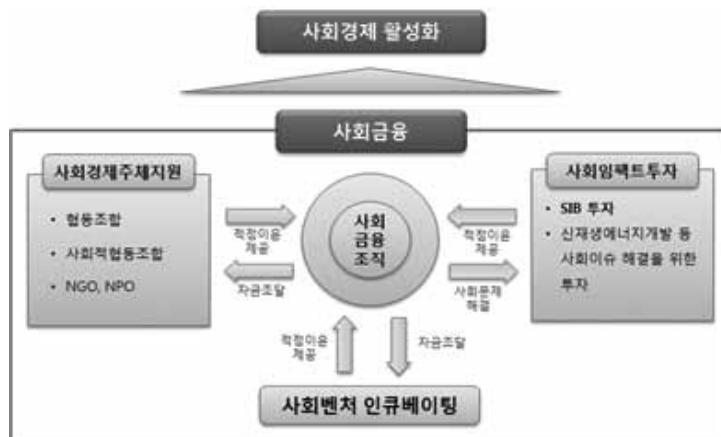


## 정책공약 4. 경기도 사회적금융의 설립

경기도는 중앙정부와는 별개로 경기도 내 사회적금융을 설립하고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 1) 배경

□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금융지원 및 SIB(사회임팩트투자)나 사회적 벤처 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필요



〈사회적금융의 구조〉

-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를 위한 금융지원 절실
- 서울시는 민관 공동 출자로 1000억원 규모 사회투자기금 운영 중
  - 2013년 1차 500억 조성
  - 노인자살률 예방을 위한 SIB사업 추진 발표
- 경기도는 사회투자기금 또는 SIB 관련 사업 등 사회적금융 사업 전무

### 2) 현행

- 없음

### 3) 방안

- 100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 사회투자기금 설치
-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투융자 지원
- 사회적벤처 육성

## 정책공약 5. 교육 및 인재 양성 강화

젊고 유능한 사회적경제인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 1) 배경

- 사회적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인재의 유치 필요
- 사회혁신, 사회적금융 등 첨단 분야 적극 개발 시 청년 실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음
-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중앙과 서울에 편재

### 2) 현행

- 경기도-삼성-성균관대 컨소시엄으로 사회적기업가 양성 프로그램 실시후 중단
- 사회적기업희망재단 등 민간, 수원시 등 시군에서 일부 프로그램 실시
-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사관학교 등 종합 프로그램 전무

### 3) 방안

- 경기도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센터를 별도 운영
- 경기개발연구원 사회경제센터나 경기인재개발원 등 산하기관에 위탁
- 대학, 사회적기업희망재단, 협동조합협의회 등 민간 자원 적극 활용

## 정책공약 6. 사회적경제 지역재생 거점지구제 도입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재생 수요가 높고 민관의 추진역량이 우수한 지역을 ‘사회적경제집중육성지구’로 선정해 새로운 지역발전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 1) 배경

- 낙후지역이 많은 경기도는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재생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동시 기대 가능
- 마을만들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경제 주체와 지역재생사업의 융복합 통해 효율성 제고
- 서울시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추진 중
  -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이 만드는 마을 단위 맞춤형 사업
  - 주민이 마을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물리적 환경과 함께 마을공동체의 재생을 도모

### 2) 현행

- 중앙은 부처 간, 지방은 부서 간 칸막이 행정으로 효율성 떨어짐
-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으로 행정업무 통합 추진

### 3) 방안

- 기존 산업요소를 통한 지역재생 가능성 낮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수요 및 추진 역량 우수한 지역 대상 우선투자지역 및 장기 지원사업 선정
- 해당 지역 내 지역개발형 사회적경제 주체의 연계 조직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향후 사업 추진 계획 작성
- 사업기간 최소 5년, 사업지역 특성 고려해 연 5억~10억 지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정비계획에 사회경제적 재생계획을 포함한 법률개정 및 지자체 조례 개정



〈주민참여형 지역재생사업 모형(서울시 참조)〉

## 정책공약 7. 유휴 공공자산의 위탁 경영

광역 및 시군 자치단체의 유휴 공간자산에 대한 사회적경제 주체의 위탁경영이 필요합니다.

### 1)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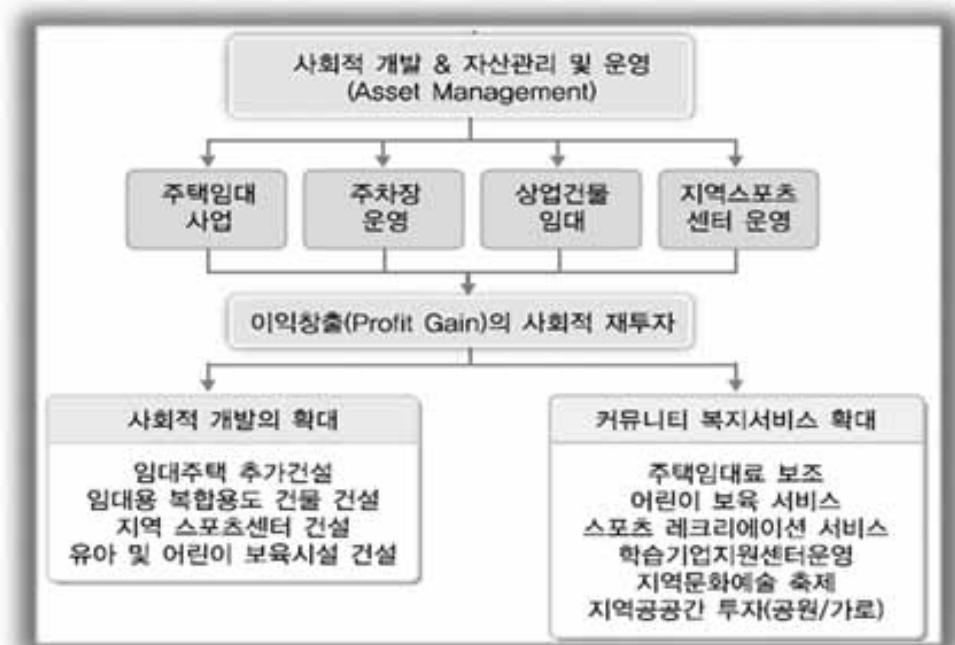
- 공공기관 이전, 인구유출, 지역산업 쇠퇴 등에 따라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내 유휴 공간자산 다수 보유
- 지역사회 문제 해결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소통 및 협력 공간 설립 통해 지역을 위한 유휴자산 활용 가능

### 2) 현행

- 없음

### 3) 방안

- 지역별 사회적경제 조직 및 주민공동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유자산공동체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탁경영
- 위탁기관은 주택임대, 주차장, 지역스포츠센터 운영 등 다양한 공간자산 활용



〈공공 유휴자산의 활용〉

## 정책공약 8.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의 위탁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주체의 육성이 가능한 보육, 교육, 돌봄 등 서비스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위탁 운영을 확대해야 합니다.

### 1) 배경

-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경제 분야의 경영 주체 중 절반이 서비스업종
- 공공사회서비스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맡김으로써 공공성 확보 가능
- 2010년 프랑스는 서비스 관련 2만5000개 사업을 사회적기업에 위탁, 30만 명의 지역 일자리 창출

### 2) 현행

- 경기도 내 없음
- 서울은 시립 전문요양원을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
- 충청북도는 청주의료원 중 보호자 없는 병원에 들어가는 인력을 사회적기업에 위탁

### 3) 방안

- 요양원이나 돌봄 등 광역 또는 시군 지자체의 특정 공공서비스사업을 해당 지역 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일괄 계약
  - 영국이나 스웨덴은 보육, 재활 등 사회서비스를 사회적경제 기관에 위탁
  - 포르투갈의 경우 공공사회보장시스템과 IPSS(사회적연대 민관기관) 사이의 협력계약 체결
- 현 정부에서 적극 추진 중인 방과 후 돌봄교실 등 새로운 공공서비스 영역 개척해 위탁 경영
  - 현 정부는 방과 후 돌봄의 보편적 실시를 위해 2014년부터 단계적 실시
- 비수급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기초보장제도 신설
-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조합 설립

## 정책공약 9. 판로개척 등 마케팅 지원 강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판로의 개척 등 마케팅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 1) 배경

- 영세하고 걸음마 단계인 사회적경제는 판로개척 등 마케팅 지원이 매우 중요
- 대다수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마케팅 실무 능력 부족으로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한 이론과 실무 능력 고양 필요

### 2) 현행

- 제품개발, 품질개선, 브랜드제작, 홈페이지제작 등 지원
- 사회적기업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 사회적기업 전시회 및 유통업체 연계 특별기획전 실시
-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 3) 방안

- 현행 지원의 확대
  - 특히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사회적경제 전 영역으로 확대 필요
  - 이를 위한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 구매 촉진'에 대한 조례 필요
- 사회적경제 주체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 복합매장 설치 및 운영
- 공동마케팅, 공동브랜드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 간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정책 실시
- 사회적경제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확대하여 경기도 공공조달의 5%를 사회적경제부문에 할당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제한경쟁입찰방식의 도입
- 자체 주관행사 및 축제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촉진
  - 이탈리아는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기업 브랜드 'Welfare Italia'를 개발해 대대적으로 홍보

## 정책공약 10. 사회적경제 홍보매체 발행 및 전문 사이트 운영

사회적경제 전반에 걸친 홍보매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전문 사이트가 필요합니다.

### 1)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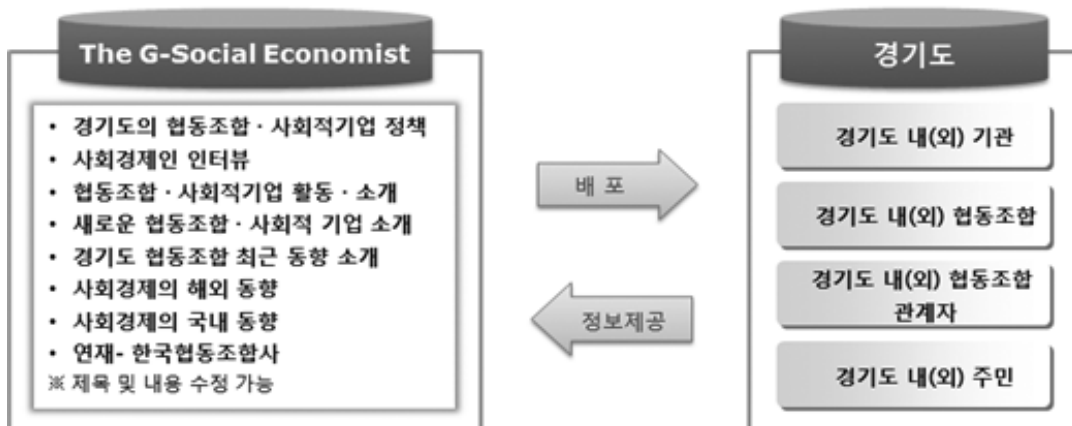
- 사회적경제 주체 대부분은 예산 부족으로 홍보활동 미비
- 사회적경제에 대한 홍보 매체 및 사이트 운영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의 핵심

### 2) 현행

- 없음

### 3) 방안

- 홍보잡지의 발행 지원(가칭: G-Social Economist)
- 홍보전문 사이트 개발 및 운영 지원



〈경기 사회적경제 매체 ‘G-Social Economist’ 발행 방안〉

## 기타 추가제안 공약안

**[전국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수집]**



## 공약 1. 제3섹터형 보육협동조합 운영

공립 보육시설 확충 과정에서 부모참여형 공동육아협동조합 방식과 연계한 '제3섹터형 보육시설' 설치 운영을 촉진하여 공공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부모교사 참여형 보육사업 다각화 도모함. 또한 고립적 양육을 통한 개별 양육자 커뮤니티 형성 촉진

### 1) 제안 배경

-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사례처럼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보육 공동체 활성화는 팽창하는 영리형 민간 보육기관의 경쟁 격화, 급식 부정, 어린이 학대와 같은 문제의 방지에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중요하나 시설설치 및 운영비 보조에 대한 재정부담으로 양적확충이 정체됨. 이에 지자체의 유휴부지 제공과 보육협동조합의 출자를 통한 건설비 부담 (자원혼합)을 통해 새로운 공익형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이 가능함

### 2) 제안 내용

- 공립 보육시설 확충 계획의 30%를 지역주민이 공동출자하는 보육협동조합과 함께 설립, 장기 위탁운영.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 국공립시설을 신규설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담을 완화
  - 자원혼합: 부지확보는 지방정부가 제공하고 건축비는 보육협동조합 및 생태건축협동조합에서 초기조달하며, 운영비 지원은 타 공립보육시설에 맞추어 제공되는 형태로 위탁 운영
  - 운영모델: 협동조합 방식으로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 시설구분: 국공립어린이집
- \* 사례: 이탈리아 볼로냐시 카라박프로젝트
- 직장보육시설의 보육협동조합 설립 및 전환 지원
  - 협동조합 전환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관련 법규 개선 추진
- \* 사례: 서울 노원구청 직장보육시설
- 지역의료체계와 연계한 병약아 보육
  - \* 사례: 서울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한아보육협동조합 설립
- 보육반장제도

## 공약 2.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구성

돌봄 영역의 사각지대를 채워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 지역 내 기관 등 돌봄 네트워크의 양육 역할 구조화

### □ 일시보육 공간 마련

- 유휴공간 확보; 초등학교, 어린이집, 평생교육원 및 작은 도서관 등 장소 이용 가능한 공간에 새로운 보육 담당자와 함께 일시보육 실시
- 초등 저학년 돌봄 공간 마련

### □ 마을단위 보육 품앗이 활성화

- 아이 사랑방 운영: 지역 내 유휴공간을 개방하여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와 아동들이 모일 수 있고 서로 간 육아정보 교환을 통한 바람직한 양육태도 향상 기여. 부모들의 전공을 공유하여 아동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부모대상 서비스를 공유

### □ 부모놀이교실 개설로 아동과 부모의 상호작용 증진

-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 내의 자원연결을 통한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기술 교육
- 정기적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과 스킨십을 통한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놀이문화)
- 아버지 놀이교실 운영: 놀이방법을 몰라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하는 아버지들에게 놀이문화 확산 및 보급

### □ 장애아 가족 행복나눔 서비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가족들을 위한 사례 관리
- 장애아동 부모의 지지적 서비스의 일환으로 공연관람 지원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 제공(장애아동 가족들의 경우 장애아동에게 미안하여 문화 활동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이 강함. 1년에 1~2회 정도 장애아동들을 보육해주고 부모들과 다른 가족들에게 문화공연 기회를 제공)

### 공약 3. 생산성 복지 공동사업장 개척 장애인 고용 창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규정에 의거 의무고용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에 다양한 사업 참여유형을 통해 장애인고용정책 변화의 기초 형성에 기여

#### 1) 제안 배경

- 국가 및 공공기관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3%, 2014년부터는 50인 이상 민간사업장의 의무고용률 2.7%로 장애인고용의 의무고용률 현실화 방안 마련 필요
- 그러나 1,000인 이상의 대규모사업장의 의무고용률과 공공분야 교육청등에 대해서는 의무사항 위반이 현저히 나타나는 현황

구분		상시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정부 부문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169,615	4,805	3.27
		지방자치단체	249,100	8,306	3.82
		교육청	390,033	5,113	1.48
	비공무원	중앙행정기관	38,953	786	2.45
		지방자치단체	76,318	3,495	5.48
		교육청	140,288	1,211	1.32
민간기업	300~499인	537,584	11,145	2.47	
	500~999인	668,115	13,392	2.38	
	1,000인 이상	2,198,686	35,166	1.88	

고용노동부 (단위: 명, %, 2012년 12월말 현재)

- 이에 생산성 복지 공동사업장유형 모델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 확대 및 취업 장애인의 안정된 근로유지 조건 형성 필요성 있음.

#### 2) 제안 내용

- 생산성복지 사업장 : 지적장애, 정신장애등을 가진 장애인을 고용하여 기능교육, 자립생활훈련, 힐링 치유 프로그램 운영
  - 개인별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
  - 정년퇴직한 전문가의 재능기부 및 노령인력 창출
  - 기본직종: 의류, 판촉물, 대기업납품 가능 비품 등
- 근로지원인을 연계한 중증장애인고용의 안정성 추구
  -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의 또 다른 인력창출방안으로 중증장애인의 업무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일자리 마련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된 장애인고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예산확보의 문제
  - 정부의 일자리창출사업과 장애인고용관련법령에 의한 근로지원인제도의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지자체의 일부 예산을 들여 정부와 지자체 공동의 목적사업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함.

## 공약 4. 사회적책임조달제 확립을 통한 소기업 보호 및 공정임금제 실현

공공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경제 부문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책임조달의 확산

### 1) 제안 배경

□ 사회적책임조달제도란?

-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고용창출, 고용안정성 등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면서 구매기제를 작동시키는 제도
- 사회적책임조달은 기존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는 계약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며,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조달을 실현하므로 사회적 경제 친화적 공공시장을 조성하는 의미

● 사례

\* EU(2012) : 사회적책임조달제

□ 공공서비스의 확산과 취약계층 등 경제적 약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 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유력한 방안은 '공공시장 기회의 확장'

□ 최저가격제로 설계된 국가 및 지자체의 기존 조달제도는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부문에게 커다란 진입장벽으로 작용

□ 공공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경제 부문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책임조달제도 등 다양한 공적 지원 기제를 확충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B]	비율(B/A)
'12년 실적	35,991,782	191,633	0.5
'13년 계획	34,506,932	313,307	0.9

\* 자료: 고용노동부(2013),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현황

□ 정부가 공공조달에서 사회적 경제 부문을 위한 기회 제공을 위한 노력은 이제 시작단계

- 2012년 기준,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규모는 1,916억원 규모로, 공공기관의 총 구매목표액의 0.5%에 불과

### 2) 제안 내용

□ 공공구매 목표제의 확대 : 총 공공기관 조달액의 3%(3조원)1) (2017년)

- 2012년 약2천억 원 → 2017년 3조원

● 자치단체의 약속

① 사회적 경제 제품 '의무구매공시제' 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 서울 성북구: 의무구매공시제 운영, 2천만 원 미만 수의계약 총 구매가능액 120억 원 중 20억 원 의무구매

② 사회적 경제를 위한 사회적책임조달 4개년 계획 수립(2015년-18년)

③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 조기 제정

- 2013년 12월 발의, 현재 국회 검토 중

□ (가) '공공서비스를 위한 사회적가치 기본법' 의 제정: 2014년

● 사례: 영국(2012) : 사회적 가치를 위한 공공서비스법 (Public Services(Social Value)Act)

● 자치단체의 약속

① (가) '사회적 가치를 위한 공공조달 조례' 의 제정

□ 사례: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가치를 위한 공공조달 조례 제정 예정(2014)

□ **지역사회의 신규 보육, 의료, 교육, 돌봄 등의 수요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과 전략적 공공서비스를 개발**

※ 신규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경제 부문의 공급 30%까지 확대

● 보육협동조합형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방과후 교육서비스 제공 : 방과후 돌봄교실 등

● 돌봄 사회적기업/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 의 실현

● 의료생활협동조합형 '도시보건지소' 의 확충

● 문화, 관광, 스포츠 분야 혁신형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역 여가산업 육성

● 실버고용안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가정돌봄서비스의 확충

● 치유전문 사회적 협동조합의 육성과 관련 서비스 확대

●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서비스의 확충

● 사회적 협동조합형 채무힐링센터 설립

□ **취약계층 등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하여 사회적 경제 부문이 '좋은 일자리' 를 선도**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지원 확대

● 사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 분 지원



# 2014 지방선거 사회적경제 공약 돌아보기 & 나아가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안인숙

# 지방정부의 약진과 중앙정부의 책임 방기

1.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
2. 지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3. 사회적경제 관련 행정체계 마련
4. 사회적경제 관련 지역 예산 책정

1. 지역 편차 극복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필요
2. 사회적경제의 원리를 존중하는 통합적인 정책 실현 미비
3. 당사자 역량 강화, 자본의 연대 가능케 하는 실험 필요



# 2014년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약

## 1. 행정조직 개편, 민관 거버넌스 체계수립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강화

- 사회적경제 통합 부서 설치
- 사회적경제위원회, 정책조정협의회 설치
- 통합 지원센터 설치
- 기본조례 제정
- 우선구매촉진 조례 제정

# 2014년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약

## 2. 사회적경제 조직 역량강화와 기반조성

- 사회서비스사업의 사회적경제 조직 위탁 운영 확대
- 유휴 공공자산 사회적경제 조직 위탁 경영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중개센터 설치
- 사회적경제 생산품 복합매장 설치
- 지방정부 주관 행사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 촉진

# 2014년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약

## 3.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재생

- 내고향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조성
- 사회적경제 우선투자지구 지정 및 종합지원 추진
- 주민참여형 지역공동체회사 설립을 통한 지역재생

# 2014년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약

## 4.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사회서비스 제공

- 지역돌봄 서비스를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강화
- 주민 건강지킴이 '마을건강위원회' 와 '건강 협동센터' 운영
- 사회적경제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2014년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약

## 5. 사회적경제 교육과 인력 양성

- 초중고생 사회적경제 기초교육 실시
-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 진로체험 동아리 활동/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 사회적경제 학습 동아리 육성
-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한 지원 및 거점 공간 제공

# 2014 사회적기업

## ① 사회적기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노력 확대

- 취약계층 일자리 지속가능성 제고
-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사회적기업의 전략 및 비전과 결합

## ② 사회적기업의 판로지원

-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설치
-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촉진 조례 제정

## ③ 초중고 사회적경제 교육 확대

- 초중고생 사회적경제 기초교육 전면 실시
- 학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 연계 진로체험 · 동아리 ·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및 활성화
- 테마형 수학여행 확대

## ④ 유휴 공공자산의 사회적기업 위탁 경영

- 유휴 공공자산 사회적기업 위탁 경영
- 사회적기업 공유자원허브 설립
- 1공공기관 1사회적기업 매점/카페 설치

## ⑤ 사회공공서비스분야 사회적기업 위탁운영 확대

- 공공분야 서비스사업의 사회적기업 위탁운영 확대

# 2014 사회적기업

## ⑥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및 사회적경제위원회

- 광역단위의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 ⑦ 사회적경제 관련 행정 통합 및 지원체계화

- 사회적경제 통합 부서 및 통합지원기관 설치
- 사회적경제 전담공무원(우수인력) 장기간 배치
-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센터 설치

## ⑧ 지자체 형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 민관 합동 로컬 거버넌스 형 공동 협력기금 조성 · 운용

## ⑨ 지자체 주관행사 및 축제에 사회적기업의 참여 촉진

- 행사 · 축제 환경관련 용역 사업 사회적기업 참여 보장
- 행사 · 축제 주요 콘텐츠에 관련 분야 사회적기업 참여 보장

## ⑩ 사회적경제 지역재생 거점지구제 도입

- 사회적경제 우선투자지구 지정 및 장기적 종합지원 추진

# 협동조합연구소 5대 공약

## 2014

### ① 협동조합 공동창업센터 설립 및 운영

- 초기 협동조합의 체계 안정화에 대해 기여
- 시군구 협동조합연합회 혹은 협의회에서 운영 위탁

### ② 전략분야 협동조합 육성(광역 중심)

- 전략분야 협동조합의 탐색과 연구
-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원/지역개발협동조합 육성
-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전략분야 확산 추진

### ③ 협동조합 교육 다양화 및 강화

- 협동조합 운영 심화교육프로그램 운영
- 협동조합 학습조직 지원
-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지정 및 역량강화



# 협동조합연구소 5대 공약 2014

## ④ 협동조합 전담팀 설치 및 담당자 역량강화

- 협동조합팀 설치 (사회적경제과 설치와 연계)
- 자원에 의한 담당 지정 및 최소 2년 업무배치
- 공식정책협의 월 1회 이상 실시/분기별 지자체장 협의

## ⑤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 협동조합 설립 활동에 대한 공적 지원
- 해당 바우처의 30~50% 수준의 우선배분 조례 제정

# 2014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1.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지원 조례 제정
2. 자활기금 활성화 방안 마련
3.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맞춤형 기초보장제도 신설
4.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역할 확대
5. 지역자활센터 기본시설 지원 및 운영 지원
6.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7.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8. 지역일자리 창출형 사회서비스 사업 개발
9. 자활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제도 마련
10.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2014 대전충남충북세종

## ① 사회적경제 지원시스템 강화

공약 1. 광역단위 사회적경제 협의체 설치

공약 2. 광역단위 사회적경제과 설치

공약 3. 기초단위 사회적경제 협의체 및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공약 4. 각 지자체에 사회적경제 전담공무원 배치

공약 5. 지역수요를 수렴할 수 있는 민간 사회적경제 대표조직 육성

## ② 커뮤니티 뉴딜 방식의 도시재생 실현

공약 6. 쇠퇴지역의 결핍유형과 주민역량 향상 가능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지역적 특성 구분에 입각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공약 7.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통한 연대와 협동경제형 지역재생의 추진

공약 8. 주민주도형 커뮤니티뉴딜 방식의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커뮤니티지원센터 설립 운영

## ③ 연대와 협동에 기초한 좋은 일자리, 행복한 일터 확대

공약 9. 여성 : 경제활동참여 확대와 가족 친화적 일터 만들기

공약 10. 노인 : 지역사회 필요와 결합된 생산적 공익 노동

# 2014 대전충남충북세종

## ④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기금 조성 및 확장

공약 11. 사회적경제 기금 : 사회적경제 조직과 기존의 제도와의 연계

공약 12. 사회적경제 기금 :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기준 마련

공약 13. 사회적경제 기금 : 사회적 투자 조성 및 강화

공약 14. 사회적경제 기금 : 금융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 확보

공약 15. 다양한 주체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가칭)사회적금융재단 조성

## ⑤ 협동과 상생의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공약 16.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공약 17. 정규 교과과정에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내용 확산

공약 18.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100개 육성

## ⑥ 지역에너지체제 구축을 통한 사회적경제 확대

공약 19.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도입

공약 20. '소규모'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지원

공약 21. 적정기술(사회기술)에 대한 지원강화

# 2014 대전충남 충북세종

## ㉗ 지역혁신을 만드는 지역인재 육성

공약 22. 청년단체 활성화 및 네트워크 거점 공간 제공

공약 23. 사회자본형 청년 정책 플랫폼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공약 24.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창출 및 확대

공약 25. 인재육성 펠로우 기금 조성

공약 26.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지역형 학사학위제도 도입

## ㉘ 당사자 조직 입장에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통제안

공약 27. 지자체 행사와 연계한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

공약 28. 사회적경제 조직 생산품 유통채널 확대

공약 29. 사회적경제 조직 공공시장 참여 확대

공약 30. 사회적경제 활동공간 확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변화

공약 31. 생활권 단위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구축

공약 32.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기금 조성

공약 33. 충북형 전문 사회경제연구기관 설치

## ㉙ 활동 영역별 발전 모델 및 신규 사업 모델

공약 34. 환경 및 자원순환 분야 시스템 개선

공약 35. 교육 및 문화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공약 36. 지역돌봄 서비스를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강화

공약 37. 농식품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 2014 경기도 사회적경제 대표자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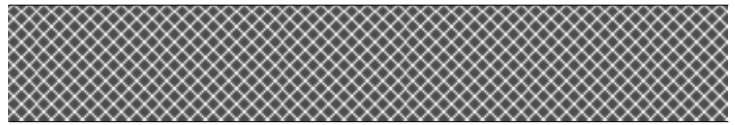
1. 정책 추진체계 및 민관거버넌스 구축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
3. 경기도 사회적경제 연구원 설립
4. 경기도 사회적금융의 설립
5. 교육 및 인재 양성
6. 사회적경제 지역재생 거점지구제 도입
7. 유희 공공자산의 위탁 경영
8.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의 위탁
9. 판로개척 등 마케팅 지원 강화
10. 사회적경제 홍보매체 발행 및 전문 사이트 운영

# 2014 기타 추가 제안

1. 제3섹터형 보육협동조합 운영
2.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구성
3. 생산성 복지 공동사업장 개척 장애인 고용 창출
4. 사회적책임조달제 확립을 통한 소기업 보호 및 공정임금제 실현

2018년 지방선거  
공통공약 워크숍

**공약 개발**  
**활동 공유**







##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 2018년 6.13 지방선거 사회적경제 영역 정책공약 및 추진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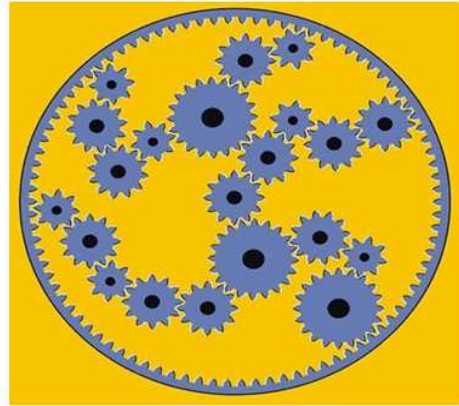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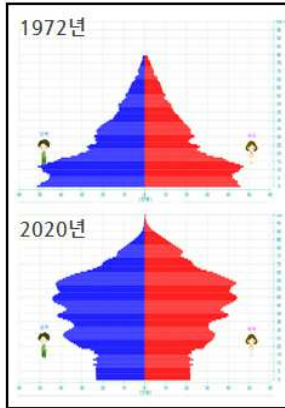
류홍번(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 1. 들어가며

-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는(이하 네트워크)는 2월 사회적기업활성화전국네트워크에서 명칭 및 조직재편이 결의되었으며, 2011년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과 목적 실현을 위해 시민사회 중심으로 설립되어,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공공구매 등 판로확대,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등을 중심으로 활동해왔음. 조직적으로는 중앙 사무국을 비롯해 15개 광역단위 네트워크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으며, 중앙 차원의 제도개선 보다는 지역 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모색해왔음.
- 네트워크의 비전이자 사회적 목표를 지역단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수립하고 있음. 즉 사회적경제를 자립과 순환의 지역경제 발전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전략 및 성장동력으로 세우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한 일환으로 기대만큼의 성과는 만들지는 못했지만 2015년 사회적기업활성화 표준조례(안) 작성 및 2017년 사회적경제활성화기본계획 수립(안)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 지역 순회토론회, 정책반영을 위한 행정 및 의회와의 간담회 등의 노력을 진행한바 있음.
- 2018년 올해는 사회적경제 우수지자체 평가사업과 어워드를 개최해 지자체들이 사회적경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책으로 수립하고 촉진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 중에 있음. 아울러 2018년 6.13 지방선거를 맞아 15개 광역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사회적경제 분야 정책공약 제안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경기도 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의 경우 사회적경제 3대 공약을 작성해 추진 중에 있고, 4월 중순 15개 광역네트워크와 정책워크숍을 통해 정책공약 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임.
- 오늘 한국 사회적경제운동을 대표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공동 정책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음. 이번 정책워크숍을 계기로 6.13 지방선거 정책공약 제안 및 협약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나아가 한국 사회적경제 활성화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2. 지역사회 발전 및 성장동력으로의 사회적경제

### 1) 지역의 위기



-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위기적 인구구조
- 지역의 위기는 대책 없는 도시로 도미노 가능성  
→ 지역사회의 내부의 가장 큰 위기 요인
- 지역의 산업구조는 국가 산업구조의 파편화
- 지역의 경제구조는 대도시에 종속  
→ 지역경제는 외부 영향에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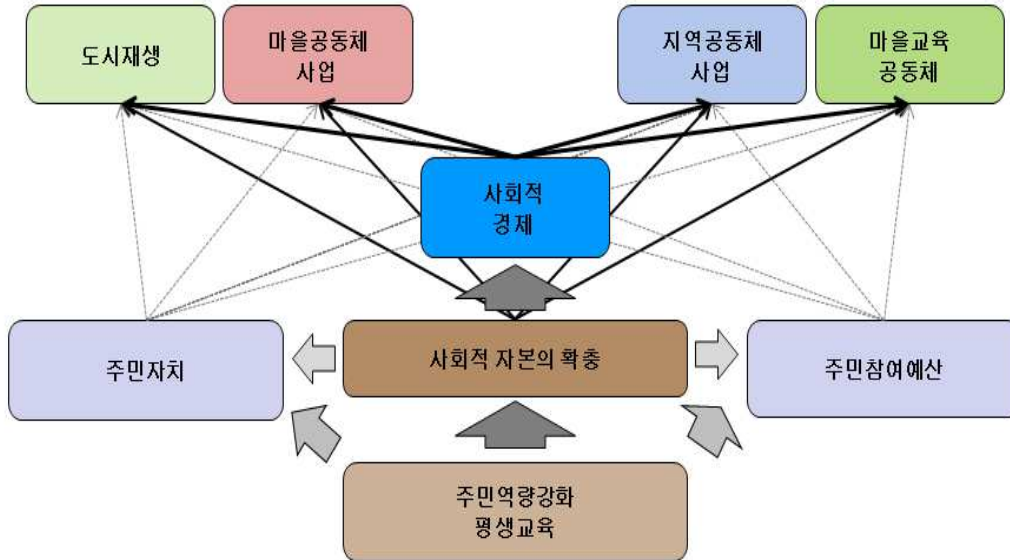
- 지역은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역량 부족
-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 구조를 개편  
→ 지역침체의 악순환, 위기의 가중
- 생존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대부분 중앙공급
- 지역의 공간과 자원은 중앙 시스템에 동원  
→ 중앙 시스템의 문제발생시 위기대응에 취약

- 이미 대부분의 도시들이 도시화 완성단계(포화상태)에 도달했고, 그 결과 대규모 자본(자원)투입형 하드웨어 지역개발이 불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임.

- 아직 여러 지자체에서 대기업이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도 않을뿐더러 설사 유치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또다른 도시공동화 유발, 지역 자본(이익)의 유출, 지역소상공인들의 몰락 등의 문제로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기도 해 더 이상의 발전수단으로 기대하기가 불가능함. 이제는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함.

## 2) 지역사회 새로운 발전전략으로서 사회적경제

- 지역사회 새로운 발전모델로서 자립경제 및 순환경제 시스템 마련 필요
-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 연계



- 초기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최근 이러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넘어 양극화 해소, 도시 및 지역재생, 복지 및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국민의 삶 질과 관련된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특히 지역에서는 지역발전 전략, 성장동력으로 확장되고 있음.
- 이에 비해 지역에서의 사회적경제는 지역의 모든 분야, 특히 시민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결합되고 작동하고 있음. 사회적경제와 사회서비스, 사회적경제와 에너지,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사회적경제와 문화, 사회적경제와 교육, 사회적경제와 먹거리 등 사회적경제 등 모든 영역과 연계해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흐름과 모색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이는 이제 사회적경제가 단순한 하나의 특수영역이기보다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 방식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발전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함.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가 사회적경제를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대안과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 3. 2018년 6.13 지방선거 정책공약 작성 방향 및 추진계획(안)

#### 1) 추진배경

- 선거는 시민사회의 정책을 지자체 정책에 반영하기 가장 좋은 기회이자 수단임.
- 특히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의지가 강하고 집권여당 차원에서도 사회적경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제안에 대한 관심과 수용 분위기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
- 이미 이전의 많은 지방선거에서도 시민사회의 정당 또는 단체장 후보자와의 정책 공약 제안 및 협약을 통해 행정의 주요 정책으로 반영되어 실현되어 온 경험이 적지 않음.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사회적경제 영역 정책공약이 제안되기는 하였으나 전국단위로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지는 못했음.
- 따라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맞아 각 정당 및 후보자(단체장 중심)들에게 사회적경제 관련 핵심 정책공약을 제안하고 협약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대대적인 확산은 물론 질적 발전을 이루는 계기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2) 정책공약 작성 및 추진방향

□ 지자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와 연계한 사회적경제 제도화 과제 중심으로 추진.

- 영역별 과제보다는 통합과제 중심으로 수립
- 지자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지표와 연계

- |                                 |
|---------------------------------|
| ▪ 조 직 : 거버넌스, 전담부서, 중간지원조직 등    |
| ▪ 정 책 : 조례, 기본계획 등              |
| ▪ 판로지원 : 공공구매, 판로개척, 제품홍보 등     |
| ▪ 인식개선 : 공무원교육, 대시민교육, 전문인력양성 등 |
| ▪ 재 정 : 예산, 자산 등                |

- 단, 연대 시 정책공약 내용은 조정

□ 사회적경제 추진 기관 및 단체, 당사자 조직 등과 공동으로 추진

- 공동 워크숍 및 토론회, 공동 정책공약 제안, 정당 및 후보자와의 공동 협약 등

□ 단순한 정책제안을 넘어 후보자 및 정당과의 정책협약, 당선자와의 정책간담회, 공약 실행평가 등 지속적인 운동과제로 추진

### 3) 네트워크의 사회적경제 영역 10대 정책공약(안)

- 본 정책공약은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된 공약이 아니며 4월 워크숍에서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정책공약 과제를 확정할 예정임.
- 이후 공동추진단체들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공동 정책공약으로 조정할 예정임

- ① 지역 사회적경제 비전 및 발전전략으로서의  
    **시민(도민) 참여형 <사회적경제활성화기본(발전)계획> 수립**
  - 현재 사회적경제기본계획은 광역 5개, 기초 5개 등 10개 지역에서 수립됨
- ② 공공구매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현재 21개 지역에서 조례 제정되어 있음(광역 4개, 기초 17개)
- ③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확대운영**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포괄하는 지원센터 설치
  - 소규모를 넘어 최소 중대형 규모로 확대 개편
- ④ 행정의 전문성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전담부서 설치 및 사회적경제 행정협의체> 구성**
  - 여전히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행정협의체 구성은 거의 없음
  - 정책전문성 부족 및 칸막이 행정 노정
- ⑤ 실질적인 거버넌스 체계로서의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사회적경제위원회 중심의 거버넌스는 한계.
  - 서울시 사례와 같이 행정, 영역별 당사자조직, 중간지원조직, 시민단체 등을 포괄하고,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정책협의기구로서의 거버넌스 기구 필요
- ⑥ 사회적경제 거점 및 지원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 협동화단지 또는 전용부지> 조성**
  -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입주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및 부지 마련
- ⑦ 사회적경제 확산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체계 마련>**

- 지역에 남아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인재양성.
- 공무원 및 당사자 조직 전문성 제고,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시민인식제고 등
- ⑧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 실현을 위한
  -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
  - 지역공기업 및 재단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 확대 및 실현 유도
- ⑨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재정지원을 위한
  - 〈사회적경제 금융 및 재정 지원체제〉 마련
  - 시금고 및 신협, 신보 등 지역연관 금융기관과 지원체제 마련
  - 사회적경제 기금 마련 또는 일정액의 예산 및 사업비 확보 등
- ⑩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 〈사회적경제 2030 비전선포 및 이행·평가체제〉 마련
  - 위의 정책공약에 대한 시민적 약속 및 단체장의 추진의지와 계획 천명
  -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체제 마련, 시행으로 실행력 담보

**\*\*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개정> 정책공약**

- 본 과제도 정책공약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 중이나 이미 100개 이상의 상당수 지자체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정책공약 제안으로는 참신성이 낮을 수 있어 일단 10대 정책공약에서는 제외하였음.

**4. 향후 추진계획**

- 15개 광역네트워크와의 정책워크숍 개최 : 4월 중순 - **자체 협의**
  - 오늘 협의된 정책공약 내용에 대해 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협의 예정
- ‘사회적경제 정책공약제안 토론회’ 개최 : 4월 말/ 5월 초 - **공동 추진**
  - 정책공약에 대한 지역의 의견 수렴
  -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정책공약 마련 : 제안된 정책공약에 대한 추가/제외
- 정당 및 후보자와의 정책공약 협약 추진 : 5월 중순 또는 6월 초 - **공동추진**
  - 정책공약 수용여부 확인
  - 수용한 정책에 대한 협약 추진
  - 중앙은 정당과 지역은 후보자와 협약 추진

## 마을 부문

영역	대분류	정책 공약명	세부 내용
1. 양육 & 돌봄 & 교육	아동/청소년 돌봄	공동육아를 통한 일자리 창출	
		창의놀이터	시설 제공
		보육교사 노동조합 설립 보장	
		청소년지원센터 확대	시설 제공
		부녀회 활성화	
	노인 돌봄	경로당 사라지지 않게 하기	시설 유지/ 조례 제정
		이웃 식구 만들기	
		세대간 나눔 품앗이	
	소수자 돌봄	소수자와 함께 살기	인권조례, 인권센터, 활동가 양성
		유니버설 만들기	인식개선, 캠페인
		길냥이와 함께하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하는 돌봄	생활지도사 파견
		우리마을 건강주치의	건강리더, 상호돌봄체계 마련
	교육	마을학교/ 방과후	교육사업/민관학 거버넌스/마을장학금
		혁신교육-교육센터 준비 공론장	더 많은 논의 필요하다
대전시 혁신학교		입학사정관제 수정/ 교장공모제 등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교사, 50대여성 서포터 양성	
2. 도시재생과 연관된 주거 환경	도시 재생	지속가능한 골목 만들기	마을길 만들기/재활용 수거장, 집하장 설치
		마을공동체 활성화	에너지자립마을, 생태마을, 주민공간 조성
		갈등해소/상호 교류·연계 활성화	젠트리피케이션, 오버투어리즘 해결
		기본소득제도	도시 재생과 결부하여
		주민 참여권리 높이기	정보 공개, 공론장
	지속가능발전	빗물관리	조립식 빗물 가두리장 설치
		에너지 인식 개선	교육
3. 마을사업을 잘 집행하기 위한 거버넌스/제도에 대한 개선		행정분야 개선	행정의 의식 개선
		네트워크 분야 개선	네트워크 사업 촉진
		활동가 기본소득 보장	
		협치와 생활정치	민주시민교육/ 의제 제안 실천
		농촌마을 거버넌스/마을 거버넌스	농촌공동체 기본조례 제정
4. 시민자산화		공유공동체주택지원기금	
		마을지원기금	마을지원기금 설치 제도화
		공공 공간	마을 공동 놀이터/마을텃밭
		동네소통공간	우리동네 대청마루 만들기
5. 주민자치		찾동과 협치	홍보/자치위원회 참여
		마을반장제	통장제를 마을반장제로 변화
		마을기본계획 개선	
		통장투표제	
기타	청년 분야	일상이 예술이 되는 삶	마을문화예술 공간
		혼자이지 않은 삶	청년지원센터
	농촌 분야	자립마을 만들기	
		수익 창출하는 협동 종합공동체	
		이장 제도 개선	
		1차농산물 가격개선·시민의식 함양	
		지역경제와 로컬푸드	먹거리건강 예산 편성/ 정보공개/ 직거래



## ■ 주요 5개 영역 공약 아이디어 소개

민선 5, 6기를 거치면서, 마을 정책은 지방정부 정책 거버넌스로 본격화 되었습니다. 안산, 진안, 강릉의 경우,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된 지 벌써 10년-26950930

이 지났습니다. 마을 정책은 민간주도 아래서 다양한 실천과 기획, 실험을 하며, 발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요한 5개 영역의 문제 인식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확장되었습니다. 5개 영역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①양육&돌봄&교육’, ‘②도시재생과 연관된 주거 환경’, ‘③마을 사업을 잘 집행하기 위한 거버넌스 및 제도에 대한 개선’, ‘④시민자산화’, ‘⑤주민자치’입니다.

### (1) 양육&돌봄&교육과 관련된 공약 아이디어

#### ① 아동, 청소년 돌봄에 대한 아이디어

‘아동과 청소년도 마을의 주체이고 돌봄과 양육의 대상으로만 규정되어선 안됩니다. 마을은 돌봄과 양육, 그리고 교육장이며, 가정을 넘어서는 삶의 터전이다. (...) 그러므로 마을은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이 주민의 일원으로 등장하고, 마을만들기의 주체로 활약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여성은 마을에서 다양하게 민주적으로 활동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체이고, 마을의 지속적인 성장과 마을을 움직이는 힘은 특히 여성에게서 나옵니다. 활동성이 강한 여성은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육아, 살림경제, 상담, 교육, 돌봄, 나눔 등 대안적 노동과 사회적 자본의 경제적 가치로 마을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공약명	구체적인 내용
공동육아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공동 육아 형태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 및 학부모들의 자기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연계
창의놀이터	- 아이와 부모와 함께 만들고 즐길 수 있는 창의놀이터이자, 놀이 공간이 전시 공간인 예술 놀이터로 아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과 시설 제공하여 상상력을 확장하고, 창조적 능력 개발, 사회 정서적 발달 장려 ex) 성동구의 마을계획사례를 예로 들어 민/관이 함께 진행하는 정책적인 루트도 함께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보육-보육교사 노동조합 설립 보장	- 보육교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재편이 필요함 ex) 보육(인권)-표준보육료 모두 함께 적용하라/국가는 교사들 급여를 지급하라/교육과정(누리과정,표준보육)을 넣지 말라/보육-보육교사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권 또한 보장될 수 없다/보육교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주민들 대상 인권교육이 필요하다/인권침해 사례 은혜 말고 공론화가 필요하다/보육분야 여러 가지 정책제안이 필요하다...등
청소년 지원센터 확대	- 청소년 지원센터 확대 또는 초등고학년 공동 돌봄 지원 ex)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건강한 간식/혼자 방치된 아이들이 함께 놀기
부녀회 활성화	- 돌봄의 주체로서 부녀회 활성화 및 제도 개선 - 마을 정책과의 점점 찾기

② 노인 돌봄에 대한 아이디어

‘노인이 살아가야 할 곳은 마을입니다. 노인이 마을 안에서 돌봄과 배려, 섬김의 대상으로만 대상화되지 않도록 마을 안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마을 안에서 노인은 사회적 역할이 끝난 배제 대상이 아니라 노숙·노련·노익장이란 긍정의 모습으로 지역사회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돌보고 지켜주는 적극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노인의 제2 인생이 마을 안에서 꿈꿔지고 실행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정책공약명	구체적인 내용
경로당 사라지지 않게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의 쫓겨나는 원주민들 중에 경로당을 잃은 노인들이 있음을 확인, 실태조사 진행</li> <li>- 부동산개발로 경로당이 지속적으로 사라지지만, 현재 조례상에 있는 조건(전세로만 가능, 제한금액 있음)으로는 신규 경로당이 생기기 어려움. 경로당의 수가 적어도 줄지 않도록 현실에 맞고 노인의 커뮤니티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로 개정해야 함</li> </ul>
이웃식구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가구 노인과 독박육아 부or모가 가까이 사는 이웃으로 만나 함께 반찬을 만들어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외로움과 힘듦과 걱정을 나누고 삶의 지혜도 배우며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li> <li>- 이웃식구를 만들어보자는 의미</li> </ul>
세대 간 나눔 품앗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네어르신과 청소년이 서로 품앗이 개념으로 어르신들은 동네역사해설, 요리(김치 담그기, 옛날음식등등) 옛이야기등을 하고 청소년들은 핸드폰사용설명, 책 읽어드리기, 말벗등 등을 해서 세대 간 소통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자</li> </ul>

③ 소수자 돌봄에 대한 아이디어

‘마을은 장애인들이 자기결정과 선택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터입니다. 장애인은 마을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배우고 자립을 위한 경제활동을 통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나가고, 보호막 속에서 피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권리를 확장하도록 마을은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삶의 역량이 성장하도록 지역사회 중심, 현장 중심의 다양한 마을내 통합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책공약명	구체적인 내용
인권에 답하다: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모두와 함께 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량구 인권조례 제정</li> <li>- 지속적인 주민인권교육 시스템 지원</li> <li>- 공무원 인권교육 필요(동영상교육금지)</li> <li>- 중량구 인권센터와 노동인권센터 설치</li> <li>- 중량구 특수학교 설립, 장애인시설확대</li> <li>- 양성평등주간 행사 성인지적 관점으로</li> <li>- 인권활동가 양성</li> <li>- 소수자 인식개선 마을활동</li> <li>- 인권교육 활동가가 마을 행사에 적용할 수 있는 ‘인권보장 가이드’를 만들기</li> <li>- 특수학교 설립, 장애인자립지원센터 확대</li> </ul>
유니버설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비장애인 구분없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li> <li>- 권역별 모니터링실천단 운영, 일상적 실천 활동, 장애인식개선교육과</li> </ul>

	캠페인, 실태조사 등 - 장애인/무장애인의 인권과 함께 정책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 그리고 시민문화(인식)을 어떻게 풀어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
길냥이와 함께하는 마을	- 우리마을주민들이 동네에 살고 있는 작은 이웃인 길냥이들에게 밥도 주고 중성화 수술(TNR)도 시켜주어 사람도 동물도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든다
주민들이 함께하는 돌봄	- 동네주민들이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에 생활지도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하는 삶을 지원하자
우리 마을 건강주치의	- 의료를 포함한 생활전반을 상담하며, 개인이 책임을 지고, 의사에게 진단 받는 것이 아닌 모두가 건강의 주체로 되기 - 건강자원연결, 상호돌봄체계 - 구별 건강리더 활동 보장

④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

‘오늘날 경쟁주의 교육은 성적을 주요한 성과지표로 삼아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포괄적 교육 지원 역할을 배제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학교는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지역학교로서의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교육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중요한 영역입니다. 학교의 교사와 교육에 관심 있는 주민은 함께 ‘마을 학교’와 관련된 조직을 만들어 서로 협력하고, 이를 통해 교과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풍부한 교육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지역사회와 매우 긴밀하며,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므로 이를 마을과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의 마을 활동도 중요하며 동시에 학교 밖에서의 교육관련 활동과 상호연계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정보와 관련하여 학교 안과 밖에서 활발한 정보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공약명	구체적인 내용
학교와 마을을 잇다: 마을학교와 방과후,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랑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필요</li> <li>- 청소년 공간 만들고 지원하기</li> <li>- 폭력예방 민관 거버넌스 필요</li> <li>- 장학금은 필요한 학생들에게</li> <li>- 명문고보다 특색있는 고등학교를</li> <li>- 학력신장이 아닌 다양한 방과후 교육을</li> <li>- 교육경비로 학교를 줄 세우지 않기</li> <li>- 주민/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li> <li>- 학부모가 학교폭력 예방에 참여하기</li> <li>- 주민들의 다양한 학습모임 만들기</li> <li>- 학교에 마을 활동 소개하고 연계하기</li> <li>- 마을장학금 만들기</li> <li>- 마을에서 방과후 돌봄시스템을 만들기</li> <li>- 교육을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li> </ul>
혁신교육-혁신교육 센터 준비를 위한 공론장 마련	- 자유학기제 학년을 다시 논의하자(고1)/아이들이 원하는 혁신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묻자/민주적인 회의구조, 합의의 절차, 투명한 정보공개 등 기본기를 다지자/사업수행에 급급하지 말고 비전과 미션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마을이 학교다-아이들이 행복한가?/마을 곳곳에 학교를 만들자/틀 없는 혁신을 하자

	- 홍보가 부족하다/소식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주민대상 혁신교육 이해교육이 필요하다/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교육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혁신교육센터 준비는 많은 논의 끝에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추진해야 한다
대전시 혁신학교	- 교장공모제 - 입학사정관제 수정 - 다양성 교육 활성화 - 자유학기제, 고등방과 후 수업 - 학교운동장, 강당 등 공공 공간으로 활용 - 장사서를 두고 학교도서관과 마을도서관의 연계를 늘림 - 학교운영위의 학생, 교사, 학부모 활동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	-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단위 만들기 - 할머니들이 마을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기 -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지 50대 여성들 - 경력단절 여성들의 유희 인력들의 자리 필요

(2) 도시 재생과 관련한 주거 환경

① 지역 재생과 관련된 아이디어

‘우리는 과거의 토건적 개발이 지역사회를 파괴하고 마을의 원래 주민을 추방해왔던 경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면 철거와 재개발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아니라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점진적인 재생 방식이 이미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역 재생 방식은 현재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오래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유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마을 운동은 마을관계망의 지속적 형성을 전제로 하는 재생 방식을 존중합니다. 생활관계망의 회복과 활성화를 기본으로 하는 마을 운동도 앞으로 주거와 공원, 주차장 등의 하드웨어 공간을 공동자산으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지역재생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동체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점진적 재생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책공약명	구체적인 내용
지속가능한 골목 만들기	- 청결, 테마, 재미, 공유를 고려한 마을 길 만들기 사업 - 재활용 수거장의 동네별 소규모 집하장 설치 * 운영위의 구성:관내 통장을 중심으로 수거자(동네 어르신들)와 관리와 선별과 판매등 동네 주민이 수행/수익금은 참여 주민의 일정 소득과 동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진정으로 삶에 도움이 필요하신분들께 제공/일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자체 제공
마을이 대안이다: 생태마을, 에너지자립마을,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활성화	- 공유 공간 정보 공개 - 권역별 주민공간 조성 및 개방 -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사업 - 동별로 복지문화센터 필요 - 마을공동체의 힘기르기 - 많은 경험과 실험 해보기 - 마을의 자원 활용하고 공유하기

	- 아이와 어른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도시재생	- 마을의 특성화하여 홍보물 제작 - 마을공동체에 걸치기 사업이 많다/자기반성이 필요하다/위탁을 받을 경우 디테일하게 논의하자/마을활동가 모두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같은 비전을 만들어 보자/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마을지원센터-소통협의체는 누구인가?/마을공동체위원회는 무엇을하는가?/평가 후 계획을 세우자/2018년 계획을 세우자/2018년 마을공동체센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갈등해소, 상호 교류와 연계를 위한 활성화 방안 강구	- 심화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오버투어리즘,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 젠트리피케이션, 오버투어리즘은 정책적으로 풀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도시재생과 결합한 기본소득제도	- 낙후 및 공동화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 원도심 살리기 운동과 결부하여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고려
주민들의 참여권리 높이기	- 지역에 동주민센터 이전 계획이 완료되었으나 그것에 대해 주민이 공유 받지 못하고 활용 안에 대한 공론과정이 없었음을 발견 - 주민 센터 건물 등 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에 이전계획이나 활용기회가 생겼을 때, 해당지역 주민들이 그에 대한 정보를 고지 받고, 주민들이 그 계획-이전계획, 활용방안 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론장 필요함.

## ②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

‘우리는 ‘전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는’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희망합니다. 이제는 개인이 속한 다양한 수준의 생활 공동체 안에서 합리적인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다음 세대의 자연자원까지 착취하는 소비문화를 지속하면서 공동체의 미래를 희망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공약명	구체적인 내용
빗물관리	- 상습침수구역에서 조립식 빗물 가두리장 설치로 빗물관리하자. <i>ex) 빗물모아 건물화장실, 미세먼지, 청소활용</i>
에너지인식개선	- 에너지인식개선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i>ex) 에너지자립 마을 탐방</i>

## (3) 마을 정책에 대한 거버넌스 및 제도 개선

‘행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동시에 공무원 스스로 마을 만들기의 철학과 방법론을 더욱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의 시스템이 현장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정비하며 민관협력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 내부 역량강화에 더욱 집중도 해야 합니다.’

정책공약명	구체적인 내용
행정 분야 개선	- 개인 및 조직의 변화보다 행정의 변화가 더 요구됨 - 공간지원, 행정가들의 의식개선, 마을소통과 신설, 마을에 호의적인 구청장

	배출, 경제적 안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마을 내 경쟁분위기 개선, 공모사업 지원의 유연성 확대
네트워크 분야 개선	- 개별적 활동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 활성화로 연계활동 촉진 - 단체아이디어공유, 네트워크파티, 연합사업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기본소득의 보장	- 활동가의 노동권 보장, 공모사업의 프레임 변화를 위한 정책 제안
협치와 생활정치: 주민자치시대, 주민은 어떻게 주인이 될까?	- 월 1회 민주 시민 교육운영 - 일상 생활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실천 플랜 - 월 1회 생활정치 모임하고 구의원들과 협력하기
농촌 마을 거버넌스 구축	- 농촌정책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민관협치 시스템을 구축한다. - 농촌 공동체 활성화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 및 정책위원회 신설 - 읍면 단위 주민생활권에서의 농촌정책 강화 - 다양화된 주민 구성과 '필요, 욕구'를 반영하여 주민 참여의 경로 확대
마을 거버넌스 구축	-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하여 마을내 다양한 공동체협력체계구축, 실무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전담인력 배치

#### (4) 시민자산화

시민자산화는 점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재생을 해나가야 하는 마을 정책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민관협력은 민간의 지속가능하며 주체적인 활동을 바탕 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장에서의 마을 활동은 여러 영역들이 융복합 되어 일어나는데, 마을 및 유관 사업들은 행정과의 거버넌스 과정에서, 행정의 칸막이를 따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관 정책들의 예산을 바꾸니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꾸리거나, 행정 체계와 달리 작동할 수 있는 공공 공간, 공공 기금 등 시민자산(communs)이 필요합니다.

정책공약명	구체적인 내용
공유공동체주택 지원기금	- 그룹 홈처럼 삶의 기반을 만드는 공유공동체주택 지원기금 조성
마을지원기금	- 마을지원기금 설치 제도화로 시기제한없이 사업지원 및 추진가능하도록..
공공 공간	- 마을 중앙에 공동 놀이터를 만들어보자(유럽이나 중국에 가서 느낀것인데 마을 중앙에 여러사람들이 모여 함께 노는 공간이 있어 마을 공동체 형성에 기여) - 마을 공동텃밭을 만들자(마을의 자투리땅, 아파트의 옥상이나 지하실을 활용하여 공동체 텃밭을 만들어 이웃간 공동체 문화 형성및 농산물 자급, 기후변화대응 기여)
동네 소통 공간	- 동네 어귀 주민들과 이야기 나누고 쉬어갈수 있는 우리동네 대청마루 만들기

#### (5) 주민자치

주민자치는 마을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마을 정책의 발전에 따라 생겨난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 권한, 책임은 지속적으로 읍면동 단위로 내려와야만 합니다. 마을 정책은 계속해서 행정에 대한 민간의 주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실제 많은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공공정책에 주체로서 참여하여, 시민

으로서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및 유관 사업들이 행정과의 거버넌스 상황에서 제도화되며, 행정 칸막이가 민간 칸막이에 영향을 줘 현장의 갈등을 야기한다는 우려도 생겨났습니다. 이제 단순 사업을 넘어서, 실제 권한, 책임을 지우는 제도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지방정부에서 읍면동 단위 마을 공동체로 내려와야 합니다.

정책공약명	구체적인 내용
찾동과 협치	- 홍보가 필요하다/관위주의 운영방식을 바꾸자/주민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관과 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민민, 민관, 관관의 소통 문제가 심각하다 - 마을계획단 단원들이 자치위원으로 되는 것이 목표다/행정부서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주민역량 강화 필요하다/민민협치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우리동네주무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찾동의 혁신이 필요하다
마을반장제	- 통장제를 마을반장제로 ~~
마을기본계획 개선	- 주민자치에 기반한 마을기본계획
통장투표제	- 통장부터 주민투표로
주민자치세 개선	- 주민세를 자치세로의 전환 - 주민자치세를 일본의 공민관처럼 준조세로 또는 주민자치회가 직접 후원금 모집과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하도록 - 인구5천~1만명 당 커뮤니티 공간 필수 설치 지원 등

### 3. 주요 영역 외 정책 사각 지대 공약 아이디어 소개

마을 정책의 발전에 따라, 어떤 영역에서의 사회 문제들은 잘 개선되어갔지만,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인 접근 필요, 효율적인 문제 해결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책 사각 지대에 존재했던 영역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 ‘농촌 정책’입니다.

#### (1) 청년

‘청년은 이미 마을에 있습니다. 청년은 마을의 현재를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의 주체로서 마을 곳곳에서 여러 주체들과 활동하는 동등한 협력자이고, 청년은 마을의 모든 의제에 있어 동등한 책임과 권리를 가집니다. 청년의 필요와 요구는 청년세대의 문제를 넘어 마을과 전 세대를 포괄하는 모두의 의제로 마을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청년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이고, 청년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마을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청년들의 자립 기반은 마을의 지속가능성과 맞닿아있습니다.’

정책공약명	구체적인 내용
일상이 예술이 되는 삶	- 예술가, 지역청년 누구 나를 위한 공유공간이 필요하다. 예전과 다르게 고향과 지역기반이 아닌 취향과 관심사 기반으로 모이는 요즘 청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공동체 설립이 필요하며 이러한 공동체를 연결할 허브인 지원기관 또한 필수라

	<p>하겠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의점처럼 가까운 곳곳에 문화예술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운영활동가에게는 타당한 인건비와 기획비가 반드시 주어져야하고 청년들의 공간이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되기를 바란다</li> </ul>
혼자이지 않은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정한 친구, 결혼자금에 필요하다. 1인 청년가구를 지원하는 공간 및 허브지원센터(배움, 운동, 공부, 커뮤니티, 공유주방 등)가 필수적이다.</li> <li>- 이를 통해 청년이 할 수 있는 일 찾기, 생활단위 소통, 청년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위해서는 청년전임 청년활동가가 필수적일 것이다.</li> <li>- 또한 ‘지역구가 청년에게 쏜다’ 는 이름으로 무료교육, 건강검진, 청년이 청년에게(편지보내기)등의 이벤트를 하는 것을 제안</li> </ul>

## (2) 농촌 정책

### ① 농촌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농어촌지역은 적은 인구가 거주하고 그에 따라 실명적 관계성이 유지되며, 비교적 단일한 주민 구성과 높은 정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마을 구성은 이미 형성된 마을수준을 뛰어넘어 관계망을 활성화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소생산자인 농민 당사자의 주도성을 보장하며, 특히 소농의 생산 활동을 마을 단위로 공동 조직하는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촌지역에서는 인근 도시와의 긴밀한 교류가 중요하고, 로컬푸드 개념에 따른 활동은 특히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전통적 공유자산을 적극 활용하고, 마을 활동의 이익이 모두에게 귀속되도록 배려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명	구체적인 내용
인구증가 정책이 아닌 순수 자립마을 만들기	
수익 창출 하는 협동 종합공동체	
이장 제도 개선	- 각 마을이장 개선
1차 농산물 가격 개선 및 시민의식 함양	- 마을이 살려면 주민들이 먼저 잘 살아야 합니다! 1차 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제대로 받는 공약이 실천됐으면 합니다. 쌀, 고추, 과일 등 1차 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잘 쳐주고, 우리 농산물을 사랑하는 시민의식이 성장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와 로컬푸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컬푸드 사용은 지방세를 확대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이러한 인식이 확장될 필요가 있음</li> <li>- 먹거리 건강을 위한 구별 예산 편성</li> <li>- 상품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조합원 뿐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도 홍보 필요, 지역민들 간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신뢰 거래 확대</li> <li>- 생산자, 소비자들의 바른 먹거리 교육 필요</li> </ul>



## 4대 목표 · 12대 정책과제

### I. 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도농공생·공공조달 실현

1. 순환과 공생의 지역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2. 도농공생의 공공급식 조달체계 구축

### II.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주체육성·소득보장

3. 지역농업주체로서 가족농·청년농과 여성농민 육성
4. 가족농 소득보장·가격안정과 다양한 일자리창출·농외소득 다각화 추진
5. 환경보전형 농업시스템 구축으로 지속가능 농업 실현

### III. 주민의 인간다운 삶과 국민의 삶터·쉼터를 위한 농촌재생·지역혁신

6. 농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복지 보장
7.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농촌교육 재생
8. 농촌공동체 복원과 주체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9. 도농공생을 위한 도농교류 활성화
10. 국민의 삶터·쉼터를 위한 농촌환경정책과 지역발전정책 혁신

### IV. 민관협치와 농민참여를 위한 분권·자치농정 추진

11. 분권·자치를 위한 재정개혁과 지방농정역량 강화
12. 민관협치 지역농정 혁신과 자치농정역량 강화

## 【4대 목표·12대 과제】

- I. 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도농공생·공공조달 실현
- II.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주체육성·소득보장
- III. 주민의 인간다운 삶과 국민의 삶터·쉼터를 위한 농촌재생·지역혁신
- IV. 민관협치와 농민참여를 위한 분권·자치농정 추진

### 지역농정과제 1

## 순환과 공생의 지역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 □ 정책목표

- 순환과 도농 공생을 위한 지역단위 먹거리 체계 구축
- 지역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 환경, 복지, 안전, 식생활교육 등 통합 계획 수립
- 식생활교육 기회제공 및 접근성 확대로 먹거리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

#### □ 정책과제

- ① 지역먹거리 종합계획으로 ‘지역푸드플랜’ 수립 (기초·광역 지자체)
  - 지역의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과정을 ‘지역 내의 순환체계’로 전환하는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 기초지자체를 기본으로 ‘지역과 지역을 잇는 광역단위 푸드플랜’과 실효적인 지원·추진체계 마련
- ② 지역 먹거리 거버넌스로서 ‘지역먹거리위원회’ 설치 운영
  - 지역의 먹거리 문제를 시민참여 민관협력으로 의사결정
  - 지역 시민사회의 합의를 위한 정책제안, 심의, 모니터링, 평가
- ③ ‘먹거리정책 담당관’ 제도 신설 운영 (시·군, 도)
  - 단체장 직속으로 먹거리정책 담당관을 두고, 지역먹거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분산된 담당 부서와 실행 주체간 소통과 협력으로 실행될 수 있게 총괄 조정
- ④ 지역 농업발전계획-산지유통계획-식생활교육계획 연계체계 구축
  - 푸드플랜은 생산-유통-소비-교육 등 기존 계획이 종합적으로 연계된 상위전략
  - 푸드플랜은 해당 지역의 특정 시기에 중점이 되는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수립하고, 기존 계획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
- ⑤ 지자체별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조례 및 기본계획 수립, 푸드플랜과 연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식생활교육 활성화
  - 광역 및 기초 지자체별 센터 설치운영 의무화(식생활교육지원법 25조2 : 지정 근거)
  - 식생활교육 조례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센터의 제도 정비 및 식교육 산정 운영 지원)
  - 푸드플랜(거버넌스, 공공조달체계, 식생활교육)과 연계한 식교육 활성화 및 먹거리 복지 실현

## 지역농정과제 2

# 도농공생의 공공급식 조달체계 구축

### □ 정책목표

- 공공급식의 확대를 통해서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한다.
- 지역내, 지역간 상생과 지역경제 순환을 위한 공공조달체계 구축한다.
- 소규모 중소농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로컬푸드를 공공급식에 연결한다.
-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을 공공조달체계를 통해서 보완한다.

### □ 정책과제

#### ① 지역 먹거리 시스템으로서 '먹거리통합센터' 설치 운영

- 지역푸드플랜 실현을 위한 공공형 유통 플랫폼 '먹거리통합센터' 설립/운영
-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공공급식에 지역푸드플랜에 따른 먹거리 공급 지원
- 공공급식의 확대와 도농공생의 공공조달체계를 구축
- 공공조달체계는 민관협력으로 추진하고, 실행주체는 공익적 성격의 중간지원조직으로 함
- 해당 센터의 의사결정은 '지역먹거리위원회', 그 소위원회, 또는 해당 센터의 운영위원회가 함.(지역푸드플랜을 반영하는 의사결정 기구 필요)

#### ② 로컬푸드와 공공급식의 연계 활성화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이미 공적 재원으로 급식비가 지원되는 영역부터 식재료 구매 방법을 공적 조달 방식으로 전환, 로컬푸드 농산물 및 식재료의 소비기반 확대

#### ③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공공조달체계를 구축

- 지역의 물적/인적 실정과 지역사회의 합의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공공조달체계 가능(생협-어린이집, 꾸러미-지역아동센터, 사회적기업-복지시설 등)

#### ④ 도농공생 공공조달체계를 바탕으로 먹거리복지 실현

- 시민식당(public restaurant), 공동체부엌(community kitchen) 사업 추진
- 영양취약계층 대상 식사제공사업 추진

#### ⑤ 안전한 국산 식재료 중심으로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기준을 마련하여 우리 농업과 밥상을 지킴

- 친환경 식재료 구매비율 제고 및 무제초제 이상의 지역 인증 식재료 공급 유도
- 각종 유해 첨가물 관리와 non-GMO 식품 공급-소비 확대
- 전통식품, 전통장류, 제철식재료 공급-소비 확대

##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체계 구축

### □ 정책목표

-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 식생활교육 기회제공 및 접근성 확대로 먹거리 취약계층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 정책과제

#### ①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을 위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별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 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 2개 광역자치단체(서울/ 경기), 1개 기초자치단체(과천)에 설치 운영 중('18.3월 기준)
- 광역자치단체별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내 '식생활교육체험관' 설치 및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 기여
  - 텃밭재배 등 다양한 농업 체험과 쿠킹클래스, 식생활교육 콘텐츠 전시, 홍보, 미각·밥상·예절·식문화 등 지역주민대상 '식' 중심 교육 및 체험 가능
  - 현재 서울(도봉구), 인천(남구), 수원(팔달구), 과천 등에서 민간단체 위탁 운영 중
  - '시민식당'과 '공동체 부엌' 등과 연계 가능

#### ② 지방자치단체별 식생활교육 조례 제정과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

-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제도 정비 및 안정적 운영 지원
  - 조례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통한 지자체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원 근거 마련
- 식생활교육지원센터와 (가칭)먹거리통합센터와 연계 강화, 운영가능방안 모색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식생활교육위원회'와 조례, 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강화
  - 조례제정 현황('18. 2월 기준) : 광역 17개(100%), 기초 53개(21.7%)

#### ③ 식생활교육 및 먹거리정책 담당관 신설(광역·시·도 및 시·군·구 별)

- 원활한 식생활교육 추진을 위한 담당 부서와 사업 실행주체 간 소통과 협력 총괄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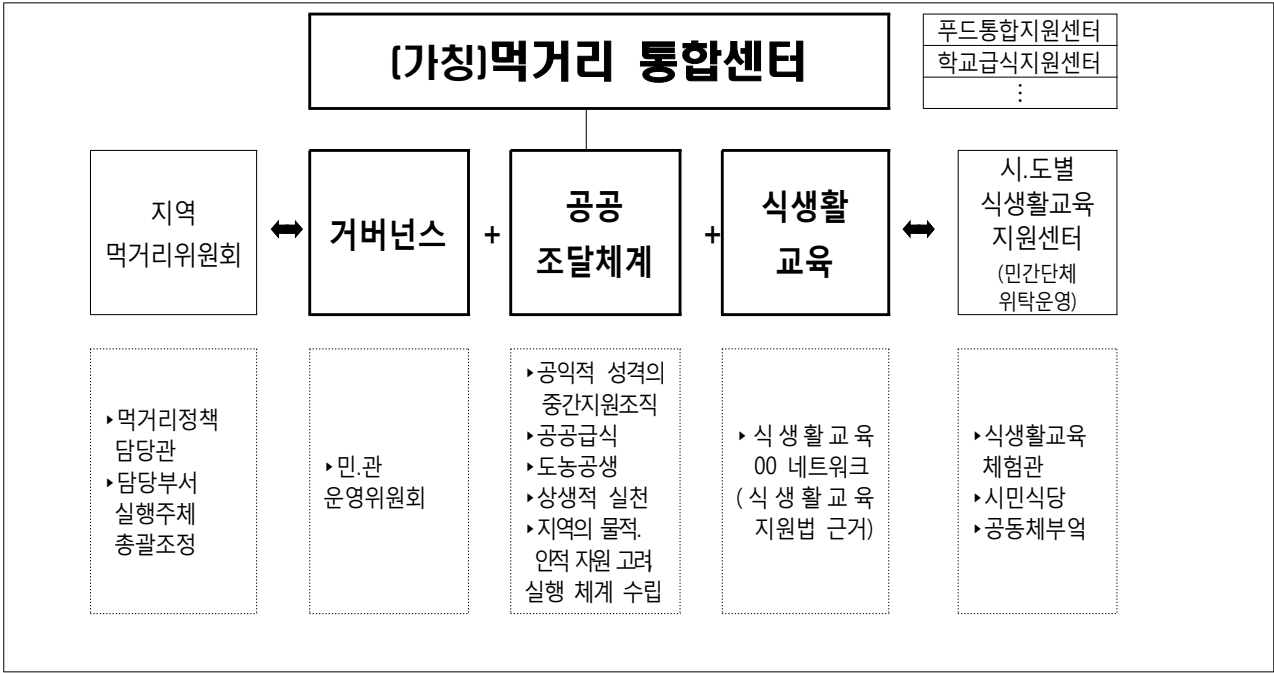
#### ④ 푸드플랜과 연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식생활교육 활성화

- 푸드플랜은 거버넌스와 식생활교육, 공공조달체계 등이 핵심 요소
-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현물 지원과 식생활교육 확대를 통한 먹거리 복지 실현
  - 제철 식재료 활용 식생활교육, 돌봄교실 대상 과일간식, 바우처 제도 등 지원

### ※ 참고 (가칭)먹거리 통합센터의 기능

공공조달 + 거버넌스 + 식생활교육 = 먹거리통합센터  
 (민·관운영위원회)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4대 목표·12대 과제】

- I. 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도농공생·공공조달 실현
- II.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주체육성·소득보장
- III. 주민의 인간다운 삶과 국민의 삶터·쉼터를 위한 농촌재생·지역혁신
- IV. 민관협치와 농민참여를 위한 분권·자치농정 추진

### 지역농정과제 3

## 지역농업주체로서 가족농·청년농과 여성농민 육성

#### □ 정책목표

- 가족농 중심의 지역농업 조직화와 협동화를 추진한다.
- 청년농업인을 확보하여 미래의 농업주체를 육성한다.
- 여성농민 육성과 성평등 농정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한다.

#### □ 정책과제

##### ① 가족농 중심의 지역농업 조직화와 지역영농조직을 농업주체로 집중 육성

- 가족농 중심의 지역영농조직 육성·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지역영농조직으로의 농지집적 유도 및 생산기반 지원
- 다기능농업 기여 가산형 직불제 실시 : 지역영농조직이 수행하는 지역농업자원의 포괄적·집단적·계획적 관리활동에 대한 가산형 직접지불제 시행

##### ② 가족농의 생산·판매 기반 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 농지소유 및 경영실태 전수조사, 불법·비농민 소유농지의 국공유지화, 경작농민 장기저리 임대와 우선 불하 등 경자유전대책 추진
- 임차농 권리 강화 및 임차농지 효율이용 촉진 : 「농지은행」을 실효성있는 기구화, 국공유지 매입 확대, 청년농·귀농인·지역영농조직 장기저리 임대·우선 불하
- 「농촌일손뱅크」 설치·운영
- 가족농의 생산·가공·판로 지원
  - 시군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를 설치, 가족농의 생산·가공·유통역량 강화
  - 가족농, 지역영농조직과 연계한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 지역영농조직과 도시의 공동체 활동조직을 연계한 중소가족농 판로지원 강화

##### ③ 젊은 농업주체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 농업·농촌 지향의 응원군 육성을 위한 「농촌인턴제도」 도입
- 젊고 유능한 미래 농업주체의 확보·육성을 위한 「청년취농직불제」 시행
- 농지은행의 보유농지와 청년취농제도의 연계 추진

##### ④ 신규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 (기초)지역단위로 신규농업인 육성계획제도 도입 및 시행

- 도(道) 단위의 체계적인 신규취농자 전담교육기관으로서 「농업대학」 설립
- 신규 취농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 ⑤ **농업주체로서 여성농민의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 관점에서 지역농정을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민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확보와 추진체계·예산 확보**
    - 중앙-도-시·군에 이르는 여성농민 정책추진 체계 구축
    -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마련 및 예산을 편성하여 정책 시행
  - **성평등 관점에서 지역농정 추진**
    - 지역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위원회, 협의체에 여성농민 참여를 보장
    - 농촌형 여성친화마을 모델 개발 및 지원으로 성평등한 농촌사회 추진
    - 여성농민의 교육 기회 제공과 접근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교육체계 구축
    - 밭농업의 위주의 여성농민의 농업노동 현대화
    - 이주여성농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
    - 여성농민의 소규모 농가공 지원, 확대하고 자가 농산물 및 지역 농산물 가공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실시
    - 농촌지역 공공장소 성폭력,가정폭력 신고전화(콜센터) 스티커 부착
    - 여성농민 평생학습 교육단체 육성 및 교육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농가도우미,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사업의 전국 확대실시**
    - 행복바우처,농가도우미 지원단가 현실화 및 전국적 시행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사업이 가사노동의 사회화 의미에 맞게 마을 및 작목반, 공동체 단위로 확대
  - **여성농업인센터를 1시군 1개소 이상으로 확대하여 고유사업 및 역할강화**
    - 농촌지역에서의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로서의 역할 강화
    - 보육,공부방 뿐 아니라 여성농업인의 상담 및 교육의 역할 강화
  - **농부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지자체 거점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시스템 마련**
    - 면단위 보건지소를 종합 건강복지센터화 하고 마을 주치의 제도 등을 운영
  - **종자에 대한 권리를 농민에게, 토종농사 및 소규모 토종텃밭 지원**

# 가족농 소득보장·가격안정과 다양한 일자리창출·농외소득 다각화 추진

### □ 정책목표

- 농가소득 양극화를 완화,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 가족농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확대·강화한다.
- 농촌 사회서비스 연계 및 청년층 유입 일자리, 혁신적 일자리를 창출한다.

### □ 정책과제

- ① 전국적으로 농가단위 직접지불제도 도입·시행을 추진하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공익형 직접지불제도 도입 및 시행**
  - 가족농 소득보전을 위해 선진국 같이 농가단위 직접지불제도 도입 추진
  -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농촌생태보전 및 농업환경개선, 지역식량안보 제고, 지역 생물다양성 확보 등 다양한 목표에 적합한 공익형 직접지불 프로그램 도입
- ②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 및 시행**
  - 중앙정부의 농산물 가격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지역내 주요 품목 등을 대상으로 생산비 기준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
  - 광역 지자체 및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공통적으로 최저가격보장제도를 시행할 경우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은 기초 지자체 단위로 시행하되, 필요한 재원의 일정비율을 도비로 매칭
- ③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쌀 생산조정제와 공공급식의 연계 활성화**
  - 2018년부터 도입되는 쌀 생산조정제에서 지역산(국내산) 밀, 콩의 소비확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가공식품 식재료 구매와 연계시키는 공적 조달방식을 도입
- ④ 농촌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연계한 일자리 확대**
  - 농촌지역 복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농촌적합 일자리 창출
    - 농촌지역의 높은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 사회서비스의 주요 인력인 귀농귀촌 인력과 돌봄서비스 인력의 연계
  -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농촌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공공 농촌개발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 ⑤ 공동체에 기반한 농촌형 창업 활성화**
  - 주민밀착형 농촌공동체기업과 농촌형 창업 통합지원조직 육성
  - 소자본으로도 가능한 청·장년층 예비창업자의 창업활동을 지원 : 농업명장 후계자 육성, 농업전문 창업보육센터 지원
  - 농촌창업 분위기 조성 위한 농촌창업아카데미 및 경진대회 개최
  - 마을단위 농촌관광사업 브랜드화와 네트워크화형 농촌관광 육성
- ⑥ 귀농인과 연계한 도농상생 일자리 창출**



- 귀농인을 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
- 귀농인의 재능 활용 귀농인과 농촌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 추진
- 여성귀농인과 새일센터를 연계한 새일센터 농촌형일자리 사업 추진

**⑤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청년층 유입 일자리 지원**

**⑥ 농가경제 다각화 지원 프로젝트 추진**

- 농가의 다양한 발전경로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는 유럽의 LEADER 방식 도입
- 사업추진 방법으로는, 관련 활동협의체를 구성, 민관 파트너십으로 사업 추진
  - 농가경제 다각화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추진

# 환경보전형 농업시스템 구축으로 지속가능 농업 실현

### □ 정책목표

- 친환경농업의 가치 확산을 통한 농정패러다임의 전환과 생산지원 정책에서 유통·소비확대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 친환경농업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책시너지를 제고한다.

### □ 정책과제

#### ① 지역단위 농업환경보전 직접지불제 도입

##### ○ 환경생태보전 직불금(친환경농업 직불금 추가 지원)

-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급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직불금에 더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게 환경생태보전 직불금을 추가 지원 : 친환경농가의 환경생태보전기능에 대해 1ha당 유기 40만원, 무농약 20만원 추가 지원

#### ② 친환경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공공조달체계 구축

- 생산 조정 및 안정적 수급을 위한 작부체계 수립 지원
- 친환경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와 소비 확대를 위한 6차산업화 추진
- 보육에서 고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전면화 및 공공복지시설 친환경급식 차액지원 확대로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공공조달체계 구축

#### ③ 축산과 경종농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체계 구축

-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축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축산 기반 강화
- 축산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악취저감 및 자원화 지원
- 가축질병의 원천적 방지를 위한 건강한 축산기반 구축

#### ⑤ 역량 있는 친환경농업인 육성 및 조직화

- 귀농·귀촌인 및 청년 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농업인 육성
- 친환경농업 주체의 조직화 및 정책거버넌스 구축
  - ※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위한 지역단위 조례 제정 및 거버넌스 조직 설치

## 【4대 목표 · 12대 과제】

- I. 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도농공생·공공조달 실현
- II.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주체육성·소득보장
- III. 주민의 인간다운 삶과 국민의 삶터·쉼터를 위한 농촌재생·지역혁신
- IV. 민관협치와 농민참여를 위한 분권·자치농정 추진

### 지역농정과제 6

## 농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복지 보장

#### □ 정책목표

- 농어촌주민 최저 사회복지기준을 설정하고 삶의질을 향상시킨다.
-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 □ 정책과제

- ① 농어촌주민 최저 사회복지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매 5년마다 실태조사하며,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킴
  - 국가는 농어촌주민 최저 사회복지기준을 연구하고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제시함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최저 사회복지기준을 지표로 포함하여 보건복지 수준에 대한 실태를 매 5년마다 조사하여 보건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킴.
- 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서 각종 차별을 철폐하여 농어촌 주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 농어촌주민에게 차별적인 소득인정액 방식을 개선하여 농어촌 주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 농업소득에 기본이 되는 농지의 재산소득환산액을 개선하여 농촌 주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 ③ 농어민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농어민 국민연금의 지원기준의 한도액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정
  - 농어촌 노인요양시설 이용시 본인부담금 5% 경감 실시
- ④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생활권으로 개편하여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
  -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생활권 단위로 개편,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
  -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 가족 등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충, 삶의 질 향상
- ⑤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생활권단위로 설치·운영, 노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 보장
  - 생활권단위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함
  - 조금 젊고 건강한 노인이 더 나이 들고 아픈 노인을 마을단위에서 일상적으로 돌보는 농촌형 사회서비스를 개발·보급함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농촌교육 재생

### □ 정책목표

- 지역(도농)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 역량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 □ 정책과제

#### ① 농산어촌 학교 재생을 위한 미래형 생태학교 모델

- 1면 1초·중학교를 소규모 적정학교(절대학교)로 육성
- “작지만 교육력 있는 학교” 만들기 : 농촌생태학교 사업 추진
- 지역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연계 ‘지역사회학교’ 추진 : 농산어촌형의 특색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특기적성,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교육 등)
- 군 단위 적정규모학교 육성(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 교육환경 개선)
  - 지역의 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유-초, 초-중, 중-고교 등의 다양한 유형의 학교 통합·재배치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전반적 교육여건 개선
- 농산어촌 초·중학교의 여유 교실을 ‘평생학습센터’로 활용 지원
  - 여유 교실을 영유아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평생학습센터 등 지역사회 교육문화센터로 활용

#### ②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성장을 위한 공적 평생교육 기반 확충

- 1군 1평생학습관 확충·지원
-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농촌형 평생학습센터’ 설치 : 마을학습센터+마을기업 거점화, 읍·면·동의 평생학습센터 확충
- 농산어촌 주민의 교양교육과 직업교육 역량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지원

#### ③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

-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마을학교 사업) 추진
- 농촌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농산어촌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법 제정
- 농산어촌 마을교육공동체 특화 모델 개발 완성

#### ④ 농촌 작은학교 살리기와 연계한 농촌유학센터 지원

- 도시 어린이의 농촌유학으로 농촌 작은학교 살리기 모델 발굴 및 확산
- 농촌유학으로 ‘내 아이 시골 고향 만들기’ 사업 진행
- 농산어촌유학 교육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

## 지역농정과제 8

# 농촌공동체 복원과 주체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 □ 정책목표

-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경제 주체를 육성한다.
- 농촌지역 사회적경제를 통한 포용적 성장전략을 실현한다.

### □ 정책과제

#### ①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 :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 추진

- 지원시스템의 통합과 효율화 :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농촌지역 지자체의 지원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조직 신설
- 공공구매,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 : 보조지원정책에서 시장창출정책으로 !
- 사회적 경제조직의 금융, 신용적 접근 개선

#### ②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주체 육성

-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 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 중간지원조직의 발굴 및 육성
- 사회적 경제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 ③ 농촌지역개발사업과 사회적경제의 연계 강화

-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계획과의 연계강화
- 농촌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적극적 육성
- 농촌지역 어메니티자원 활용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농촌지역개발 조력자의 확보

#### ④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관련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 (가칭)「도농함께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활성화 지원

#### ⑤ 농촌지역 복지, 사회적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경제 육성

- 지역공동체의 의한 지역복지, 의료 시스템 구축 지원
  - 노(老)-노(老) 케어(care) 사업 추진
-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한 농촌 교통서비스 제공
-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농촌교육 서비스 제공
-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생활서비스 제공

## 지역농정과제 9

# 도농공생을 위한 도농교류 활성화

### □ 정책목표

- 「도시-농촌 상생공동체」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구조를 실현한다.
- 도농연계 코디네이터 육성 등 도농교류 지원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 □ 정책과제

- ① (가칭)「도농교류활성화지원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종합적 도농교류사업 지원
- ② 도시-농촌 상생공동체 육성 및 지원
  - 도시-농촌 마을공동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쌍방향 상생구조 실현
  - 도시민과 농촌주민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참여하는 협동조합(가칭, 도농함께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 ③ 지역 내 도시형 마을과 농촌형 마을의 상생을 위한 도농교류 활성화
  - 지역 내 도시형 마을을 조직하여 농촌 마을과의 정기적인 교류 활성화
  - 도시 어린이의 농업·농촌체험교육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 도농교류 활성화와 연계한 공공 일자리 확대
- ④ 통합적 중간지원조직(예 : 공동체활동지원센터) 운영으로 도농교류 지원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지원
  -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6차산업, 도농교류를 통합하는 시군 중간지원조직 운영
- ⑤ 도농연계 코디네이터 육성을 통한 도농교류 사업 체계화 및 활성화
  - 1읍면-1코디네이터 활동 시스템 구축
    - 귀농·귀촌 희망도시민(기존 귀촌자), 마을사무장 경험자, 청년 등 대상
    - 마을사무장 활동(읍면단위 활동), 통합중간지원조직과 연계하여 운영
    - 도시청년 농촌기획자 조직 및 운영을 통한 도농교류 홍보 강화
- ⑥ 도농교류 자원관리 지원제도를 통한 도시민 만족도 제고
  - 도농교류 자원(자연경관, 환경생태, 역사문화자원) 지킴이 운영
  -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도농교류 대회 추진

# 국민의 삶터·쉼터를 위한 농촌환경정책과 농촌지역발전정책 혁신

### □ 정책목표

- 포괄적 농촌자원관리정책을 도입하고, 지역농업의 공공재 공급 역할을 확대한다.
- 농촌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새로운 사회적경제 주체를 형성한다.
- 농촌경제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공공일자리영역을 개척한다.
- 행정의 업무조정과 조직개편을 통해 농촌정책체계를 마련하고, 민관협치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혁신의 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 □ 정책과제

#### ① 지역주도의 포괄적 농촌자원관리 정책 도입

- 지역자원관리를 위한 총괄기획조정 부서 신설
- 도농교류와 6차 산업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부와 국토부의 정책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

#### ② 지역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 및 공공재 공급 역할 확대

- 환경보전 농업을 시행하는 농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업의 공공재 공급 기능을 제고
- ‘도랑살리기’ 및 ‘미꾸라지와 참게 잡기’ 사업 도입
- 환경서비스 공급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
- 저투입 농업 실천 농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장려금 지급

#### ③ 농촌자원관리를 위한 인력육성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와 일자리 창출

- 농촌에서의 농림업과 환경 및 경관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농촌자원관리자)를 양성
- 농촌자원관리자를 지자체 농촌관련 사업의 현장 관리자로 활용
- 농촌자원관리자의 지역 창업 및 취업활동을 지원

#### ④ 주민의 지속가능한 삶터·쉼터로 조성하기 위해 주거문제 해결 및 경관개선

- 농촌 주거복지 및 귀농·귀촌인 주거수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보급
  - 사회주택 :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주택의 일종. 지자체와 주거관련 사회적경제조직이 공동으로 조성하기도 함. (2015년, 서울 금천구 보린주택(홀몸어르신 맞춤형주택)가 전국 최초 조성)
- 농촌 마을 내 빈집과 빈터를 매입하고 유휴 공유지를 개발하여 실제 거주할 귀농·귀촌인에게 원가에 공급
- 시군 단위로 농촌 사회주택 건설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사회적경제 주체를 형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삶터 조성

#### ⑤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활동 지원을 위한 생태계 조성

- 사회적경제와 농촌 및 도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도시재생 등의 영역을 통합하거나 연계·협력 강화

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업무 조정과 조직 개편

- 민간의 다양한 당사자 협의체 조직화와 네트워크 구축 및 법인 설립 적극 지원
- 시군의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고 공공이 출연하는 기금 조성
- ⑥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주체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군 단위의 지역 특성에 맞는 소액 프로그램 사업 발굴과 지원**
  - 시군 특성에 맞는 고유한 소액 프로그램 사업 발굴 및 지원
  - 다양한 행정 사업 간 융복합을 통해 역량단계별로 성장하는 시스템 구축
- ⑦ **농촌 공동체 활성화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한 조례 및 정책위원회 신설**
  -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삶의질 향상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정책 영역을 명확하게 하고 민관협치의 정책 결정을 위한 정책위원회 신설
  - 민관협치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
- ⑧ **읍면 단위 주민생활권에서의 농촌정책 강화**
  - 읍면 소재지의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배후 마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의 핵심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재편 모색



## 【4대 목표·12대 과제】

- I. 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도농공생·공공조달 실현
- II.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주체육성·소득보장
- III. 주민의 인간다운 삶과 국민의 삶터·쉼터를 위한 농촌재생·지역혁신
- IV. 민관협치와 농민참여를 위한 분권·자치농정 추진

### 지역농정과제 11

## 분권·자치를 위한 재정개혁과 지방농정역량 강화

#### □ 정책목표

- 농정분야 지방자치·지방분권을 추진하여 지방농정 원년으로 삼는다.
- 세입 측면에서 국세 비중을 축소하고 지방세 비중을 확대한다.
- 세출 측면에서 중앙사무를 과감히 지방사무화하고 전체 예산구조개혁을 추진한다.

#### □ 정책과제

##### ① 세입측면에서 국세와 지방세 조정을 통한 재정균형 달성

- 국세-지방세 조정 : 현행 국세 70%, 지방세 30%→ 향후 6:4로 조정
- 이전재원 조정 및 재정균형 : 지자체 간 농업재정 격차 완화 등

##### ② 세출 측면에서 국가처리사무의 지방처리사무로의 이양

- 획기적으로 지방이양 업무 추진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건의
- 국가사무의 지방사무(시도 및 시군구 사무)로 전면 이양 추진

##### ③ 세입측면에서 고향세 도입, 농어촌특별세의 지방세분 이양 등

- 고향세 도입 혹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 고향사랑 기부제법(가칭) 제정을 통한 지방재정 중 지방농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 중 지방세분 지방세 본세로 통합, 이양
- 세금감면 혜택 및 비과세 대상 최소기준 설정과 축소

##### ④ 세출측면에서 포괄보조사업의 지역화와 기존 사업·예산의 근본적인 재편 추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포괄보조금 사업의 지역화
- 중앙 및 지방정부별로 기존 사업의 통폐합, 일몰, 축소, 확대 등 사업·예산 재편

##### ⑤ 지방농정역량 강화(1) 농식품부와 지방정부 간 공동의 농정협약체 운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중 농정분야 선도
- 지방농정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시범사업 제안
- 협의대상 우선순위로써 포괄보조금 복원, 관련 제도 개선 요구

##### ⑥ 지방농정역량 강화(2) 지역개발공동사업제도 도입과 농업재정 코디네이터 양성

- 광역 혹은 기초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공동사업 시범사업 도입, 실행
-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예산과 사업 조율하는 재정 코디네이터 양성

##### ⑦ 지방농정역량 강화(3) 농정분야 재정성과목표관리제의 안정적인 정착 추진

- 지방자치단체 내역사업별 매뉴얼 및 지침 등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 농업·농촌분야 사업예산제도의 성과관리 예산제도로의 정착

# 민관협치 지역농정 혁신과 자치농정역량 강화

### □ 정책목표

- 단체장이 직접 책임지는 주민행복농정을 추진한다.
- 지방농정의 통합성을 제고하여 농민실익에 기여하는 자치농정체계를 구축한다.
- 농축협이 지역농업의 주체로 제 역할을 하도록 육성·지원한다.
- 민·관 협치농정에 의한 농민 참여농정 실현으로 농민을 농정 주체로 세운다.

### □ 정책과제

#### ① 단체장직속 주민행복농정위원회(자치농정위원회) 설치·운영

- 단체장 직속기관으로서 농민, 소비자, 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지방농정관련 민관협치기구이자 심의의결기구
- 지방농정 기획·조정, 3~5년 단위 중장기 계획 수립·이행평가, 각 부서 관련정책들의 연계·조정·통합 상시 점검 등

#### ② 농업·지역·먹거리·환경 총괄기획부서 설치·운영

- 지자체 전체에 대한 지역발전관점에서 농업·지역·먹거리·환경 총괄기획부서를 설치하여 자치농정의 총괄관리체계를 구축
  - 단체장 직속 주민행복농정위원회(자치농정위원회)의 사무국 역할
  - 중앙정부 국비지원사업(포괄보조사업) 총괄 기획·관리, 관련 사업부서 간 업무협력 및 종합 성과관리
- 미래지향적인 지방농정 수립·추진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증진 계획 및 추진, 중앙정부 농정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자치농정 기획, 지역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 ③ 지자체와 농축협이 지역농업의 비전과 전략계획을 공동수립하고 농축협을 지역농업주체로 육성

- 조합원 전수 실태조사 공동 추진 및 지역농업발전계획 공동 수립
- 지자체 자치농정위원회에 농축협 참여를 통한 농정 추진
- 지역농업 비전과 계획에 근거한 농축협 평가제 도입으로 바람직한 발전 유도
- 지자체 중간지원조직내 협동조합교육전문가 채용으로 교육프로그램 공동주관 및 농축협 임직원 역량 강화 지원
- 지자체와 농축협이 협력하여 농업인 월급제, 최저가격보장제도 집중 추진
- 지자체의 출연과 농축협 상호금융, 신협·마을금고 등 공동투자를 통해 지역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사회적금융 활성화 기금 조성

#### ④ 지자체 내 민관 지역리더들의 자치농정역량 강화 집중 추진

- 자치농정 추진역량 구축과 관리,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기능, 각 부서의 주민역량강화사업의 통합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 지역역량종합관리센터 운영

#### ⑤ 자치농정 재정민주주의 실현

- 자체재원사업 및 포괄보조(자율편성)사업 추진 시 <농민참여예산제> 실시

-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농민, 농민단체의 의견 수렴을 최종 사업 선정
  - 예산편성권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 농민참여형 재정모니터링 시스템 제도화, 참여예산위원회 상설화, 예산위원 역량강화 등
- ⑥ 농업계를 대표하는 농업회의소 등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농민참여농정 추진

## 지방선거(교육감) 사회적경제 공약 협약(초안)

□ 교육감은 학교에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학교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교육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 창의적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중학교) 운영 시간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가치에 대한 주제학습, 체험학습,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학부모 교육, 활동 매뉴얼 보급 등을 추진한다.

- 중학교 선택교과목이나 고등학교 교양교과목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원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교육자료를 보급한다.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홍보를 강화하여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강구한다.

- 사회적경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 이상의 활동이 형식화하지 않도록 시행계획(지침)이나 교육자료를 학년도 시작 2개월 전에 학교에 배포하고 교원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교에서 충분히 준비하여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거나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러한 교육정책과 행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사무분장을 한다.

□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실효적으로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육청과 학교협동조합·지역사회적경제 조직 간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교육청의 학교협동조합·사회적경제교육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자문을 맡도록 한다.

- 학교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기존의 관행과 제도에 의해 지나치게 규제를 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학교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및 육성을 위한 기본조례, 공유재산의 사용 관련 조례 등의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지원한다.

-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연대하여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학교협동조합과 학교가 공동으로 지역의 햇빛발전협동조합과 연대하여 학교 옥상 등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학교협동조합의 비즈니스 영역의 확대 및 조합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과 특성화고교·특수학교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정책적으로 강구한다.

- 방과후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돌봄교실 포함)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와 협의하여 법제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 학교협동조합 현황과 과제

### □ 학교협동조합 정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인 ‘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15.10.08.제정)

### □ 협동조합의 가치와 교육기본법상의 교육이념(교육목적)

·협동조합의 가치 :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형평성,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조합원은 협동조합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과 투명성(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덕목)로 함.

·협동조합의 7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 교육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교육의 목적과 협동조합의 가치가 서로 친화적임을 알 수 있음(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육성).
- \* 학교협동조합은 혁신교육지구, 마을결합형 학교 등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 및 민주적인 학교운동을 실현하는데 현실적으로 유용할 수 있음.
- \* 최근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거버넌스(민관협치) 체제와 관련하여, 학교교육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학교협동조합을 들 수 있음.(UNESCO에서도 ‘모두를 위한 교육’을 2000~2015년 학교교육의 주요목표로 내세우면서 학교의 거버넌스의 구축을 추진하였음)

### □ 학교협동조합의 설립·운영 현황

- 학교협동조합은 2013년 첫 설립 이래, 현재 12개 시·도에서 70개교에 설립되었음. 수도권에서 활발한 편이지만,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음. 초기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한 곳도 휴면조합이 없을 정도이고 점차 안정되고 있음.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 수도권·중부 지역이 전체의 75% 이상임.

\*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등 영남지역에는 10% 정도임.

- 서울시교육청에서 처음 제정한 학교협동조합 지원조례는 현재 4개 시·도(서울·인천·광주·전북)에서 제정되었고, 나머지 시·도의 학교들도 조례 제정을 기대하고 있음.

\* 초등은 방과후학교, 중·고교는 매점을 주 영역으로 운영하고 있음. 최근 특성화고교와 특수학교에서 직업(창업)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설립하고 있음.

\* (운영의 한계) 조합원의 누적이 어렵고, 재정여건이 영세함.

• 일정기간 소속 후 졸업 또는 전근되어 조합원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임원진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움.

• 주요 영역인 매점의 경우 주 고객인 학생의 용돈이라는 거래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경제규모가 미약하며, 성격상 박리의 구조이고, 구매제품의 질은 친환경 등 최상급이어야 하므로 당기순이익이 열악한 편임.

\* 이러한 한계점이 필수적으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고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여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음. 결과적으로 협동조합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

#### □ 학교협동조합 운영의 선도사례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 및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교육청 조례를 통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경기도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 학교협동조합 팀이 있음.

- 서울시 금천구는 서울시의 지원하에 학교와 사회적경제를 연계하여 학교에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특구를 운영하고 있음.

#### □ 학교협동조합의 향후 주요과제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사회적경제 및 학교협동조합 담당 부서 및 사무분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함.

- 교육부(기재부) 직할이나 교육청(교육감협의회)에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여 학교협동조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시·도 차원에서 학교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조례, 공유재산 사용의 특례(사회적협동조합) 조례, 공공구매 활성화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경제 및 학교협동조합을 혁신교육,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협업할 수 있도록 혁신교육지구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충남 사회적경제의 10대 공약 제시(안)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 정책위원회

### 1. 사회적경제 정책제안 3대영역

#### 1) 사회적경제 성장동력 시스템 마련

- ▶ 직접지원, 재원조성 및 사회적성과 기반으로 충남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지속가능한 활동과 성장을 위한 기반 시스템의 구축

#### 2) 사회적경제 공간기반 구축

- ▶ 충청남도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비롯한 청년,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조성 및 운영

#### 3)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확대

- ▶ 공공성 기반의 경제적활동인 사회적경제 지원 협력에 대한 충청남도 역할 및 거버넌스의 기능 확대

3대 영역	10대 과제
성장동력 시스템마련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2 사회적성과 기반의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3 사회적가치 중심의 사회적금융 도입
	4 민간, 정부, 기업 공동의 사회적기금 마련
공간기반 구축	1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 구축 운영
	2 마을기반 커뮤니티 거점공간 구축
	3 청년활동과 소셜벤처 지원 위한 소셜리빙랩 조성
	4 충남형 사회적경제 특구제도 도입
거버넌스 확대	1 충남 사회적경제 지원부서 확대 강화
	2 충남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 기능 강화

**1. 필요성**

-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단계에 기반한 맞춤형의 지원체계가 필요
- 특히 재정지원 종료 후 성장과 도태로 양분되는 시점에서 기업의 성장동력 필요
- 추가적인 시설, 개발, 판로개척 등 적재적소의 지원으로 경영 안정 유도

**2. 추진내용**

-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단계의 기준과 이에 기반한 지원 위한 평가체계 마련
- 정책지원종료 조직은 평가를 통해 선도기업으로 매년 5개 기업 선정하여 재정지원 근거마련
- 구체적 지원내용은 초기 조직모임지원을 비롯해 시설과 운전자금의 특례보증 및 기술개발, 홍보.마케팅 등 지원
- 기업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성장단계별 약점을 보완하는 맞춤형 성장 지원 지양
- 재정지원은 다양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을 선도기업과 연계 추진

**3. 소요예산**

- 연도별 10억원 ( 도비 10억원 )

**4.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단계를 구분하여 단계에 적합한 효과성 있는 지원이 가능함
- 성장단계별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사기진작과 발전동기 부여
- 재정지원이 종료된 기업의 도태를 막고 지속가능성장 촉진



**1. 필요성**

- 사회적성과에 대한 경영성과 중심 평가로 인해 사회적경제 기업성과의 저평가 만연
-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적가치 및 성과에 대한 측정과 평가 부재
- 사회적 성과평가에 기반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민사회 지지와 공공신뢰기반 마련

**2. 추진내용**

- 사회적경제 및 공익조직 기반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및 지표개발의 추진
- 충남연구원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반의 사회성과평가조직(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 운영
- 측정된 가치와 평가된 사회적성과 기반의 인센티브(재정, 비재정) 지원과 관련 된 도정사업의 위탁을 적극적 추진
- 사회적 성과평가 기반한 충남 사회혁신채권(SIB) 사업의 추진 및 확대
- 관련 조직들의 사회적 성과 홍보를 위한 사례집 발간 및 공유대회 개최

**3. 소요예산**

- 연도별 10억원 (도비 7억원, 기타(민간기업 및 금융기관) 3억원)

**4.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 및 공익기반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및 자긍심 고취
- 사회혁신채권(SIB)방식의 도정 사업의 적극적 민간위탁으로 관련 도 재정부담 완화와 시민사회 영역의 강화
- 사회적경제 및 시민사회 주체들의 사회적가치활동에 대한 도민인식전환

### 1. 필요성

-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적실한 자원공급의 금융시스템이 필요
- 현재 국내 사회적금융은 자금공급 및 운영시스템의 초기단계로 충남은 더욱 열악
- 현재 중앙정부 사회적금융 지원방안과 연계하여 공공자금 기반의 사회적금융 구축의 골든타임

### 2. 추진내용

- 사회적기금조성과 함께 기금 운용을 위한 사회적성과 중심의 금융제도 설계
  - 중앙정부의 관련법 제·개정과 함께 충남의 조례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중앙의 기금재원 및 충남 사회적기금에 기반한 금융재원 확보
  - 사회적경제 및 금융운용 전문가로 구성된 '충남사회적금융추진위원회(가칭)' 운영
- 관련 금융기관(신협, 새마을금고 등)들과 연대한 사회적금융중개기관 '(가칭)따숨은행' 설립
  - 중앙정부에서 추진중인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사업과 연계 추진
  - 사회적가치 및 사회적자본 기반의 여신업무 수행시스템 개발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대출상품 종합관리 및 사회성과투자사업 총괄기관 설계
- 충남 사회적금융중개기관 관리 운영
  - 중앙정부에서 추진중인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사업과 연계 추진
  - 사회적가치 및 사회성과의 평가지표 개발과 연동하여 여신업무 지침 마련
  - 크라우드펀딩, 임팩트펀드 등 사회적경제의 민간투자 유치 및 관리운영
- 충남 사회적금융 관련 투융자 및 투자실적 DB화와 공간지원 등 재정관련 정책연계 확대

### 3. 소요예산

- 연도별 5억원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 기타(민간기업 및 금융기관) 5억원)

### 4. 기대효과

- 충남사회적경제 기업운영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가치기반의 자금지원 확보
- 사회적목적 수행을 위한 재원확보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고유목적사업 주력이 가능함

### 1. 필요성

- 충남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자립과 지속성 위한 자금조달의 지원체계 미흡
- 기존 공공자금 이외 다양한 방식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통합 기반 필요

### 2. 추진내용

- 도와 민간의 자금 매칭을 통한 기금 조성
  - 사회적경제기업 자조기금, 지역기업 CSR 출연, 크라우드 펀딩 등 민간자조기금 조성
  - 민간자조기금과 도 기금 매칭을 통한 '충남 사회적기금' 구축
  - 도 기금 구축을 위한 도 관련 부서 협조 및 제도 개선 추진
- 사회적기금 운영을 위한 기금운용체계 구축
  - 일시적으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기금 전담관리 조직을 설치 운영하며 이후 충남사회적금융중개 기관에 업무위임
  - 기금운영규정 수립, 기금 투·융자 계획, 활용 모니터링, 기금모금 설계 등 추진
  - 기금 집행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도 금고 등과 연계하여 추진

### 3. 소요예산

- 연도별 20억원(기금조성 10억원, 조직운영 5억원, 민간기금조성 5억원)

### 4. 기대효과

- 사회적기금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
- 기금 모금으로 사회적경제의 가치에 대한 도민 인식저변 확대

### 1. 필요성

- 감소하는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추세에 조사·발굴 등 체계적 보육 추진
-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자원을 확보하고 맞춤형으로 창업·육성 지원

### 2. 추진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기반 인큐베이팅 공간 구축
  -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 업무공간 제공 및 코워킹 스페이스 등 융복합 공간 마련
  - 미활용 공유재산 및 전통시장 휴폐업 공간 등 적극 활용운영
  - 권역별 수요파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업무공간 및 신규 창업준비기업들의 공간제공
-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운영 전략
  - 센터중심의 도·시·군,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등 사회적경제기업 창업발굴 TF 구성·운영
  - 자활기업, 마을만들기, 소셜벤처동아리, 로컬푸드 등 사회적경제 잠재자원 적극 파악
  - 사회적가치와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가 스쿨 운영
  - 자립화를 위한 판로지원, 금융지원(임팩트투자), 경영컨설팅 등 운영

### 3. 소요예산

- 연도별 10억원 (도비-구축 및 운영비용)

### 4. 기대효과

-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공간수요 해결과 기업간 집적효과 창출
- 지역 내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기반 마련

### 1. 필요성

- 충남 지역사회(공동체) 중심의 사회적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공간이 현저히 부족
- 지역에서 사회혁신 활동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과 밀착된 지역거점 중심의 사업운영, 실험 등이 발생하는 거점공간이 필요

### 2. 추진내용

- 커뮤니티 거점공간의 설계와 구축
  - 충남도내 15개 시군 대상 활용가능한 거점공간 구축(신축보다 유휴공간 및 빈 건물 리모델링)과 기업 및 중간지원조직 입주수요의 조사
  - 지역사회(커뮤니티) 혁신을 위한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공익단체, 농어업법인, 사회적금융기관등 필요주체 대상 입주 주체 구성
  - 사회혁신 활동에 필요한 공동장비 및 시설 구축(입주기업 대상으로 수요조사)
- 커뮤니티 거점공간의 운영
  - 거점공간추진단(충남도, 입주희망주체 및 지원주체 중심)을 구성하여 민간주체 중심의 커뮤니티 리빙랩 설계, 구축, 운영의 추진
  - 단순 집적공간보다 진정한 활동공간 구성을 위해 지역주민 및 공동체와 함께 하는 공간운영과 성과도출의 운영 시스템 구축
  - 설치된 커뮤니티 거점공간들간 연합회 및 네트워크 조직화와 권역별 협력사업 개발

### 3. 소요예산

- 연도별 20억원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 기타 0억원)

### 4. 기대효과

- 지역사회 혁신주체들의 공간수요 해결을 통한 지속성장 기반마련
- 다주체간 집적과 협력활동을 통한 지역중심의 혁신활동 확산으로 지역사회 활력 증진

### 1. 필요성

- 충남에서 활동하는 청년혁신기업들의 재원, 공간 등 지원체계의 열악함
- 지역의 청년유입 요구와 사회혁신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지만 이에 따른 기반, 공간 미흡
- 청년중심의 사회혁신과 지역사회활력 효과를 창출하는 생활세계의 실험실(Living Lab)이 필요

### 2. 추진내용

- 사회혁신 리빙랩의 구축 조성
  - 충남도내 청년활동 거점지역 중심의 소셜벤처 및 청년혁신활동 지원 리빙랩 선정·구축
  - 정부의 '창업종합플랫폼(K-startup)', 지역별 '혁신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진행
  - 소셜벤처 및 청년창업활동 지원의 시설과 기반장비 구축
- 사회혁신 리빙랩의 운영 관리방안
  - 충남도, 소셜벤처기업 및 청년활동가, 거점지역 시민단체 중심의 리빙랩 추진단을 구성하여 공간 수요 및 활용주체 중심의 리빙랩 설계, 구축을 추진
  - 단순 청년창업공간에서 나아가 관련 시제품 제작지원, 주민대상 사업·제품설명회, 사회혁신 DB화 및 제도개선, 주민대상 교육 및 홍보 등 기반구축도 병행
  - 충남 사회적금융증개기관과 연계한 창업자금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스타트업 프로그램화
  - 중앙정부 사회혁신공간 구축사업인 '혁신파크' 및 사회혁신창업공간들과 네트워크 활성화

### 3. 소요예산

- 연도별 20억원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 기타 억원)

### 4. 기대효과

- 지역의 소셜벤처 및 청년혁신활동가의 창업과 지속적 활동기반 마련
- 청년중심의 지역중심 혁신활동 확산으로 지역사회 활력 증진

### 1. 필요성

- 개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방향으로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한계
- 지역 중심의 통합지원 및 네트워크 생태조성 추진 및 제도마련 필요

### 2. 추진내용

- 공공기관, 클러스터 전문가, 사회적경제조직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 구축
  - 추진단은 특구제 운용을 위한 제도설계, 추진체계, 운영방안 마련
  -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대상지 실무심사, 사업 모니터링 등 실시
- 생활권 단위의 사회적경제 특구제 도입 추진
  - 특구 지정은 사회적경제기업 집적지, 잠재적 자원보유, 시·군 육성의지가 강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 특구 선정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서 시행
  - 사회적경제 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공간조성, 중간지원조직 설치, 지원사업 등 인센티브 체계 마련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특구제 조항 신설 추진
- 특구제 시범사업 운영 후 확대 추진
  - 시·군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선정 후 사업평가를 통해 확대

### 3. 소요예산

- 연도별 15억원

### 4.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 특구제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생태계 구축 가능
- 사회적경제기업의 실질적 협력·연대 기반 마련을 통한 경쟁력 강화

### 1. 필요성

- 다양한 중앙부처의 정책지원 확대 및 신규 사업수요 대응을 위한 충남도 차원의 팀단위 전담부서는 한계에 직면
- 사회적경제와 함께 사회혁신 청년자원육성 등 유관 분야를 포함한 전담조직 필요
- 현장에서도 다양한 수요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확대 및 특성화 필요

### 2. 추진내용

- 충남도청 사회적경제 전담부서의 확대개편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전담부서를 현재 팀 단위에서 과 단위로 격상 설치하거나 다양한 영역의 융복합을 위해 부지사 소속의 사회적경제 담당관으로 조직 확대
  -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조직별 팀구성을 비롯해 사회혁신, 공동체정책, 사회적금융, 지역청년정책 등 담당기능의 확대 운영
- 운영중인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원기능의 강화 추진
  - 현재 조직 및 예산의 한계로 판로지원 등 일부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원센터를 도의 조직확대에 부합하는 규모로 확대개편이 필요
  - 기능 또한 현재 충남연구원으로 흡수된 연구조사 기능을 포함하여 사회적 금융, 사회혁신, 청년인재육성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운영이 필요
- 시·군단위 사회적경제 제도 및 지원조직 강화 추진
  - 충남도내 15개 시군 대상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 추진 및 지원
  - 15개 시군 대상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자활센터 등 기존 조직들을 활용한 공동체 통합 지원조직 구축 운영

### 3. 소요예산

- 연도별 5억원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 기타 5억원)

### 4. 기대효과

- 공공의 사회적경제 전담부서 확대를 통한 지속적, 안정적 발전을 기대
- 중앙부처 지원사업들의 효과적 대응 및 다양한 지역수요의 정책실행이 가능
- 지역에 밀착한 중간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도민대상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대



### 1. 필요성

- 충남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영역 확대 및 협업 증대에 따라 민관 협치 요구 증폭
- 각 분야에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다양한 협치체제의 운영 필요

### 2. 추진내용

- 신규사업 수요에 대응하는 육성위원회 확대 운영
  - 공유경제, 사회적경제특구, 사회성과평가 등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 도, 시.군, 유관기관 등 조직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기능 강화
  - 각종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정책반영 및 대외활동 추진
- 사회적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창업, 금융,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로 정책자문 수요에 대응
  - 주요 정책 단계별 타당성, 실효성 등 검토와 종합 평가 등 참여
- 도정 사회적경제 협업사업 추진체 구성.운영
  - 「제2차 충남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에서 발굴된 협업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 관계자로 구성된 추진단 운영
  - 협업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공유, 추진사항 점검, 성과진단 등 실행
  - 공무원 대상 성과보고 대회 및 우수협업부서 시상 추진

### 3. 소요예산

- 연도별 0.5억원

### 4. 기대효과

- 증대하는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응하여 협치체제로 발전 토대 마련
- 도정사업의 융.복합을 통한 협업 증대와 자원의 효율적 활용 기여

### 6.13 지방선거에 대한 전북 사회적경제 공동 정책 제안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6.13 지방선거가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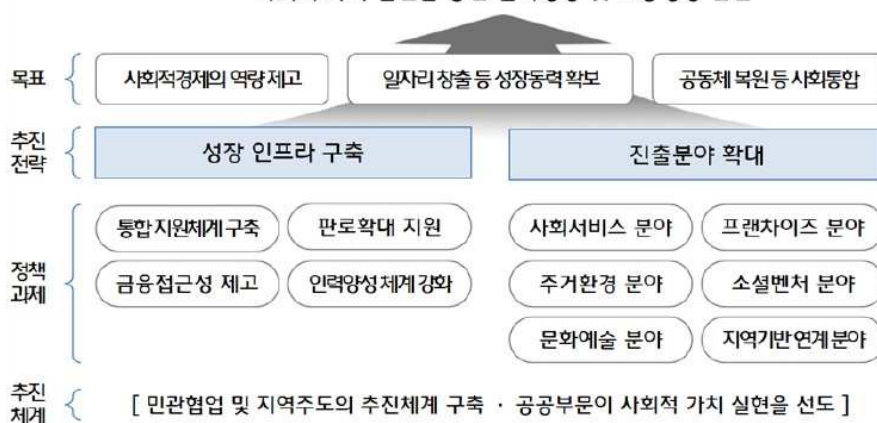
지금까지는 지방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대기업 유치, 대형 국책사업 추진 등이 주된 쟁점과 관심사였습니다. 결국 외부의 자원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듯한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도 못하였고, 지역주민의 삶에는 더더욱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갈등 유발, 생태 환경의 파괴, 지역가치의 역외 유출 등을 유발하였습니다. 지역 내 선순환 경제 구축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은 셈입니다.

이번 선거는 이전과는 다른 지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 청와대에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 방안을 수립, 기본정책을 발표(2017.10.18.)하는 등 정부의 주요정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협력성장 및 포용성장 견인 ”



\* 자료 :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 활성화’(2017.10)에서 작성

또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정당과 출마자들의 정책 공약의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야를 불문하고 우리 사회에서 공동의 주요 관심사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도 이번 6·13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사회적경제가 부상할 것이며, 이에 대한 올바른 정책의 마련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 먼저 사회적경제의 정책과 관련하여 지켜져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1. 정부 주도형의 사회적경제는 현장 지역의 활동을 서울·수도권과 중앙정부에 의존토록 하는 경향을 만들어 왔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행정 편의주의는 부문별, 지역별 현장성과 구체성을 무시한 채, 대부분 '정책 따로, 보조금 따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는 사회적경제의 목적을 '정부정책의 실패와 시장 부재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의 안정적 보장'이라는 보조·보완적 기재로서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 상 검토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게다가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지원에 의해 판가름 나곤 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는 구체적인 현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에 근거한 정책과 이를 반영하는 공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부문별 조직 역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활동이 가로막히고, 어려운 지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제시 할 것인지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키우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조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가는 정책 공약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지방선거의 대응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이번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 공약에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취지와 목적이 취약 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공공 서비스의 확충이라는 단순히 복지와 사회 서비스에 대한 보완적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이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누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입니다.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가치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의 통합을 통한 제고(提高), 지역공동체의 삶을 개선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이를 위한 전북 사회적경제에 대한 민-관 공동 정책 협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전북지역에서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제활동의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수익의 외부유출 방지, 선순환 회복입니다. 1) 취약한 인적·물적 기반의 혁신 2) 비즈니스 혁신을 통한 고도화, 전문화 3) '혁신연계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이를 세분화하면 1) 육아, 청소년, 노인 등 세대별. 2) 농촌, 도시 등 지역별. 3) 농업, 제조업, 환경, 에너지 등 산업별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농업, 주택, 교육, 의료, 환경, 복지의 영역이 사회적경제가 주요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의 확장성과 안정성을 가져오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하여 합의하고자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 제안하는 공동의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6. 13 지방선거 정책 공약 [사회적경제]

-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

### \* 공동정책 공약 6 항

1. 사회적책임조달제도의 시행.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확대 및 안정적 판로 확보
2. 사회적경제연대기금 조성
3. 전북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타운 조성 및 지역별 연계기반 구축
4. 복지예산 확대 및 사회서비스 체계 개선을 통한 복지 증진, 일자리 창출
5.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관련 통합부서 운영
6.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및 기본정책 수립

## 각 항별 세부안

### 1. 사회적책임조달제도의 시행.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확대 및 안정적 판로 확보

##### ○ 제안배경

-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안정적 판로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의 확대를 통해 공공영역에서의 시장 영향력 확대가 필요
- 사회적경제 조직의 우선구매를 규정한 상위법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공조달과 관련 법률(중소기업 구매촉진판로지원법, 녹색제품구매촉진법 등)의 실효성이 미약함
- 현재 공공조달 체계(일반경쟁)에서는 최저가낙찰제 등의 한계를 시정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일정한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사회적책임조달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 ○ 공공조달 현황

- 기존 시장에서 사회적경제의 상품, 서비스는 초기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움. 이는 상품, 서비스의 질과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자금 동원력, 광고비, 판매처의 인지도 등에서 기존 업체와 비교하여 다른 판매방식을 갖기 때문임
- 사회적경제 제품의 안정적인 판매는 대대적인 광고나 인맥을 활용하는 방식이 아님. 사회적경제가 갖는 사회적 가치, 공공성을 근거로 하여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을 1차 판매대상으로 함
- 사회적경제 상품, 서비스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초기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이 중요함.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만들고, 조례가 만들어진 곳은 '우선구매' 조항에 대해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개정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확대하여야 함

##### ○ 필요성과 내용

- 사회적 기업, 지역자활센터, 소비자생협, 로컬푸드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판매하여 생산자들을 돕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존의 다양한 매장을 활용하여 구매를 촉진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 향후 전북에서 생산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상품과 서비스)의 정보를 집중하여, 상품의 목록과 물량 등 구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물류의 상류(商流)를 원활하게 형성하도록 함으로서 사회적경제 공공시장 중개센터를 설치할 것을 지향.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 제품들을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공공조달 활성화 정책으로 발전케 함

○ 우리나라 관련 제도 현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 구매계획·구매실적 통보의무, 온오프라인 공공조달지원센터 운영 등)
-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2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 구매계획·구매실적 통보의무, 온라인 공공기관 우선구매 상품몰 운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 기획재정부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지침’을 정하고 공공기관 협조 요청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서 인증 사회적기업 가점 부여, 다수공급자 품목계약제도(MAS)경쟁평가지 사회적기업 우대 및 배점부여

○ 우선 구매제도 운용상 문제점

- 사회적책임조달 이해부족 : 공공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이해부족과 제춤에 대한 불신, 부서간 인식의 차이, 금액기준 실질집계에 따른 일회성·대량 구매
- 조달행정 프로세스 문제 : 공공구매 활성화 정책 프로세스 부재, 공공시장 조사·분석 미비, 우선구매제 적용 적절한 공급처 부재, 공급처 규정으로 조달의 제약
- 법과 제도적 문제 : 최저가격입찰제, 상위법 부재의 한계와 부수적 구매패턴, 우선구매제도 운영에서 법적 충돌 가능성, 우선구매 적용 명확한 기준과 방식 부재

## 2. 사회가치연대기금 조성

### ○ 일반배경 및 현황

-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 금융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 지역이 안고 있는 주요 사회적 의제 해결을 위한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성장시키는 방법의 일환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로컬 거버넌스형 공동 협력기금을 조성·운영

### ○ 필요성과 내용

- 기본적으로 민간 중심, 민간 주도의 사회적금융 민간기금 설립 선(先)추진
- ‘사회가치연대기금’을 민, 관의 출연과 투자를 받아서 조성하고, 별도의 관리 위원회를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건전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
- 기금의 기금과 업무에 합당한 운영기관의 법적형태 마련이 필요함. 금융수단 활용 측면에서 법적 제약조건이 가장 적은 형태를 가져가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및 조례 제정을 통해 기금 조성의 목적에 부합 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격 부여

### ○ 기금 조성 방법

- 개인 기부 또는 신탁, 지방정부 및 기업의 출연, 지역주민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의 출자 등 가용한 모집수단을 모두 활용
- 기금 운영은 출자, 대출, 출연, 보증 등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 가능한 법인격을 가져야 함
- 기금 조성 목적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상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임을 알림으로써 많은 주민 참여 유도 필요

### ○ 기금 성격 및 방식

- 기금의 성격은 기금의 기금(Fund of Fund)형태를, 방식은 직접 자금 제공 방식
- 지원대상은 사회적가치의 실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회가치연대기금’으로 명명



### 3. 전북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타운 설치 및 지역별 연계기반 구축

- \* 현재 전라북도가 추진 중인 정책이나 시군으로 확대가 필요함.  
지역 로컬푸드,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

#### ○ 일반배경 및 현황

- 취약한 인적, 물적 기반 혁신 : 품질 향상, 생산성 증대, 노동강도 완화에 대한 혁신의 필요성  
⇒ 협의회 조직을 통한 규모화 촉진
- 비즈니스 혁신으로 고도화, 전문화 : 노동집약적인 단순사업을 넘어 장비-기술의 결합 상품 및 서비스 생산을 위해 '실행을 통한 학습' 체계 구축
- 혁신연계조직 활동의 적극적인 활용 : 혁신 능력의 축적 및 발전을 위해 중간지원조직 활동의 고도화와 혁신연계조직(innovation broker) 활성화

#### ○ 필요성과 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의 제조, 가공, 마케팅, 유통, 교육, 홍보 및 판매매장까지를 연계한 융복합 공간
- 개별, 부문 사회적경제조직의 네트워킹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지역통합형 비즈니스 전략'을 지향하는 '사회적경제 블록 허브' 조성
-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혁신기술, 금융지원, 연구개발, 전문인력 확보 등 '사회적경제 핵심자원 구축'으로 '사회적경제 복합체로의 성장·발전 거점 마련
- 지역대학과 연계한 공동연구·공동사업 추진 고려

#### ○ 주요성격

- 사회혁신 실천거점 : 지역문제 사회문제의 해결 거점
- 비즈니스 혁신거점 :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화-경영전략 혁신
- 연대지원 활동거점 : 개별-부문-지원조직 활동의 극대화
- 혁신인력 양성거점 : 사회적경제기업가, 사회혁신가 양성
- 사회혁신 물적기반 : 기술-실천기반, 인프라 조성
- 사회적금융 특화거점 : 사회가치연대기금 및 사회적경제금융 특화

#### 4. 복지예산 확대 및 사회서비스 체계 개선을 통한 복지 증진, 일자리 창출

##### ○ 일반배경 및 현황

- 초고령화와 인구절벽, 지방소멸 위험시대와 핵가족화, 저 출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와 비례하여 복지 예산 확대 필요
- 사회복지예산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여 사회적 불균형 해소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급자로서 민간영역의 중심축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필요

##### ○ 필요성과 내용

- 기존 복지관 중심의 사회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공급체계 전환 필요 요청 제기
- 복지서비스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서비스의 질 향상, 공공성 유지
-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돌봄 서비스사업의 국가예산 및 지자체 예산 확보
- 돌봄 서비스 분야 사업은 가사·간병 돌봄, 신생아·산모 돌봄, 노인 돌봄, 아동 돌봄, 장애인 활동 보조 돌봄 등 다양한 사업으로 일자리 증가
- 사회서비스 시장의 확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인 자활 및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시니어클럽 등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복지서비스 행정체계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등에서 복지관 지원, 바우처 사업, 사회보험 지원 형태 등으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합 돌봄 서비스 시스템 구축의 필요
- 돌봄 서비스 공급자인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교육, 직업훈련, 서비스 컨설팅 지원을 통해 수요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 제공, 경쟁력 강화

## 5.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관련 통합부서 운영

### ○ 일반배경 및 현황

- 현재 중앙부처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모두 분야별로 담당부서가 상이함
- 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 협동조합: 기획재정부, 자활사업: 보건복지부, 마을 만들기: 안전행정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분리
- 전라북도의 경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은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정책관, 마을만들기 사업은 농축수산식품국 농촌활력과, 자활사업은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에서 담당
-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재정낭비, 중복 행정, 사회적경제 조직간 불필요한 경쟁 및 사회적경제 주체 간 시너지 창출을 가로막는 등의 문제점 노출

### ○ 필요성과 내용

-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 법령 제정(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실현기본법, 공공기관판로지원법) 추진 2) 사회적경제 정책 컨트롤타워 수립 : 기획재정부 중심의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등 지원체계의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사회적경제 영역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통합부서의 필요성
- 사회적경제 영역의 행정업무, 지원사업, 정책수립 등의 일관성과 효율성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사회적경제조직(주체) 간 시너지 창출 및 확대 가능.

## 6.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및 기본정책 수립

### ○ 일반배경 및 현황

- 광역, 기초자치단체에 사회적경제 관련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음
-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기본조례로서 정하여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생태계의 조성을 목적으로 함

### ○ 입법취지

-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주체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입법 제안

### ○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 용어의 정의
- 지방정부 단체장의 책무 규정
-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규정
-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운영의 근거 마련
- 사회적경제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방향 설정. 기본계획 수립, 추진
- 활성화와 생태계조성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 운영
-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및 육성에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근거
- 국제협력 관련

## 강원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 1. 지역사회기반 사회적경제 노인통합돌봄시스템 구축(에이징 인 플레이스)

- 의료, 돌봄, 영양급식, 정서지원, 주거복지 등 연계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 의료생협, 돌봄, 급식, 주거복지 등 사회적경제조직 협력체계 구축
  - \* 중장기적으로 원주를 중심으로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추진
- 원주-횡성-영월을 묶는 소권역 단위의 시범사업 준비 중(사회적경제 강원돌봄)
- 위와 연계하여 마을 단위의 노인통합돌봄시스템 구축 : 마을기업 연계 추진
  - \* 춘천 별빛산골교육사회적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준비 중

### 2.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강원 잡스(JObs) 프로젝트 확대 운영

- 도와 도센터는 청년 일경험 및 취창업 연계를 위한 강원잡스 프로젝트 추진 중
- 작년 20명의 청년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100% 이상의 취창업 실적일 보임
- 이 사업은 청년 사회혁신가의 발굴 육성 및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에 기여
- 청년 사회혁신가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위해 프로젝트의 확대 운영이 필요함

### 3.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관리 프로젝트' 설계 및 추진

- 평창동계올림픽 유무형 유산에 대한 관리 및 보존 대책과 예산 미흡
- 공익성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을 기반으로 올림픽 유산 관리대책 수립
- 사회적경제 올림픽 유산 관리 프로젝트는 새로운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는 또 다른 출구가 될 것임
- 현재 관련 정보제공 미흡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세부적으로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정보제공을 통해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

## < 지역 추천 공약 >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 1. 광역시도별(기초지자체별) 조례 제정 촉구

- 과거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제정을 촉구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서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의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가 마련된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전역(광역시도+기초지자체)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및 <사회적경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촉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지원에 대한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광역시도별 사회적경제의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필요
- 형식적인 조례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조례(예: 성남시, 서울 등) 권유

### 2. 광역시도별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구축

- 현재 부처별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관할하는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마을기업 지원기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의 업무와 역할이 분산되어 있음
- 부처별 중간지원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광역시도별로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구축하고 함께 입주할 필요
- 이를 통해 각각의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조직>들이 한데 모여서 개별적인 기본과업 이외에 공동행사, 공동마케팅, 공동교육, 정보교류, 협력사업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이왕이면 광역시도별로 사회적경제((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판로 개척을 통한 매출 확대를 위해서는 <결제 기능을 갖춘 사회적경제 통합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및 <사회적경제 오프라인 마케팅·판로지원 허브센터>로서의 기능을 갖추는 것이 효과적임
- 또한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내 구매상담실, 제품사진촬영실, 교육장, 신제품개발/상품리뉴얼/제품·포장디자인/브랜드개발/홍보지원이 가능한 기능을 갖춘 시설이 조성된다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정책위원회 지방선거 대응 전략(안)

### ○ 대응 원칙

- 정책위원은 개별 후보 캠프에는 결합하지 않음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차원에서는 충북도(지사, 교육감), 청주시장의 각 정당 후보가 결정되면 정책개발 단계부터 개입 전략 추진에 따른 정책위원회 입장

- 각 정당별 후보자가 확정된 이후 정책 제안 진행
- 충북도(지사,교육감)과 청주시(시장)는 적극 대응하고, 이외의 선거단위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단위의 요청 시 지원
- 정책발표, 토론회, 후보자 협약식 등 사회적경제영역이 집중될 수 있는 기획 사업배치
- 시민사회, 복지 등 지역 타 영역과의 적극적인 협력 대응
- 현장 중심으로 정책의제 발굴토록 하고 이를 위해 각 분야별로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적극 노력(단순 지원요구나 민원성 제안은 지양)
- 내부현황 및 역량 분석(예:swot)과 연계한 정책 선별

### ○ 정책개발 기초 및 목표

#### 정책개발 기초

- '제도'나 '부문'이 아닌 시민 생활(경제) 영역의 사회적경제 '철학'과 '가치'로 접근
- 실생활 및 실물경제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많은 분야를 사회적경제와 접목

#### 정책개발 목표 및 전략

##### ○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여 지렛대로 사용

- (지역)사회 전반의 공공성 강화
  - 민관 거버넌스의 실질적 권한 강화 및 이를 위한 민간(사회적경제) 개방직 확대. 이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마련
  - 공공구매 및 공공급식 등 정부사업과 예산 집행 효과의 공공성 강화
- (거대)자본 친화, 성장 중심 패러다임에서 서민과 노동자 친화 사람중심, 지역 농상공 중심의 지역순환 패러다임으로 전환
  - 지역 금고를 활용한 지역순환 소비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기금 강화
  - 다양한 협업 모델 발굴 위한 공유 자원 활성화(인적, 공간적, 사업적, 재정적)
-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연대와 협동에 의해 해결하는 시민의 주체적 역동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변화 도모
  - 생활기반 마을 중심 '읍/면/동' 단위의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정책
  - 인력양성 및 시범 사업 등을 통한 점진적 시·군 지원시스템 구축 (4년 내 11개 시·군 지원기관 설립 등)

# 2018 지방선거대응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토론회 갈무리

- 김정미 (중부매일 기자)

##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적정수가 보장·네트워크 필요"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2017.07.09.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는 2018년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분야별 정책 토론회 첫 번째 주제로 사회서비스를 정했다.

김윤모 유스투게더 대표가 좌장을 맡아 6월 29일 충북대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지역 내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으로서의 사회적경제조직의 현실과 대응 과제'가 주제였다.

(사)사람과경제 하재찬 상임이사는 "내년 지방선거에 잘 대응해 보자는 취지로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첫번째 주제로 '사회서비스'를 뽑은 것은 그 만큼 사회서비스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부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송유정 (주)휴먼케어 대표, 민동세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기획이사가 발제를 맡았고 김태운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 대표, 백수진 (주)사람인충주돌봄 대표, 최순복(주)보듬 대표, 김종석 청주시지역자활센터 센터장, 김학실 충북대 주임교수, 강병민 청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유경훈 청주YWCA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적정수가 보장·자립기관 세금 부과 개선

▶송유정 (주)휴먼케어 대표 = 충북 지역 내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으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 현황과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함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사회 서비스'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자 정책으로 지난 10년을 달려왔다. 시설 설립에 따른 보조금 지원 없이, 이용자의 선택권마저 보장되는 사회서비스 전



달체계 변화 정책은 당시 수급자 일변도의 복지정책에 획기적인 대변혁이었다.

일각에는 국가가 아닌 시장에서 사회서비스가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복지의 산물이라고 비판했지만 국민 생활의 필수재로, 보편적 복지의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편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 이면에는 최저임금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약한 수가, 이로 인한 제공인력의 안정적 근무여건이 지켜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서비스 수익에 의존해 운영되는 제공기관은 존립의 위험이 있었다. 현재는 무리한 시장경쟁에 따른 민간 업체 간 이윤 극대화 욕구와 당국의 미흡한 규제·감독이 겹쳐지면서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총체적 난국에 와 있다.

사회복지영역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의 주체는 국가이다. 국가가 보장하지 못 하는 부문에 대한 국가와 사회복지의 역할을 보완하고자 시장 접근 방법인 사회적기업이 육성되었다. 그런데 현재 충북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의 참여 현황은 미미한 상태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참여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섯가지 정도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첫째, 건강한 제공기관의 참여만이 사회서비스 공공성 향상이 답이다. 둘째, 제도 관련 수가 정상화에 대한 공동 노력과 함께 지방정부는 제공기관 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적정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보완을 통한 저출산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등 제도화에 적극 나서야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 상 미포함 되는 제공기관의 공공성 유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서비스 정책은 보조금 없이 자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강한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을 역차별 하고 있다. 지방세인 종업원분 주민세 부가 등 무리한 부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혁신적 재정운용·통합 업무체계 구축해야

▶민동세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기획이사 = 돌봄영역의 사회서비스 실태와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겠다. 담론 형성에 앞서 우리는 사회복지분야 돌봄 사회서비스 일자리 범주에 대한 생각과 돌봄 노동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돌봄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양적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일자리의 질적 측면이나 고용의 안정성을 보면 나쁜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돌봄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주체는 70%가 개인 사업자들이다.

돌봄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돌봄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저출산, 고령화, 장애와 질병 등 새로운 위협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혁신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둘째, 돌봄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주관하는 통합 업무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셋째, 돌봄 사회서

비스 제공조직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위험에 대응하는 새로운 돌봄 사회서비스 개발로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고 다섯째, 돌봄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성숙해지도록 국민 캠페인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미래직업으로 제도화도 필요하다.

최근 사회서비스 관련 4대 쟁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바우처 수가와 관련한 지역의 담론 형성 필요성이다. 둘째 요양 직접 종사자가 85.4%인데 이를 낮추는 제도는 현재 영세한 기업의 경우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예기간 동안 지역 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느 정도 통폐합을 통해 운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만,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과제이다.

넷째 사회서비스 공단과 관련해 이슈화 시키기 보다는 지역의 관망적인 자세에 대한 접근 후 차후 정해진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필요

▶김태운 청주지역시민공동체 대표= 지방선거에 대응해 세 가지를 제안한다. 우선 사회서비스 수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서비스는 이용자, 제공기관, 노동자 세 분야로 이루어진 만큼 세 단위를 묶어 수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용자 본인 부담을 낮춰 주거나 제공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와 정책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백수진 (주)사람인충주돌봄 대표 = 걱정 수가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한다. 우리 기관도 적자를 보고 있다. 바우처 지침상 인건비는 수가의 75% 내외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25% 내외를 관리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저 임금을 지키는 것도 전담 관리자들의 인건비 지급도 어려운 상황이다. 수가구성과 관련해 기존의 기준을 중심으로 운영하면, 실제 급여가 오르지 않고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급여인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해 현재 가장 낮은 수가가 책정되어 있으며, 다른 기업의 경우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수당이 반영되지 않는 곳들이 있다.

#### #장애인 교육 서비스·이용자 요구 반영해야

▶최순복 (주)보듬 대표 = 우리는 사회서비스 가운데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하는 기관인데 이번 토론회에서 돌봄 사회서비스 이야기만 나와서 아쉽다.

18세 이후 장애인들은 치료 바우처가 되지 않는다. 지금 부터는 장애인들에게 복지 서비스와 함께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기존의 수가와 관련해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바우처를 통해 제공되길 바라는데 현재 재활치료 단가에 비해 바우처 비용이 낮아 진행이 어렵다. 이와 관련해 정책 개발 등 보완이 필요하다.

▶김종석 청주지역자활센터장 =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용자, 제공자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해 줄 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없다. 사회서비스 영역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별로 없다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

#### #사회적 협동조합 활성화·제공주체 네트워크

▶김학실 충북대 행정대학 주임교수 = 사회서비스 10년의 역사는 제도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서비스 공단에 대해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단은 여러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더욱 논의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활성화시켜 우리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들을 늘려야 한다.

▶강병민 청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모든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이 만들어졌지만 형식적인 측면이 있다.

복지 분야 거버넌스 역할을 하면서 느낀 점은 각자 열심히 하느라 옆을 볼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다. 사회적 경제 관련 영역끼리 지역차원의 아젠다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계획 수립에 있어 지역사회 보장 계획 등을 참고해 반영하길 제안한다.

#### #도농복합지역 원거리 교통비 지원

▶유경훈 청주YWCA 국장 = 돌봄 노동은 전통적으로 무임금 저평가 노동이었다. YWCA는 1973년 가사 서비스 사업을 통해 인력 양성 후 파견 사업을 하는 등 직업화 노력을 했지만 일자리의 만족도를 높이는 어려웠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우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증진 사업이 필요하고 건강증진 센터 등의 쉼터가 필요하다.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역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 관련 법령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원거리 교통비 지원도 반영되어야 한다.

▶한석주 농촌공동체연구소장 =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원거리 교통비가 필요하다. 충북은 농촌이 많아 농촌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도시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개선이 필요하다.

▶하재찬 (사)사람과경제 상임이사 = 사회서비스 공적 자금이 제대로 쓰여야 한다. 개인 부담을 줄이고 법인, 사회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마우처 사업이 들어가야 한다.여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 해야 할지 논의하고 지방선거를 통해 제안해야 한다. 관련 주체들이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지역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2/3를 환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제 조합 등을 결성하면 노동자들의 임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 ※ 사회서비스란?

저출산과 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함께 등장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이다. 지난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7월에는 소득유형에 관계없이 건강에 따라 등급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가 도입되는 등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 "사회적기업 질적 성장 위해 '우선구매정책' 확대해야"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2017.07.27.

고영재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충북지부 회장은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가 주최해 27일 충북NGO센터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대응 및 정책개발을 위한 사회적경제 영역&분야별 토론회'에서 충북지역 사회적 경제 제도 및 정책 활용 사례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영재 회장은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충북에 존재했던 3개 인증 사회적기업은 2017년 기준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해 120개 기업으로 성장했고 근로자 수도 약 1천700여명에 달한다"면서도 2013년부터 성장치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충북지부에 따르면 2013년 당시 110개였던 사회적기업 총 수는 2017년 120개로 4년 새 10여개 정도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고 회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갖춰야 할 복잡한 서류, 사회적 편견과 미래 비전 약화로 인한 인증 포기 등을 양적 성장치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그에 따른 시도 조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정책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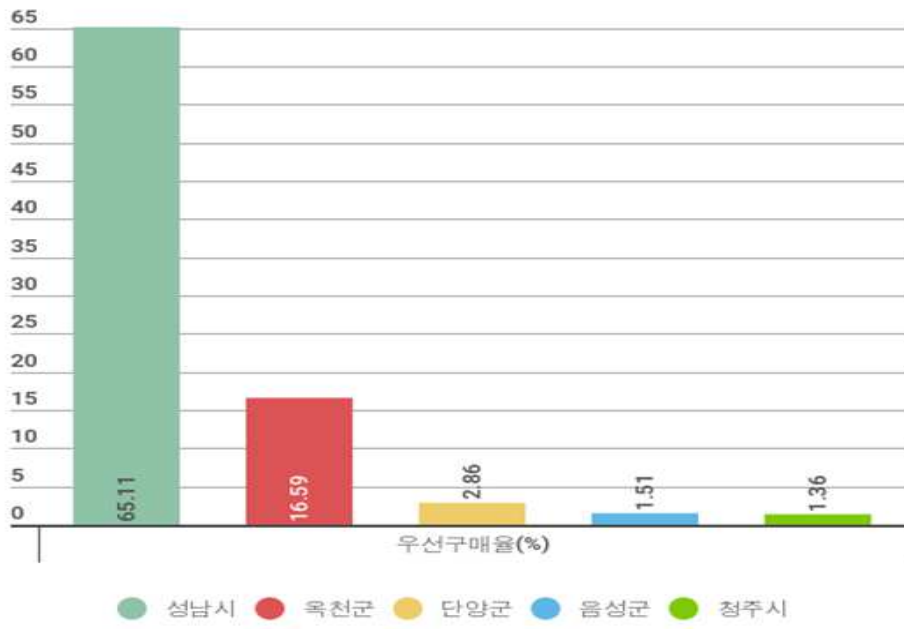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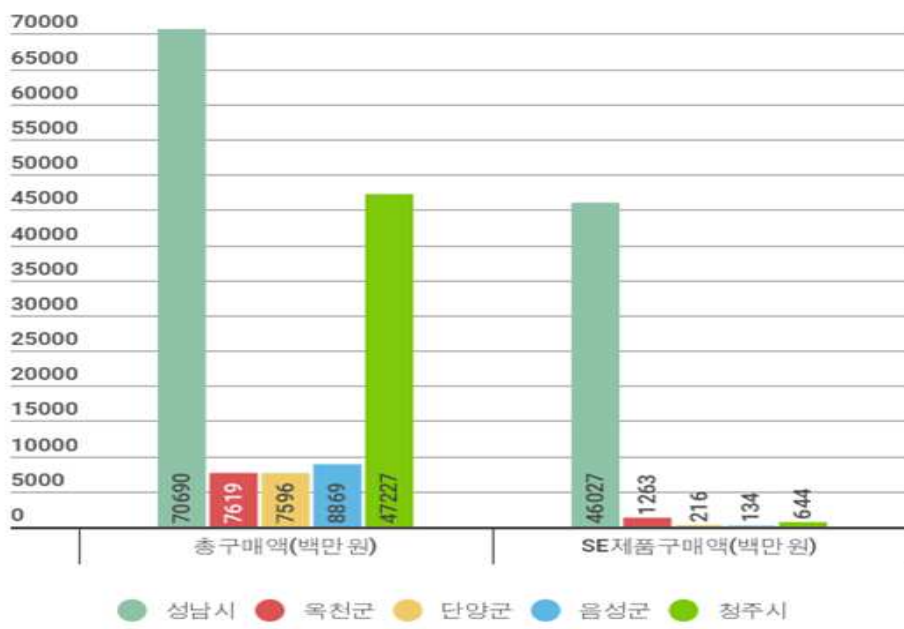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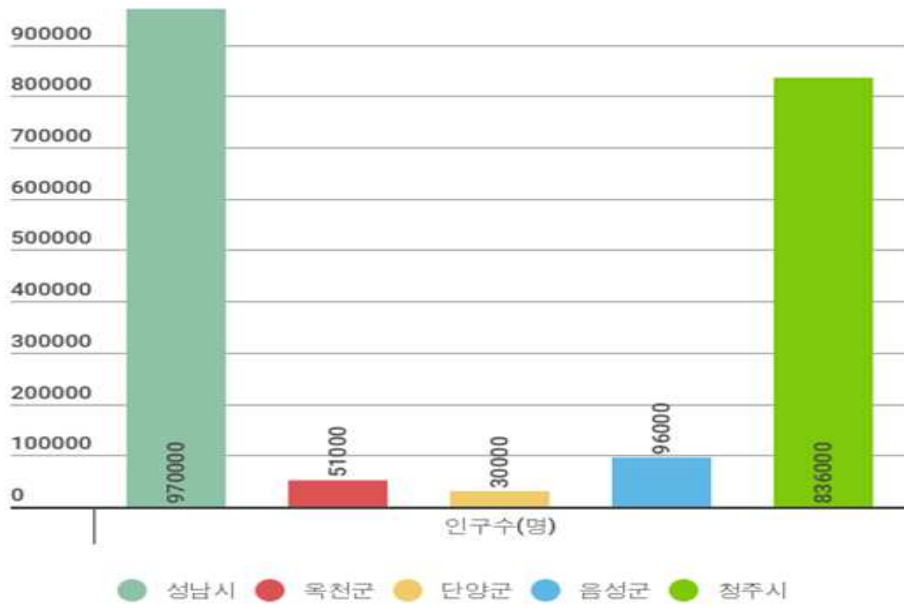
고영재 회장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명시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촉진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등으로 표현된 선언적 조례 문구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 인천, 전주, 충남의 경우 구매계획에 따른 개별 기관의 집행 정도, 그에 따른 기관의 평가 기준이 구축되어 있거나 구매율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례에 신설됐다.

고 회장은 "균등한 분배, 제한된 용도만 허용하는 지원사업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우수 사회적기업 탐색과 성장 지원 등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적극 지원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례'를 발표한 배미원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배 센터장은 "시·군 단위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구체적이고 현실적 활성화"라며 세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배 센터장은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시·군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시·군 단위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창업보육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회적경제 범위 제도화해 지역발전 패러다임 바꿔야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2017.10.29.

[2018 지방선거 대응 및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  
김기태 협동조합연구소장, 지역주민·자원 등 최대한 활용  
하재찬 사람과경제 센터장, 충북 특성 고려한 정책제안 필요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가 주최하고 사회적기업활성화충북네트워크가 주관한 제5차 2018 지방선거 대응 및 정책개발을 위한 사회적경제 영역&분양별 토론회 주제는 지역발전전략으로서의 사회적경제 제도화 방안이었다. 조례를 중심으로 지역 차원의 제도와 정책 개발을 제안한 이번 토론회에서 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과 사람과경제 하재찬 센터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가 제도화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강조했다.

##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의 상관관계

▶김기태=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초지자체 혹은 광역지자체 공무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경제 위원회 등 민간거버넌스의 공식화, 세 번째는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중앙부처 정책을 그냥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민간협치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조례의 기본 원칙인데 민간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조례가 적지 않았다. 이제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이유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원칙 일곱 가지는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지역사회에 관여하는지 잘 설명한다. 성과를 지역사회의 약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결과로서의 기여라면 협동조합의 소유권, 사업권역, 자원동원 방법이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은 과정으로서의 기여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협동조합의 운영 목적이 지역 내 상대적 약자의 사회경제활동을 돕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리기업은 지역발전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일부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환경파괴 등 외부 불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사회적경제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책화되지 못한 이유는 의지와 원리가 곧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지역발전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지역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이를 핵심목표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이 미흡했던 것도 이유다.

이제는 지역발전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지역주민과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공동체를 강화시키는 것이 전제가 되면 사회적경제는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다. 민간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 활동을 강화하면서 그 성과가 어떻게 지역발전에 기여하는지 설명하고 사회적경제 관계자에게 인식을 강화하는 교육과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국의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광역 10곳, 기초 69곳 등 모두 79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조례가 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계획의 실질적 수립은 미흡한 수준이다. 기본계획 수립이 부진한 이유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계류 중이고 광역 및 기초지자체별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이 아직까지는 저조해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례가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꼽힌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지역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실행가능한 계획, 광역과 기초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개발이 돼야 한다.

## #시민성과 공공성 확장하고 네트워크해야

▶하재찬= 타지역 사회적경제 조례와 중복조례를 비교했다.

광역은 충남과 강원을 비교하고 기초는 천안시와 춘천시를 통해 청주시와 제천시 등을 비교하고자 했다.

제천시는 충북에서 사회적경제 지원조례를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곳이다.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를 통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을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구성하도록 했다.

그런가하면 충북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관련 육성지원조례만 두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조례의 경우 표준조례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고 협동조합 위원회 회의를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게 되어 있지만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협동조합 설립 신고와 관련한 권한을 시·군에 위임하기 위한 측면이 커 보인다.

청주시는 사회적기업 관련 지원 조례만 가지고 있고 기본 내용만 형식적으로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11일 개정을 통해 육성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에서 업무담당 국장으로 위상이 격하됐고 매년 2회 이상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했던 것을 삭제했다.

충주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지원조례를 가지고 있고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진천군과 단양군 역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지원조례를 가지고 있으나 내용은 기초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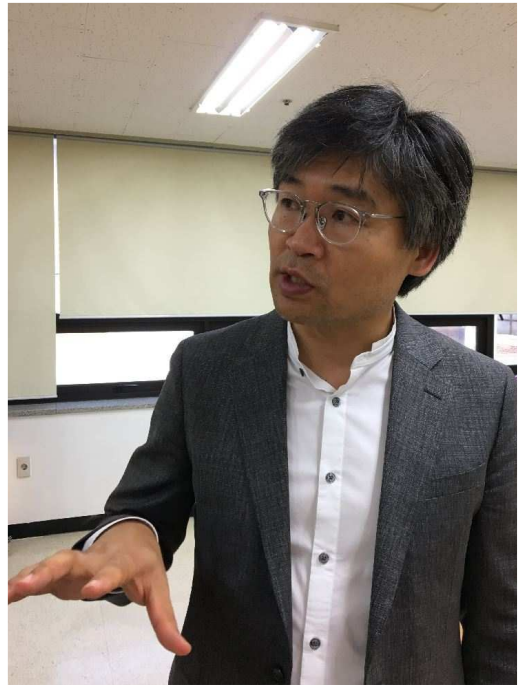
진천군은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에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광역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기

초 시·군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충청북도의 사회적경제 지원제도 설치가 중요하다.

충남과 강원, 충북의 사회적경제 지원제도 설치 및 주요 내용을 비교한 결과 우선구매의 경우 강원은 연대사업 및 연대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충북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시민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확장하고 지킬 것인가가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우선구매 및 사회적경제기금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조례 도입에 힘을 실어야 한다. 무엇보다 충북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충북은 2000년 초반부터 자활과 시민사회가 사회적기업 운동을 표방하여 미래ENT나 삶과환경 등을 사회적기업육성법 이전에 설립하였고, 청주시 자원순환포럼, 로컬푸드 운동 등을 전개한 지역이다. 이처럼 우리 충북은 사회적경제에 있어 민간이 선도적 역할을 했다. 이러한 역사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연합(회) 및 민간 중간지원 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지역위원회워크숍

CCI

# 공약개발의 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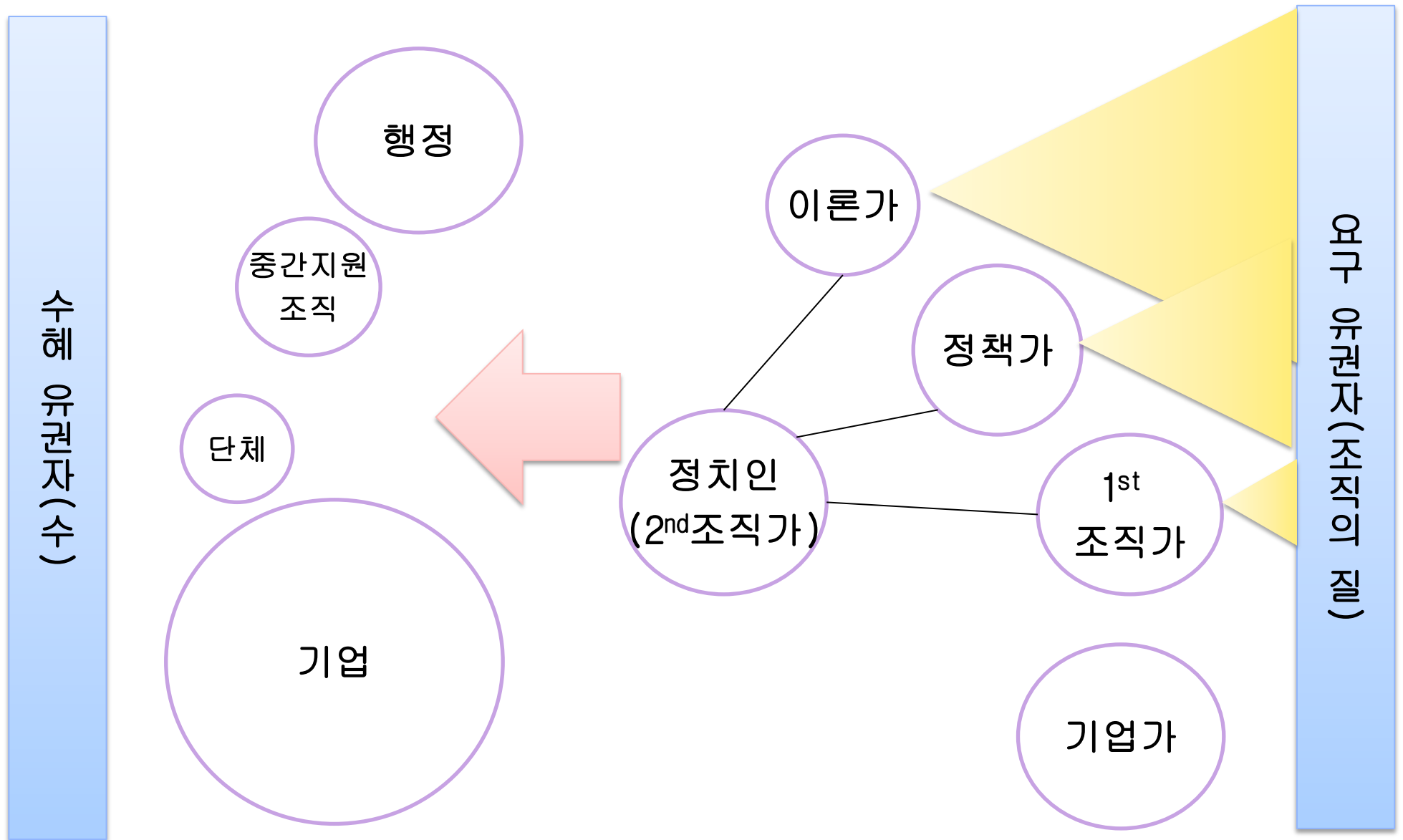
2018. 4

소장 김기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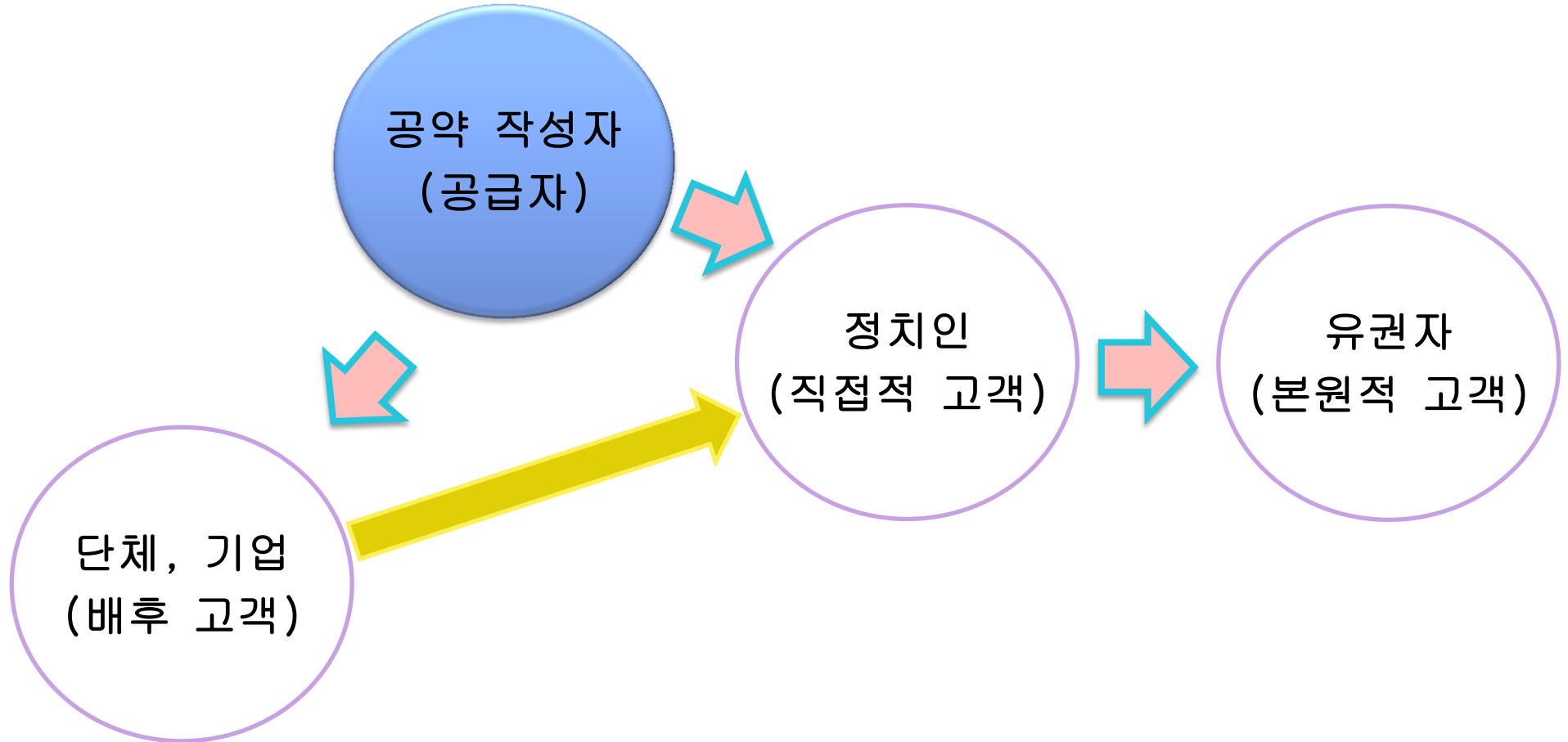
 사단법인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공약 생산을 위한 기본 이해**

# 공약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연관과 포지션, 정책지원의 규모



# 공약 작업의 고객은? 그 관계는?



# 사회적경제활동가 관심 정치인들의 이야기

"정치인이 되고나니, 이전에 공약을 제시했던 활동이 정치인들에게는 별로 영향을 미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회적경제를 도와 주고 싶어도, 요청하는 사안이 00정치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도와주기 어렵다."

"정치인이 뭐든지 할 수 없다. 다른 정치인도 설득해야 하고, 공무원도 설득해야 한다. 어거지로 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 구체적인 설득논리를 먼저 준비해서 오면 좋겠다."

"사회적경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정치활동을 하면 쉬울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다. 사람 모으기는 어렵지만, 저녁시간을 잘 활용하면 만나기 쉽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듣기는 쉽지만, 해결책은 대부분 법적인 것이 많아 지방의원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하고 싶지만, 유치원, 어린이집연합회 구성원이 8천명이고, 강하게 조직되어 있다.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 공약 작성에서 고려할 사항(정당, 정치인의 관점)

1. 다른 당이 따라하기 어려운 공약인가?  
(다른 당의 공약 중 차용할 것은 없는가?)

2. 실행가능한 공약인가?  
(예산 규모, B/C ratio, 사업실행 주체, 상식)

3. 설득력이 있는 공약인가?  
(정책가, 이론가들의 설득, 국내외 선행사례, 이론적 타당성)

4. 얼마나 많은 표를 움직일 수 있는 공약인가? 공약의 타격감!  
(공약의 영향범위, 기존 지지의 강화, 상대 지지의 혼란, 2차 확산의 기대)

5. 유력 정치인의 관심이 강한 공약인가?  
(논리적 & 물적 로비, )

# 선거의 형태에 따라 공약 제안의 접근법도 달라져야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광역의원

시장군수

기초의원

행정력 발휘

제도 정비, 감시

# 정치인을 설득하는 공약의 요건

1. 욕구(needs)의 자극 : 당선가능성을 높이는 공약입니다.  
(요구 유권자의 수와 조직력, 공약 작성에 들인 노력)  
(수혜 유권자의 수, 수혜 유권자의 인식:현실분석)  
**“행정수도 이전” , “쌀시장 개방 불가”**

2. 실행가능성 : 우리가 이 공약의 실행을 책임지겠습니다.  
공약제시자의 역량에 대한 신뢰 부여, 선행 사례  
**“한반도 대운하 ”**

3. 명분 : 2차 확산을 위한 이니셔티브의 확보  
**“지역균형발전” , “복지기본법 전면 개정 ”**

# 사회적경제 공약 작업의 특수성

1. 아직 국민적으로 합의된 공약 카테고리가 아님
2. 적극적 이해관계자는 소수(지방선거에서 더 세게 나타남)  
다수인 생협, 신협의 이해관계자의 소극적 동원
3. 실행가능성 신뢰도가 미흡 : 기업과 단체의 중간적인 위치
4. 높은 명분. (지역사회 발전 등)

# 사회적경제 공약 영향력 강화를 위한 전략

1. 아직 국민적으로 합의된 공약 카테고리가 **아님** 다양한 관련 분야의 정책에 공동으로 포함되도록 작업  
지역발전, 소상공인, 여성, 장애인, 농업농촌 등

2. 적극적 이해관계자는 소수(지방선거에서 **더 세게 다타남**)  
다수인 생협, 신협의 이해관계자의 소극적 동 **최대한 사회적경제 공동공약 작업 추진(사경네트워크)**  
작성 과정을 홍보하여, 조직력을 과시해야 함

3. 실행가능성 신뢰도가 **미흡**: **모범사례, 국내 성공사례 강조, 실행역량에 적합한 공약제안**  
선거는 계속되며, 다음 선거는 2년~4년만 지나면 온다  
**좋은 공약은 받아들여지는 공약이다**

4. 높은 명분. (지역사회 발전 등)  
**정당공통공약 등 전국적 공약작업을 병행하면서**  
**지역 내 문제해결을 강조하며 공약을 생산한다**

## **[지역] 공약 개발의 실제**

# 1. 지역단위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발전 전략에 대한 정리 작업

✓ 주요공약



## 2. 핵심 포인트의 추출 : 다수 가능

사례 : 로컬푸드의 사회적경제 연계 필요

### 문제의식

- 세종시 로컬매장 2개소
- 세종시 사경조직의 평균사업 규모 취약
- 빠른 도시화로 (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
- 신규입주민의 공동체의식 강화 필요

### 핵심 포인트

- 도,농,도-농의 사경제계를 빠르게 도입하도록 로컬푸드의 명분강화
- 로컬푸드의 확대와 사경 전환을 연결

### 예상 성과

- 기존 로컬푸드 이용자에게 소구
- 시민의 관심 집중(2만명의 주인)
- 도시 및 농촌의 공동체 확산을 통한 주민정체성 강화
- 사경 평균 매출액의 증대
- 스타사경조직의 발굴
- 융합적 정책의 모델 사례로 제시



### 3. 공약 진술문의 작성

▣ 공약 진술문(안), 작성중

#### 1. 로컬푸드 직매장을 세종시민의 공유자산으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 (1) 로컬푸드 직매장을 2021년까지 10개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직영 5개소, 회원 매장 5개소)
- (2) 세종시민 2만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수익을 공동으로 배분하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3) 생산공동체 조합원, 로컬푸드 출하 농가 4,000호 육성(농촌형 마을기업으로 육성)
- (4) 소비공동체 조합원, 40개소 1만6천명의 시민의 공동체 방식의 참여 지원(도시형 마을기업으로 육성)

## 4. 근거자료의 정리(설득력 및 예산 추정)

### ■ 현황 및 필요성(안) 작업 중 미완성

1 로컬푸드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시민들의 참여 및 이익 극대화 필요

(1) 현재 2호점까지 건립. 최종 계획은 신도심 생활권역별로 건립. 직매장 1호점은 2017년 연매출 114억원으로 전국 1위 달성. 로컬푸드에 대한 수요가 높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예정이므로 2021년까지 생활권역별 로컬푸드를 설립하여 6호점까지 출점 필요

(2) 현재 (주)세종로컬푸드는 5개의 출자 조직으로 구성(자본금 10억원 중 시 4.8억, 농협 2.4억, 축협 1.5억, SK 1억, 생산자연협회 0.3억 출자). 하지만 농협, 축협, SK 등은 지분출자 후 생산자 조직 등을 매장 운영을 위한 기여는 미진함. 따라서 (주)세종로컬푸드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의 참여와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유도. 참고로 세종시 인구의 10% 참여 계산 산식은 아래와 같음.

## 4. 근거자료의 정리(설득력 및 예산 추정)

### ▣ 예산

1 총괄 추정 예산은 4년간 총 22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4억원	105억원	105억원	6억원	220억원
직매장 설립	건립비용	-	100억원	100억원	-	200억원
	전환비용	-	1억원	1억원	2억원	4억원
	소계	-	101억원	101억원	2억원	204억원
생산자 조직화	조직화비용	2억원	2억원	2억원	2억원	8억원
	마을기업지원	0.75억원	0.75억원	0.75억원	0.75억원	3억원
	소계	2.75억원	2.75억원	2.75억원	2.75억원	11억원
문화공간 조성	문화공간조성	1.25억원	1.25억원	1.25억원	1.25억원	5억원
	소계	1.25억원	1.25억원	1.25억원	1.25억원	5억원

**정책가와 지도자의 협업 프로세스를 잘 그려야**

# 조직된 대중이 함께 동의하여 만든 공약이어야 잘 먹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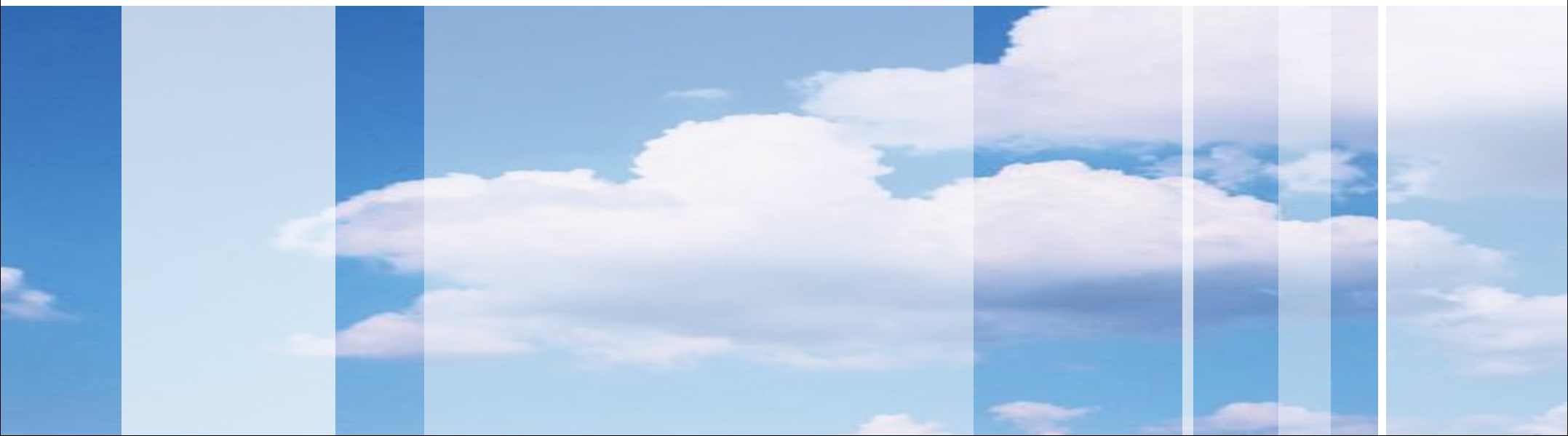
1. 사경 4대 부문의 한시적 논의테이블 혹은 사경네트워크의 회의

2. 1차 정리 후 공개 토론회 개최

3. 공약 제안은 정치활동이 아니라 정책활동으로 인식되어야  
(모든 후보에게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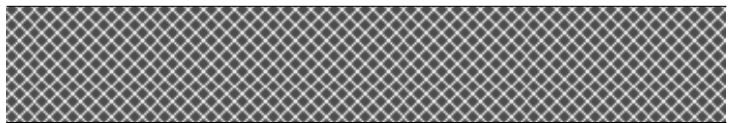
4. 구성원들의 다양한 수준의 공약 요구 활동을 개발하고 진행해야  
(개인 페이스북 게재, 후보 홈페이지 요청, 정책토론회 참석, 캠프 방문 전달 등)

**감사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  
공동공약 워크숍

# 붙임자료







■ 서울시 자치구별 사회적경제관련 기초현황

순번	자치구명	사회적경제관련 조례 및 규칙	협동조합 담당부서	중간지원기관	협동조합 수	협동조합 네트워크
1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		271	
2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과-협동조합팀	강동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84	
3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자리지원과-사회적일자리팀	강북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34	
4	강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	강서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단	83	강서구협동조합협의회(12)
5	관악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과-사회적경제육성팀	관악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104	관악구협동조합협의회(14)
6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자리정책과-사회적경제팀	광진구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97	
7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일자리지원과-사회적경제팀	구로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114	구로구협동조합협의회(31)
8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지역혁신과-사회적경제팀	금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91	
9	노원구	•협동조합 활성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77	노원구협동조합협의회(14)
10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마을공동체과-사회적경제팀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51	
11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자리창조과-사회적경제팀	동대문구사회적경제사업단	72	동대문지역협동조합협의회(19)
12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마음과-사회	동작구협동경제지원	70	동작구협동조합협의회(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li> <li>•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li> </ul>	적경제팀	단		
13	마포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li> <li>•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li> </ul>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	마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지원사업단	181	
14	서대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li> <li>•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li> <li>•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li> <li>•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li> </ul>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	서대문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119	서대문구협동조합협의회(24)
15	서초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li> </ul>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	서초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단	213	서초구협동조합협의회(10)
16	성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li> <li>•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li> </ul>	도시재생과-사회적경제팀	성동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89	성동구협동조합협의회
17	성북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li> <li>•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li> <li>•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li> <li>•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li> </ul>	마을사회적경제과-협동조합지원팀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92	성북구협동조합협의회
18	송파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li> </ul>	일자리경제과-일자리사업팀	송파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153	
19	양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li> </ul>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	양천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단	62	양천구협동조합협의회(35)
20	영등포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li> <li>•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li> <li>•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li> <li>•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li> </ul>	일자리정책과-사회적경제팀	영등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단	173	영등포구협동조합협의회(11)
21	용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li> </ul>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	용산구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단	76	

22	은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경제 기본조례</li> <li>•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li> </ul>	사회적경제과-협동조합팀	은평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144	은평구협동조합협의회
23	종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li> <li>•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li> </ul>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	종로구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단	164	
24	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li> </ul>	취업지원과-사회적경제팀	?	114	
25	중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li> <li>•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li> </ul>	일자리경제과-일자리정책팀	?	54	중랑구사회적경제협의회-협동조합분과(18)
출처	자치구홈피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치구홈피	서울사경센터	기재부협동조합('17.2.14 기준)	서울협의회

■ 서울시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 관련 사업 및 예산 비교

구분		성북구	은평구	구로구	양천구
조직	국	마을재생기획단	재정경제국	기획경제국	기획재정국
	과	•마을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일자리경제과
	협동조합 담당팀 및 인원	•사회적경제기획팀(6) •사회적기업팀(4) •협동조합지원팀(4) •마을만들기팀(5)	•사회적경제팀(5) •협동조합팀(3) •청년지원팀(3) •사회적금융팀(4)	•일자리정책팀(8) •사회적경제팀(4) •공공일자리팀(3)	•일자리정책팀(12) •지역경제팀(5) •사회적경제팀(6) •유통지도팀(5)
	협동조합 담당팀 업무	•협동조합 지원, 마을학교 운영, 협동조합 컨설팅 및 민간협의회 지원 •공정무역 활성화, 공정무역센터 운영관리, 공정무역 위원회,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관리(성북동~정릉3동) •협동조합 우선구매 지원 및 홍보, 협동조합활성화지원위원회,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관리(정릉4~석관동)	•마을기업 육성 •협동조합 육성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및 판로개척,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사회적경제기업 학교 운영, 마을기업 지정 및 육성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인건비.사회보험료.사업개발비 지원사업 •협동조합 신고수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예비 사회적기업 업무, 마을기업 발굴 및 관리,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업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총괄,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협동조합에 관한 업무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사업 및 예산 (단위: 천원)	과 예산	합계 : 1,317,406 (국 25,000 / 시 12,500 / 구 1,279,906)	합계 : 2,439,301	합계 : 2,888,014 (국 50,000 / 지 131,404 / 시 1,332,289 / 구 1,374,321)	합계 : 4,108,934 (국 363,281 / 시 1,287,545 / 구 2,458,108)
		1. 사회적경제 활성화 676,135(51.3%) (국 25,000 / 시 12,500 / 구 638,635)	1. 실업자 구제 및 고용촉진> 안정적일자리 지원 2,312,650	1. 사회적일자리 제공 546,493	1. 일자리창출정책 추진 2,395,276
		-사회적경제역량 강화(홍보, 행사, 부서포상금 등) 76,468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10,240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 401,000(1.예산의 59.3%)	-사회적기업 설립지원 39,580 -사회적경제허브센터 182,476 -마을기업육성 25,000 -협동조합 설립육성 31,197	-기업 청년인턴 지원 190,572 -일자리 박람회 23,915 -고용촉진기반구축(구인구직업무 지원,일자리프러스센터) 10,920 -일자리 개발(중장년재취업프로그램,취업사관학교 등) 29,625	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130,590 -주체발굴육성 55,740 -예비사회적기업육성 30,250 -마을기업 육성 25,600 -舊목5동청사운영 19,000 나. 건강한 일자리창출 370,2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경제연계사업 20,800</li> <li>-마을기업 육성 51,170(구 13,670)</li> <li>-협동조합 활성화 38,134 (1.예산의 5.6%)</li> <li>-공정무역 활성화 78,32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일자리창출 1,993,589</li> <li>-전통시장내 청년창업공간 30,000</li> <li>-위터파크 축제</li> <li>*사회적경제 직접예산 278,25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산업맞춤형사업 36,810</li> <li>-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123,551</li> <li>-마을기업 육성 101,100 (구 26,100)</li> <li>-협동조합 활성화 9,000</li> <li>-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21,0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복나눔추진단,회의수당,일자리플러스센터,취업박람회,지역산업맞춤형사업,일자리현장기동대,일자리오아시스,일자리알리미</li> <li>-청년인턴제 47,102</li> <li>-취업연계직업교육 52,668</li> <li>다. 일자리사업 1,894,392 (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새벽인력시장편의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179,570</li> <li>3. 공유경제 활성화 40,402</li> <li>4. 행정운영경비 220,299</li> <li>5. 재무활동 201,0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서민금융 안정 51,851</li> <li>3. 행정경비 74,8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2,270,528 (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대학생부업알선, 새벽인력시장관리)</li> <li>3.행정경비 70,99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지역경제활성화 1,496,460</li> <li>-중소기업지원및전통시장환경개선(공유센터 포함) 1,365,757</li> <li>3.행정운영경비 217,196</li> </ul>
협동조합 사업 및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동조합 발굴육성(성인지예산)] 38,134</li> <li>-사무관리비(회의수당,사무비,홍보물 제작 등) 1,134</li> <li>-협동조합 마을학교 운영 12,000</li> <li>-협동조합주간행사 5,000</li> <li>-업무추진비 3,000</li> <li>-설립및경영컨설팅 11,0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산수선센터 운영(인건비, 사무관리비) 22,757</li> <li>-협동조합 홍보물 2,000</li> <li>-협동조합 홍보`교육`설명회 4,140</li> <li>-관계자간담회 등 2,3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홍보물 제작 2,000</li> <li>-협동조합의날행사 2,000</li> <li>-업무추진비 1,000</li> <li>-협동조합 학교 3,000</li> <li>-협동조합 컨설팅 1,000(1개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동조합만은 따로 없음]</li> <li>-사회적경제 홍보물 제작 6,500</li> <li>-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수당 4,800</li> <li>-전국사회경제연대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지원 10,000</li> <li>-사회적경제아카데미 2,200</li> <li>-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 5,000</li> <li>-업무추진비 3,240</li> <li>-사회적경제교육 강사료 1,600</li> <li>-사회적경제활성화아이디어공모 2,000</li> <li>-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20,000</li> </ul>

## 사회적경제 관련 자치법규 조례

### ■ 1,000여개의 관련 조례

법제처(www.law.go.kr)의 자치법규에서 “사회적”, “마을”, “협동”, “공유경제” “도시재생” 등 관련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조례와 조례시행규칙 포함해 1,000여개의 관련 조례가 나왔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임에도 조사 과정에서 빠진 조례들도 있을거라 보기에 대략적인 분포로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사회적경제 전반, 부문별, 업종별로 나눠짐

1000여개의 조례는 다시금 ①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조례, ②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되는 각 부문에 대한 조례, ③ 도시재생, 사회주택, 학교협동조합 등 영역 내지 업종별 조례로 크게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리스트는 지면관계상 다 실지 못했고 파일로 자료실 등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세부사항	개수
사회적경제 전반	사회적가치	5
	사회적경제	122
	사회적경제기금	3
	사회적경제활동	2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32
	사회적공동체	2
	사회적자본	5
	공유경제	23
	<b>합계</b>	<b>194</b>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123
	마을교육공동체	4
	사회적기업	184
	자활	30
	자활기금	206
	협동조합	60
	<b>합계</b>	<b>607</b>
영역 내지 업종별	도시재생	144
	사회주택	2
	학교협동조합	4
	<b>합계</b>	<b>150</b>
<b>총합계</b>		<b>951</b>

### ■ 특이할만한점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는 조사한 항목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관련 조례(새마을장학금, 새마을기금)의 경우에도 이견이 있지만 포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광주와 안동에는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가 있고, 김해는 "사회적공동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또 대전, 부산, 제주에는 "사회적자본"에 대한 조례도 있습니다. 경기, 성동, 화성 등에는 사회적경제 기금 조례가 있었습니다.

순번	구분	법령명	지역명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부서
1	공유경제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일부개정	조례	제5658호	2017.8.7	2017.8.7	
2	공유경제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부산광역시	일부개정	조례	제5081호	2015.1.1	2015.1.1	
3	공유경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기장군	제정	조례	제902호	2016.6.10	2016.6.10	창조경제과
4	공유경제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남구	제정	조례	제1106호	2015.12.21	2016.1.1	경제진흥과
5	공유경제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동래구	제정	조례	제1229호	2017.11.3	2017.11.3	경제계
6	공유경제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북구	제정	조례	제1125호	2015.11.4	2015.12.5	경제진흥과
7	공유경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사상구	제정	조례	제818호	2016.11.24	2016.12.25	일자리경제과
8	공유경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사하구	제정	조례	제1081호	2016.9.23	2016.9.23	총무과
9	공유경제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서구	제정	조례	제1079호	2016.9.13	2016.9.13	생활지원과
10	공유경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영도구	제정	조례	제1114호	2016.1.7	2016.1.7	경제진흥과
11	공유경제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중구	제정	조례	제997호	2016.7.15	2016.7.15	경제진흥과
12	공유경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해운대구	제정	조례	제1115호	2014.12.30	2015.1.1	경제진흥과
13	공유경제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성남시	제정	조례	제2816호	2014.11.10	2014.11.10	일자리창출과
14	공유경제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제정	규칙	제1782호	2015.3.16	2015.3.16	일자리창출과
15	공유경제	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수원시	일부개정	조례	제3706호	2017.9.27	2017.9.27	지역경제팀
16	공유경제	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수원시	제정	규칙	제2050호	2017.8.25	2017.8.25	지역경제팀
17	공유경제	아산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아산시	제정	조례	제1720호	2017.12.15	2017.12.15	사회적경제과
18	공유경제	양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양산시	제정	조례	제1216호	2016.7.18	2016.7.18	경제기업과
19	공유경제	완주군 공유경제 촉진 조례	완주군	제정	조례	제2498호	2016.8.4	2016.8.4	
20	공유경제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인천광역시	제정	조례	제5917호	2017.12.29	2018.1.1	
21	공유경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일부개정	조례	제5708호	2016.9.29	2016.9.29	
22	공유경제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제정	조례	제4422호	2017.5.19	2017.5.19	
23	공유경제	전주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전주시	제정	조례	제3227호	2015.10.8	2016.1.1	사회적경제지원과
24	도시재생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북구	제정	조례	제1300호	2018.2.14	2018.2.14	도시재생과
25	도시재생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서구	제정	조례	제1000호	2017.3.31	2017.3.31	건축과
26	도시재생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금정구	제정	조례	제1152호	2016.2.26	2016.2.26	도시재생추진단
27	도시재생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구	제정	조례	제844호	2015.3.30	2015.3.30	도시재생추진단
28	도시재생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구	제정	조례	제968호	2014.11.20	2014.11.20	도시재생담당
29	도시재생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구	제정	조례	제809호	2015.4.17	2015.4.17	도시창조과
30	도시재생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구	제정	조례	제1478호	2018.4.2	2018.4.2	도시창생과
31	도시재생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달성군	제정	조례	제2356호	2015.9.30	2015.9.30	건축과
32	도시재생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릉시	제정	조례	제1085호	2015.6.24	2015.6.24	도시재생과
33	도시재생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도	제정	조례	제3847호	2015.5.1	2015.5.1	지역도시과
34	도시재생	강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화군	제정	조례	제2216호	2015.5.27	2015.5.27	도시개발과
35	도시재생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제시	제정	조례	제1518호	2017.4.24	2017.4.24	도시계획과
36	도시재생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일부개정	조례	제5808호	2018.1.11	2018.1.11	
37	도시재생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제정	규칙	제3677호	2015.8.7	2015.8.7	
38	도시재생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산시	제정	조례	제970호	2016.9.26	2016.9.26	도시과
39	도시재생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제정	조례	제3991호	2015.4.2	2015.4.2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40	도시재생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전부개정	조례	제4049호	2017.12.28	2017.12.28	
41	도시재생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주시	제정	조례	제1053호	2015.9.24	2015.9.24	도시디자인과
42	도시재생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	제정	조례	제1738호	2015.12.29	2015.12.29	도시재생과
43	도시재생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흥군	제정	조례	제2368호	2015.3.31	2015.3.31	건설과
44	도시재생	곡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곡성군	제정	조례	제2195호	2018.3.21	2018.3.21	지역활성화과
45	도시재생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주시	제정	조례	제990호	2015.5.15	2015.5.15	전략사업과
46	도시재생	과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과천시	제정	조례	제1530호	2017.12.29	2017.12.29	도시정책과
47	도시재생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시	제정	조례	제2312호	2017.11.10	2017.11.10	도시재생과
48	도시재생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일부개정	조례	제1550호	2017.12.27	2018.1.1	건설과
49	도시재생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	광주광역시	일부개정	조례	제4865호	2017.3.1	2017.3.1	도시재생정책과
50	도시재생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시	제정	조례	제832호	2016.7.15	2016.7.15	주택과
51	도시재생	구례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례군	제정	조례	제2058호	2015.4.27	2015.4.27	도시경제과
52	도시재생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제정	조례	제1198호	2016.11.16	2016.11.16	건축과
53	도시재생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제정	조례	제1167호	2014.12.16	2014.12.16	도시재생계
54	도시재생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군산시	제정	규칙	제588호	2015.6.15	2015.6.15	도시재생선도지역팀
55	도시재생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포시	제정	조례	제1437호	2016.12.12	2016.12.12	건축과
56	도시재생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천시	일부개정	조례	제1117호	2017.3.2	2017.3.2	균형개발사업단
57	도시재생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김포시	일부개정	조례	제1373호	2017.3.2	2017.3.2	도시개발과
58	도시재생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해시	일부개정	조례	제1284호	2017.12.22	2018.1.1	도시디자인과
59	도시재생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주시	제정	조례	제1107호	2015.1.6	2015.1.6	역사도시사업단
60	도시재생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제정	조례	제1342호	2016.3.10	2016.3.10	도시재정비과
61	도시재생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원시	제정	조례	제1192호	2015.9.25	2015.9.25	도시계획담당
62	도시재생	논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논산시	제정	조례	제1111호	2016.12.30	2016.12.30	도시주택과
63	도시재생	당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제정	조례	제408호	2014.12.29	2014.12.29	도시재생과
64	도시재생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달서구	일부개정	조례	제1144호	2016.5.23	2016.5.23	도시재생과
65	도시재생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일부개정	조례	제5024호	2017.10.18	2017.10.18	
66	도시재생	동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해시	제정	조례	제1838호	2016.3.15	2016.3.15	도시과
67	도시재생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목포시	제정	조례	제3130호	2017.7.13	2017.7.13	도시재생과
68	도시재생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	일부개정	조례	제2998호	2015.12.28	2015.12.28	도시재생과
69	도시재생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목포시	일부개정	규칙	제1726호	2017.4.24	2017.4.24	도시재생과
70	도시재생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경시	제정	조례	제1210호	2018.3.30	2018.3.30	도시과
71	도시재생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밀양시	제정	조례	제1005호	2015.9.24	2015.9.24	도시과(도시재생담당)
72	도시재생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령시	제정	조례	제1325호	2016.10.31	2016.10.31	도시과
73	도시재생	보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성군	제정	조례	제2076호	2014.5.9	2014.5.9	도시경관과
74	도시재생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일부개정	조례	제5380호	2016.7.13	2016.8.14	
75	도시재생	부여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여군	제정	조례	제2139호	2015.5.8	2015.5.8	도시건축과
76	도시재생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부천시	제정	조례	제2998호	2015.10.12	2015.10.12	원도심지원과
77	도시재생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천시	제정	조례	제1358호	2017.1.31	2017.1.31	도시과
78	도시재생	삼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삼척시	제정	조례	제1081호	2017.5.12	2017.5.12	도시과
79	도시재생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주시	제정	조례	제968호	2015.1.1	2015.1.1	도시과



80	도시재생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제정	조례	제1202호	2017.7.14	2017.7.14	도시과
81	도시재생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일부개정	조례	제6842호	2018.3.22	2018.3.22	재생정책과
82	도시재생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제정	규칙	제4097호	2016.6.2	2016.6.2	재생정책과
83	도시재생	서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천군	제정	조례	제2278호	2015.3.2	2015.3.2	도시건축과
84	도시재생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일부개정	조례	제3167호	2017.12.26	2017.12.26	도시재생정책과
85	도시재생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일부개정	규칙	제1874호	2018.3.21	2018.3.21	도시재생정책과
86	도시재생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제정	조례	제536호	2014.10.30	2014.10.30	청춘조치원과
87	도시재생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일부개정	조례	제3706호	2017.9.27	2017.9.27	도시재생팀
88	도시재생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순천시	일부개정	조례	제1880호	2018.3.26	2018.3.26	도시재생과
89	도시재생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순천시	제정	규칙	제698호	2014.12.23	2014.12.23	시민소통과
90	도시재생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	제정	조례	제1291호	2014.12.15	2014.12.15	개발정책과
91	도시재생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동시	제정	조례	제1022호	2015.6.11	2015.6.11	도시디자인과
92	도시재생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시	제정	조례	제2135호	2017.11.20	2017.11.20	.
93	도시재생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성시	제정	조례	제1425호	2017.12.22	2017.12.22	도시개발과
94	도시재생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안양시	일부개정	조례	제2807호	2017.3.6	2017.3.6	도시재생과
95	도시재생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주시	제정	조례	제1063호	2015.1.9	2015.1.9	도시재생과
96	도시재생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여주시	제정	규칙	제631호	2015.9.15	2015.9.15	도시재생과
97	도시재생	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주시	제정	조례	제917호	2014.12.30	2014.12.30	도시과
98	도시재생	영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천시	제정	조례	제748호	2015.7.28	2015.7.28	도시계획과
99	도시재생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군	제정	조례	제2163호	2014.12.1	2014.12.1	도시재생과
100	도시재생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용인시	제정	조례	제1606호	2016.10.12	2016.10.12	도시계획과
101	도시재생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일부개정	조례	제1794호	2017.12.28	2017.12.28	
102	도시재생	울산광역시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제정	조례	제766호	2016.5.19	2016.5.19	건축주택과
103	도시재생	울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진군	제정	조례	제2194호	2015.4.21	2015.4.21	도시새마을과
104	도시재생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원주시	일부개정	조례	제1639호	2017.10.11	2017.10.11	도시재생과
105	도시재생	의왕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왕시	제정	조례	제1437호	2015.7.3	2015.7.3	특구사업과
106	도시재생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제정	조례	제2790호	2017.8.3	2017.8.3	도시재생과
107	도시재생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익산시	제정	조례	제1425호	2015.2.27	2015.2.27	도시개발과
108	도시재생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일부개정	조례	제5722호	2016.11.14	2017.1.1	
109	도시재생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평구	제정	조례	제1384호	2015.11.11	2015.11.11	미래도시과
110	도시재생	전라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전부개정	조례	제4251호	2017.6.20	2017.6.20	지역계획과
111	도시재생	전라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일부개정	조례	제3979호	2015.5.1	2015.5.1	
112	도시재생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주시	제정	조례	제3149호	2014.12.30	2014.12.30	도시재생과
113	도시재생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선군	일부개정	조례	제2524호	2016.11.10	2016.11.10	도시건축과
114	도시재생	정읍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읍시	제정	조례	제1473호	2017.6.9	2017.6.9	도시과
115	도시재생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제정	조례	제1279호	2015.5.6	2015.5.6	도시재생과
116	도시재생	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천시	제정	조례	제1250호	2015.3.20	2015.3.20	건축디자인과
117	도시재생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주시	제정	조례	제1171호	2015.6.16	2015.6.16	균형개발과
118	도시재생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시	일부개정	조례	제878호	2016.5.9	2016.5.9	도시재생과(김명삼)
119	도시재생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천안시	일부개정	조례	제1615호	2017.2.1	2017.2.1	도시재생과
120	도시재생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청주시	일부개정	조례	제640호	2017.7.7	2017.7.7	도시재생과

121	도시재생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청주시	제정	규칙	제125호	2015.1.9	2015.1.9	도시재생과
122	도시재생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춘천시	일부개정	조례	제1283호	2017.8.17	2017.8.17	도시재생과
123	도시재생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춘천시	제정	규칙	제728호	2018.3.22	2018.3.22	도시재생과
124	도시재생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주시	일부개정	조례	제1411호	2016.8.12	2016.8.12	건축디자인과
125	도시재생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충주시	제정	규칙	제598호	2016.8.12	2016.8.12	건축디자인과
126	도시재생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일부개정	조례	제3955호	2015.2.23	2015.2.23	건축도시과
127	도시재생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제정	조례	제4126호	2018.1.11	2018.1.11	
128	도시재생	태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태백시	제정	조례	제1721호	2016.6.30	2016.6.30	도시건축과
129	도시재생	통영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통영시	제정	조례	제1287호	2017.9.22	2017.9.22	도시과
130	도시재생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파주시	제정	조례	제1340호	2016.12.23	2016.12.23	주택과
131	도시재생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택시	제정	조례	제1243호	2015.2.17	2015.2.17	도시재생과
132	도시재생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포천시	일부개정	조례	제987호	2017.7.4	2017.7.4	도시과
133	도시재생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포항시	전부개정	조례	제1470호	2017.5.2	2017.5.2	도시재생과
134	도시재생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하남시	제정	조례	제1495호	2017.10.13	2017.10.13	주택과
135	도시재생	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함평군	일부개정	조례	제2375호	2017.9.28	2017.9.28	전략경영과
136	도시재생	해남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남군	제정	조례	제2693호	2017.12.26	2017.12.26	지역개발과
137	도시재생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홍성군	제정	조례	제2180호	2015.5.6	2015.5.6	도시건축과 지역계획
138	도시재생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일부개정	조례	제5722호	2016.11.14	2017.1.1	
139	도시재생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일부개정	조례	제6594호	2017.7.13	2017.7.13	재생정책과
140	도시재생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남구	제정	조례	제1038호	2010.10.4	2010.10.4	도시창생과
141	도시재생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흥시	전부개정	조례	제1493호	2015.11.11	2015.11.11	도시경비과
142	도시재생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경기도	제정	조례	제5745호	2017.11.13	2017.11.13	
143	도시재생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일부개정	조례	제5084호	2018.2.28	2018.2.28	도시재생과
144	도시재생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동구	제정	조례	제967호	2015.1.1	2015.1.1	도시재생과
145	도시재생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제정	조례	제1047호	2015.5.29	2015.5.29	도시재생과
146	도시재생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동구	제정	규칙	제710호	2015.5.29	2015.5.29	도시재생과
147	도시재생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일부개정	조례	제1204호	2017.11.20	2017.11.20	도시과
148	도시재생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동구	제정	조례	제993호	2015.10.13	2015.10.13	창조도시추진단
149	도시재생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제정	조례	제1005호	2015.10.16	2015.10.16	도시재생과
150	도시재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진구	제정	조례	제1198호	2018.2.6	2018.2.6	미래도시재생담당
151	도시재생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제정	조례	제1189호	2015.7.1	2015.7.1	도시재생과
152	도시재생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제정	조례	제1105호	2015.4.30	2015.4.30	도시경관과
153	도시재생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제정	조례	제817호	2015.5.18	2015.5.18	도시행정과
154	도시재생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	제정	조례	제1176호	2015.7.1	2015.7.1	주거환경개선
155	도시재생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	제정	조례	제959호	2015.6.10	2015.6.10	도시재생과
156	도시재생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	제정	조례	제1035호	2015.10.1	2015.10.1	창조도시과
157	도시재생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	제정	조례	제1496호	2016.9.23	2016.9.23	도시재생경관과
158	도시재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제정	조례	제1090호	2015.11.4	2015.11.4	지역활성화과
159	도시재생	대구광역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수성구	일부개정	조례	제1002호	2014.12.30	2015.1.1	도시디자인과
160	도시재생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영도구	제정	조례	제1226호	2017.12.29	2017.12.29	도시재생추진단
161	도시재생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주군	제정	조례	제842호	2015.5.14	2015.5.14	건축과

162	도시재생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조례	은평구	제정	조례	제906호	2012.3.15	2012.3.15	주거재생과 주거개성팀
163	도시재생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	제정	조례	제963호	2015.3.20	2015.3.20	도시경관과
164	도시재생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	일부개정	조례	제1004호	2016.7.15	2016.7.15	창조도시과
165	도시재생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	일부개정	조례	제779호	2015.12.31	2015.12.31	문화관광실
166	도시재생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	제정	조례	제1260호	2017.10.31	2017.10.31	건축과
167	도시재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	해운대구	일부개정	조례	제1307호	2018.2.22	2018.2.22	일자리창출과
168	마을공동체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가평군	전부개정	조례	제2617호	2017.5.15	2017.5.15	기획감사실
169	마을공동체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강원도	일부개정	조례	제4235호	2017.12.29	2017.12.29	
170	마을공동체	고성군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고성군	제정	조례	제2382호	2017.9.25	2017.9.25	자치행정과
171	마을공동체	고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고창군	제정	조례	제2295호	2016.12.30	2016.12.30	농업진흥과
172	마을공동체	곡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곡성군	제정	조례	제2102호	2016.11.30	2016.11.30	지역활성화과
173	마을공동체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공주시	일부개정	조례	제1103호	2016.12.15	2016.12.15	창조도시과
174	마을공동체	과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과천시	제정	조례	제1261호	2013.8.2	2013.8.2	
175	마을공동체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광명시	전부개정	조례	제2307호	2017.11.10	2017.11.10	일자리창출과
176	마을공동체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일부개정	조례	제1500호	2017.6.2	2017.6.2	전략정책담당관
177	마을공동체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광산구	일부개정	조례	제1155호	2014.12.31	2014.12.31	주민자치과
178	마을공동체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서구	일부개정	조례	제1270호	2016.10.10	2016.10.10	마을만들기
179	마을공동체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광주시	제정	조례	제768호	2015.10.12	2015.10.12	주택과
180	마을공동체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광주시	제정	규칙	제304호	2015.10.26	2015.10.26	주택과
181	마을공동체	군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군포시	제정	조례	제1426호	2016.12.12	2016.12.12	자치행정과
182	마을공동체	김해시 마을만들기 지원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김해시	제정	조례	제1291호	2018.2.9	2018.2.9	건설과
183	마을공동체	대구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동구	일부개정	조례	제1132호	2016.11.30	2016.11.30	행정지원과
184	마을공동체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제정	조례	제4526호	2013.11.11	2013.11.11	
185	마을공동체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대덕구	제정	조례	제1179호	2016.12.16	2016.12.16	자치행정과
186	마을공동체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동구	제정	조례	제1278호	2018.3.14	2018.3.14	경제과
187	마을공동체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유성구	일부개정	조례	제1337호	2017.12.22	2017.12.22	일자리추진단
188	마을공동체	무안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무안군	일부개정	조례	제2155호	2015.1.5	2015.1.5	지역개발과
189	마을공동체	무주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무주군	제정	조례	제2232호	2017.7.7	2017.7.7	마을만들기사업소
190	마을공동체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보령시	제정	조례	제1256호	2015.12.30	2015.12.30	건설과
191	마을공동체	보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보성군	제정	조례	제2253호	2017.3.21	2017.3.21	총무과
192	마을공동체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강서구	일부개정	조례	제890호	2015.1.1	2015.1.1	건축과
193	마을공동체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기장군	제정	조례	제962호	2017.9.29	2017.9.29	행정지원과
194	마을공동체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전부개정	조례	제5380호	2016.7.13	2016.8.14	
195	마을공동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진구	제정	조례	제1198호	2018.2.6	2018.2.6	미래도시재생담당
196	마을공동체	부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북구	일부개정	조례	제1034호	2013.9.25	2013.10.1	창조도시과
197	마을공동체	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사상구	일부개정	조례	제822호	2016.12.29	2016.12.29	창조도시재생과
198	마을공동체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사하구	일부개정	조례	제993호	2015.7.10	2015.7.10	창조도시기획단
199	마을공동체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하구	일부개정	규칙	제763호	2015.9.24	2015.9.24	창조도시기획단
200	마을공동체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	제정	조례	제1035호	2015.10.1	2015.10.1	창조도시과
201	마을공동체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영도구	일부개정	조례	제1147호	2016.10.13	2016.10.13	건축과
202	마을공동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	해운대구	일부개정	조례	제1307호	2018.2.22	2018.2.22	일자리창출과

203	마을공동체	부여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부여군	제정	조례	제2420호	2018.2.12	2018.2.12	건설과
204	마을공동체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부천시	일부개정	조례	제3215호	2017.7.10	2017.7.10	원도심지원과
205	마을공동체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사천시	제정	조례	제1235호	2015.12.3	2015.12.3	기획예산담당관
206	마을공동체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강남구	제정	조례	제1100호	2012.9.28	2012.9.28	자치행정과
207	마을공동체	서울특별시 강동구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강동구	일부개정	조례	제1123호	2014.12.17	2015.1.1	사회적경제과
208	마을공동체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강북구	제정	조례	제883호	2012.7.27	2012.7.27	자치행정과
209	마을공동체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강서구	제정	조례	제924호	2012.10.10	2012.10.10	자치안전과
210	마을공동체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관악구	전부개정	조례	제943호	2012.8.16	2012.8.16	주민협치과
211	마을공동체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광진구	제정	조례	제771호	2012.11.23	2012.11.23	마을공동체 지원팀
212	마을공동체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구로구	제정	조례	제1015호	2012.10.11	2012.10.11	자치안전과
213	마을공동체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금천구	제정	조례	제718호	2012.9.28	2012.9.28	마을자치과
214	마을공동체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노원구	제정	조례	제1003호	2012.6.28	2012.6.28	자치행정과
215	마을공동체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도봉구	일부개정	조례	제1248호	2017.11.2	2017.11.2	마을공동체과
216	마을공동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	일부개정	조례	제1157호	2017.3.30	2017.3.30	도시전략과
217	마을공동체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동작구	제정	조례	제1100호	2012.8.2	2012.8.2	사회적마을과
218	마을공동체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타법개정	조례	제6851호	2018.3.22	2018.3.22	지역공동체담당관
219	마을공동체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제정	규칙	제3935호	2013.11.14	2013.11.14	지역공동체담당관
220	마을공동체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마포구	전부개정	조례	제875호	2012.9.27	2012.9.27	자치행정과
221	마을공동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일부개정	조례	제1056호	2014.12.31	2015.1.1	자치행정과
222	마을공동체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초구	일부개정	조례	제1077호	2016.12.29	2016.12.29	자치행정과
223	마을공동체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성동구	제정	조례	제924호	2012.5.31	2012.5.31	마을공동체과
224	마을공동체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성북구	일부개정	조례	제1103호	2016.3.1	2016.3.1	마을담당관
225	마을공동체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송파구	제정	조례	제1155호	2012.10.22	2012.10.22	자치행정과
226	마을공동체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양천구	일부개정	조례	제1182호	2015.6.19	2015.7.1	자치행정과(주민자치팀)
227	마을공동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제정	조례	제908호	2012.11.1	2012.11.1	자치행정과
228	마을공동체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용산구	일부개정	조례	제1150호	2016.5.9	2016.5.9	자치행정과
229	마을공동체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은평구	일부개정	조례	제1158호	2017.4.27	2017.7.1	민원청과 협치공동체팀
230	마을공동체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종로구	일부개정	조례	제1000호	2013.9.27	2013.9.27	주민공동체지원팀
231	마을공동체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랑구	일부개정	조례	제1037호	2014.12.26	2015.1.1	자치행정과
232	마을공동체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성남시	제정	조례	제2909호	2015.10.12	2015.10.12	자치행정과
233	마을공동체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일부개정	조례	제837호	2016.4.20	2016.4.20	지역공동체과
234	마을공동체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수원시	일부개정	조례	제3749호	2018.1.8	2018.1.8	마을만들기팀
235	마을공동체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시행규칙	수원시	제정	규칙	제1933호	2013.6.28	2013.6.28	마을만들기추진단
236	마을공동체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순천시	전부개정	조례	제1692호	2016.11.10	2016.11.10	시민소통과
237	마을공동체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순천시	일부개정	규칙	제773호	2017.3.21	2017.3.21	시민소통과
238	마을공동체	아산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아산시	일부개정	조례	제1544호	2016.9.19	2016.9.19	사회적경제과
239	마을공동체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안산시	전부개정	조례	제2034호	2016.11.22	2016.11.22	자치행정과
240	마을공동체	안성시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안성시	제정	조례	제1195호	2015.12.21	2015.12.21	교육체육과
241	마을공동체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안양시	일부개정	조례	제2704호	2016.1.6	2016.1.6	도시재생정책관
242	마을공동체	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	양주시	일부개정	조례	제727호	2015.4.6	2015.4.6	일자리정책팀
243	마을공동체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여주시	제정	조례	제497호	2016.10.31	2016.10.31	전략사업과

244	마을공동체	여주시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여주시	제정	조례	제496호	2016.10.31	2016.10.31	전략사업과
245	마을공동체	영동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영동군	제정	조례	제2627호	2017.10.30	2017.10.30	농촌개발팀
246	마을공동체	영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영양군	일부개정	조례	제1997호	2015.3.13	2015.3.13	새마을경제과
247	마을공동체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예산군	제정	조례	제2304호	2016.7.15	2016.7.15	건설교통과
248	마을공동체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예산군	제정	조례	제2304호	2016.7.15	2016.7.15	건설교통과
249	마을공동체	용진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용진군	일부개정	조례	제2259호	2018.3.28	2018.3.28	행정자치과 인재육성팀
250	마을공동체	완도군 희망완도 행복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완도군	제정	조례	제2347호	2016.7.20	2016.7.20	기획예산실
251	마을공동체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용인시	제정	조례	제1440호	2015.4.13	2015.4.13	자치협력과
252	마을공동체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제정	조례	제1801호	2017.12.28	2017.12.28	
253	마을공동체	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울주군	제정	조례	제912호	2016.3.31	2016.3.31	총무과
254	마을공동체	울산광역시동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동구	제정	조례	제607호	2012.12.13	2012.12.13	자치행정과
255	마을공동체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원주시	제정	조례	제1543호	2016.7.15	2016.7.15	자치행정과
256	마을공동체	음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음성군	제정	조례	제2431호	2018.3.26	2018.3.26	자치행정과
257	마을공동체	의령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의령군	제정	조례	제2221호	2017.12.20	2017.12.20	기획감사실
258	마을공동체	이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이천시	제정	조례	제1286호	2016.12.30	2016.12.30	평생교육과
259	마을공동체	인천광역시 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남구	일부개정	조례	제1381호	2017.1.2	2017.1.2	지혜로운시민실
260	마을공동체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남동구	일부개정	조례	제1423호	2017.8.8	2017.8.8	위민행정과
261	마을공동체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남동구	일부개정	조례	제1423호	2017.8.8	2017.8.8	위민행정과
262	마을공동체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일부개정	조례	제5881호	2017.11.13	2017.11.13	
263	마을공동체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서구	제정	조례	제1502호	2016.12.23	2016.12.23	총무과
264	마을공동체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구	일부개정	조례	제1195호	2016.3.7	2016.3.7	경제정책과
265	마을공동체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동구	일부개정	조례	제1053호	2016.11.1	2016.11.1	자치행정과
266	마을공동체	인천광역시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부평구	일부개정	조례	제1562호	2018.1.2	2018.1.2	일자리기획과
267	마을공동체	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연수구	일부개정	조례	제880호	2015.4.14	2015.4.14	총무과
268	마을공동체	장수군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장수군	제정	조례	제2212호	2016.12.27	2016.12.27	농업정책과
269	마을공동체	장흥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장흥군	제정	조례	제2353호	2017.12.29	2017.12.29	경제정책과
270	마을공동체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일부개정	조례	제4270호	2017.7.6	2017.7.6	자치행정과
271	마을공동체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라남도	제정	규칙	제3119호	2017.5.18	2017.5.18	자치행정과
272	마을공동체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라북도	일부개정	조례	제4327호	2016.9.30	2016.9.30	
273	마을공동체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전주시	일부개정	조례	제3248호	2015.12.30	2015.12.30	공동체육성과
274	마을공동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전부개정	조례	제1366호	2015.10.6	2015.10.6	지역공동체발전과
275	마을공동체	증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증평군	제정	조례	제771호	2017.11.3	2017.11.3	경제과
276	마을공동체	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진도군	제정	조례	제2238호	2016.11.29	2016.11.29	행정과
277	마을공동체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진안군	일부개정	조례	제2328호	2017.12.29	2017.12.29	전략사업실
278	마을공동체	천안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천안시	일부개정	조례	제1617호	2017.4.10	2017.4.10	지역경제과
279	마을공동체	철원군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철원군	제정	조례	제2394호	2017.7.26	2017.7.26	지역공동체
280	마을공동체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청양군	제정	조례	제2150호	2017.7.13	2017.7.13	농촌개발팀
281	마을공동체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청주시	제정	조례	제750호	2018.3.30	2018.3.30	행정지원과
282	마을공동체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충청북도	제정	조례	제3991호	2016.12.30	2016.12.30	
283	마을공동체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파주시	제정	조례	제1292호	2016.9.23	2016.9.23	기획예산관
284	마을공동체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평택시	일부개정	조례	제1364호	2016.7.28	2016.7.28	일자리경제과

285	마을공동체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평택시	제정	규칙	제592호	2014.4.21	2014.4.21	일자리경제과
286	마을공동체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함안군	일부개정	조례	제2387호	2017.12.20	2017.12.20	미래전략담당
287	마을공동체	함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함평군	제정	조례	제2293호	2016.11.16	2016.11.16	총무과
288	마을공동체	홍천군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홍천군	일부개정	조례	제2331호	2014.11.3	2014.11.3	농업정책과
289	마을공동체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화성시	일부개정	조례	제1006호	2015.6.26	2015.6.26	사회적공동체담당관
290	마을공동체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화순군	일부개정	조례	제2576호	2017.12.29	2017.12.29	총무과
291	마을교육공동체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제정	조례	제5078호	2015.11.4	2015.11.4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292	마을교육공동체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제정	조례	제4523호	2015.5.15	2015.5.15	혁신교육과
293	마을교육공동체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제정	조례	제5630호	2017.8.9	2017.8.9	교육정책과
294	마을교육공동체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부개정	조례	제1138호	2018.2.12	2018.2.12	학교혁신과
295	사회적가치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	경기도	제정	조례	제5291호	2016.7.19	2017.1.20	
296	사회적가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조례	광산구	제정	조례	제1300호	2016.12.29	2016.12.29	회계전산과
297	사회적가치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타법개정	조례	제6851호	2018.3.22	2018.3.22	재무과
298	사회적가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성북구	일부개정	조례	제1103호	2016.3.1	2016.3.1	사회적경제과
299	사회적가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일부개정	조례	제2009호	2018.2.28	2018.2.28	총무과
300	사회적경제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릉시	일부개정	조례	제1241호	2017.12.20	2017.12.20	경제진흥과
301	사회적경제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도	일부개정	조례	제4235호	2017.12.29	2017.12.29	
302	사회적경제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강원도	일부개정	규칙	제3085호	2017.9.29	2017.9.29	
303	사회적경제	강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진군	제정	조례	제2265호	2015.11.5	2015.11.5	지역개발과
304	사회적경제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전부개정	조례	제5007호	2015.10.13	2015.10.13	떡볶이공동체지원과
305	사회적경제	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산시	제정	조례	제1050호	2017.12.14	2017.12.14	일자리경제과
306	사회적경제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제정	조례	제3907호	2017.4.17	2017.4.17	
307	사회적경제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제정	규칙	제2891호	2018.3.8	2018.3.8	
308	사회적경제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	일부개정	조례	제1638호	2015.1.9	2015.1.9	일자리창출과
309	사회적경제	곡성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곡성군	제정	조례	제2119호	2017.1.9	2017.1.9	경제과
310	사회적경제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과천시	제정	조례	제1496호	2017.6.30	2017.6.30	주민생활지원실
311	사회적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광산구	일부개정	조례	제1319호	2017.6.9	2017.6.9	사회경제과
312	사회적경제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남구	일부개정	조례	제1019호	2017.12.29	2017.12.29	지역경제순환과
313	사회적경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일부개정	조례	제1215호	2017.11.24	2017.11.24	경제과
314	사회적경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일부개정	조례	제1417호	2017.12.29	2017.12.29	기업지원과
315	사회적경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	일부개정	조례	제1347호	2018.2.9	2018.2.9	사회적경제
316	사회적경제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부개정	조례	제5007호	2017.12.15	2018.1.1	교육자치과
317	사회적경제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부개정	조례	제5007호	2017.12.15	2018.1.1	교육자치과
318	사회적경제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시	일부개정	조례	제879호	2017.6.1	2017.6.1	일자리경제과
319	사회적경제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일부개정	조례	제1447호	2016.8.1	2016.8.1	고용복지과
320	사회적경제	군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위군	제정	조례	제1946호	2018.3.29	2018.3.29	일자리공동체
321	사회적경제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군포시	일부개정	조례	제1467호	2017.7.11	2017.7.11	일자리정책과
322	사회적경제	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천시	제정	조례	제1151호	2017.12.28	2017.12.28	일자리투자과
323	사회적경제	김포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김포시	제정	조례	제1333호	2016.10.31	2016.10.31	경제진흥과
324	사회적경제	나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나주시	일부개정	조례	제1406호	2018.3.9	2018.3.9	일자리정책실
325	사회적경제	담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담양군	제정	조례	제2167호	2014.12.29	2014.12.29	지역경제과

326	사회적경제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달성군	제정	조례	제2445호	2016.9.30	2016.9.30	경제과
327	사회적경제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제정	조례	제4766호	2015.9.30	2015.9.30	
328	사회적경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달서구	제정	조례	제1293호	2018.2.12	2018.2.12	일자리경제과
329	사회적경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유성구	일부개정	조례	제1336호	2017.12.22	2017.12.22	일자리추진단
330	사회적경제	동두천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일부개정	조례	제1981호	2018.1.8	2018.1.8	지역경제과
331	사회적경제	동해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해시	제정	조례	제1925호	2017.12.15	2017.12.15	경제과
332	사회적경제	무안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무안군	제정	조례	제2311호	2017.10.16	2017.10.16	허가경제과 일자리담당
333	사회적경제	보령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령시	전부개정	조례	제1140호	2015.4.10	2015.4.10	지역경제과
334	사회적경제	보성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보성군	제정	조례	제2355호	2018.1.31	2018.1.31	경제산업과
335	사회적경제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제정	조례	제5465호	2016.11.2	2016.12.3	
336	사회적경제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연제구	제정	조례	제789호	2017.10.10	2017.11.11	경제진흥과
337	사회적경제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부천시	일부개정	조례	제3138호	2016.11.21	2016.11.21	일자리경제과
338	사회적경제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부천시	일부개정	규칙	제1880호	2017.3.13	2017.3.13	일자리경제과
339	사회적경제	삼척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삼척시	제정	조례	제1031호	2016.7.22	2016.7.22	지역경제과
340	사회적경제	서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전부개정	조례	제1212호	2017.7.28	2017.7.28	일자리정책과
341	사회적경제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동구	일부개정	조례	제1213호	2016.5.4	2016.5.4	사회적경제과
342	사회적경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북구	일부개정	조례	제1275호	2017.11.17	2017.12.7	일자리경제과
343	사회적경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서구	전부개정	조례	제1162호	2017.11.8	2017.11.8	일자리경제과
344	사회적경제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구로구	제정	조례	제1141호	2015.10.1	2015.10.1	일자리지원과
345	사회적경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금천구	일부개정	조례	제965호	2018.2.27	2018.2.27	지역혁신과
346	사회적경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도봉구	일부개정	조례	제1249호	2017.11.2	2017.11.2	마을공동체과
347	사회적경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	제정	조례	제1199호	2017.11.16	2017.11.16	일자리창출과
348	사회적경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동작구	일부개정	조례	제1367호	2017.12.21	2017.12.21	사회적마을과
349	사회적경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일부개정	조례	제6061호	2016.1.7	2016.1.7	사회적경제담당관
350	사회적경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서대문구	제정	조례	제1083호	2015.10.1	2015.10.1	일자리경제과
351	사회적경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성동구	일부개정	조례	제1252호	2017.11.23	2017.12.1	일자리정책과
352	사회적경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일부개정	조례	제1187호	2017.10.19	2017.10.19	일자리정책과
353	사회적경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영등포구	일부개정	규칙	제692호	2015.12.28	2015.12.28	일자리정책과
354	사회적경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칙	영등포구	제정	규칙	제671호	2015.3.26	2015.3.26	일자리정책과
355	사회적경제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산구	일부개정	조례	제1236호	2018.3.2	2018.3.2	일자리경제과
356	사회적경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은평구	일부개정	조례	제1158호	2017.4.27	2017.7.1	사회적경제과
357	사회적경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종로구	제정	조례	제1172호	2016.6.17	2016.6.17	사회적경제팀
358	사회적경제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일부개정	조례	제2930호	2015.11.11	2015.11.11	고용노동과
359	사회적경제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일부개정	규칙	제1862호	2017.12.5	2017.12.5	고용노동과
360	사회적경제	성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주군	제정	조례	제2222호	2017.12.14	2017.12.14	경제교통과
361	사회적경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전부개정	조례	제1051호	2017.9.29	2017.9.29	지역공동체과
362	사회적경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세종특별자치시	전부개정	규칙	제199호	2017.9.29	2017.9.29	지역공동체과
363	사회적경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제정	조례	제830호	2016.3.14	2016.3.14	학교혁신과
364	사회적경제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일부개정	조례	제3706호	2017.9.27	2017.9.27	사회적경제팀
365	사회적경제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순천시	일부개정	조례	제1692호	2016.11.10	2016.11.10	시민소통과
366	사회적경제	시흥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일부개정	조례	제1533호	2016.3.15	2016.3.15	지역공동체과

367	사회적경제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	일부개정	조례	제1739호	2018.3.15	2018.3.15	사회적경제과
368	사회적경제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시	제정	조례	제1929호	2015.10.19	2015.10.19	일자리정책과
369	사회적경제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안성시	제정	조례	제1231호	2016.5.17	2016.5.17	창조경제과
370	사회적경제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일부개정	조례	제2884호	2017.11.16	2017.12.31	경제정책과
371	사회적경제	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주시	제정	조례	제810호	2015.12.31	2015.12.31	사회적경제팀
372	사회적경제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양평군	일부개정	조례	제2547호	2018.3.12	2018.3.12	전략기획과
373	사회적경제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여주시	제정	조례	제1146호	2015.11.10	2015.11.10	지역경제과
374	사회적경제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주시	제정	조례	제607호	2017.9.27	2017.9.27	지역경제과
375	사회적경제	영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광군	제정	조례	제2403호	2017.6.30	2017.6.30	투자경제과
376	사회적경제	영덕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덕군	제정	조례	제2018호	2017.12.31	2017.12.31	새마을경제과
377	사회적경제	영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천시	제정	조례	제871호	2017.12.29	2017.12.29	일자리경제과
378	사회적경제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오산시	일부개정	조례	제1509호	2016.9.29	2016.9.29	지역경제과
379	사회적경제	웅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웅진군	일부개정	조례	제2259호	2018.3.28	2018.3.28	일자리정책과 경제발전팀
380	사회적경제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일부개정	조례	제2609호	2017.12.21	2017.12.21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
381	사회적경제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일부개정	조례	제1713호	2017.10.2	2017.10.2	일자리정책과
382	사회적경제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남구	일부개정	조례	제968호	2017.9.29	2017.9.29	일자리정책과
383	사회적경제	울산광역시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일부개정	조례	제875호	2017.10.26	2017.10.26	경제진흥과
384	사회적경제	의정부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제정	조례	제2799호	2017.9.29	2017.9.29	자치행정과
385	사회적경제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익산시	일부개정	조례	제1664호	2017.4.14	2017.4.14	민생경제과
386	사회적경제	인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제군	일부개정	조례	제2197호	2014.12.26	2015.1.1	지역경제과
387	사회적경제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계양구	제정	조례	제1134호	2018.3.23	2018.3.23	지역경제과
388	사회적경제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계양구	제정	조례	제1134호	2018.3.23	2018.3.23	지역경제과
389	사회적경제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남구	일부개정	조례	제1379호	2016.12.30	2016.12.30	일자리정책추진단
390	사회적경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일부개정	조례	제1377호	2016.12.23	2016.12.23	일자리정책과
391	사회적경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남동구	제정	규칙	제882호	2015.4.17	2015.4.17	일자리정책과
392	사회적경제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일부개정	조례	제5809호	2017.6.5	2017.6.5	
393	사회적경제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전부개정	규칙	제2893호	2014.6.2	2014.6.2	
394	사회적경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	전부개정	조례	제1487호	2016.7.8	2016.7.8	일자리지원과
395	사회적경제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	전부개정	조례	제1259호	2017.10.31	2017.10.31	경제정책과
396	사회적경제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남구	일부개정	규칙	제798호	2014.4.28	2014.4.28	일자리정책추진단
397	사회적경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평구	일부개정	조례	제1536호	2017.9.25	2017.9.25	일자리기획과
398	사회적경제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연수구	전부개정	조례	제956호	2016.7.12	2016.7.12	일자리정책과
399	사회적경제	장성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장성군	전부개정	조례	제2257호	2017.7.10	2017.7.10	고용투자정책과
400	사회적경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일부개정	조례	제4424호	2017.9.28	2017.9.28	일자리정책실
401	사회적경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라남도	제정	규칙	제3066호	2015.6.25	2015.6.25	일자리정책실
402	사회적경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전주시	일부개정	조례	제3301호	2016.5.13	2016.5.13	사회적경제지원과
403	사회적경제	정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정성군	일부개정	조례	제2567호	2017.4.17	2017.4.17	지역경제과
404	사회적경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일부개정	조례	제1781호	2016.12.30	2016.12.30	경제발전정책과
405	사회적경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제정	규칙	제448호	2015.6.3	2015.6.3	경제정책과
406	사회적경제	제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천시	제정	조례	제1321호	2015.12.31	2015.12.31	일자리정책팀
407	사회적경제	진도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진도군	제정	조례	제2301호	2017.12.27	2017.12.27	지역개발과



408	사회적경제	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천안시	일부개정	조례	제1617호	2017.4.10	2017.4.10	일자리창출과
409	사회적경제	철원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철원군	제정	조례	제2320호	2015.12.30	2015.12.30	경제활성화담당
410	사회적경제	청송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송군	제정	조례	제2027호	2017.12.31	2017.12.31	미래전략과
411	사회적경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일부개정	조례	제4136호	2016.6.8	2016.6.8	
412	사회적경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일부개정	규칙	제3239호	2015.4.30	2015.4.30	경제정책과
413	사회적경제	칠곡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칠곡군	제정	조례	제2415호	2017.9.29	2017.9.29	사회복지과
414	사회적경제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택시	제정	조례	제1364호	2016.7.28	2016.7.28	일자리경제과
415	사회적경제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포천시	일부개정	조례	제1037호	2017.11.8	2017.11.8	지역경제과
416	사회적경제	포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포항시	제정	조례	제1536호	2017.12.27	2017.12.27	일자리경제노동과
417	사회적경제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하남시	일부개정	조례	제1490호	2017.10.13	2017.10.13	희망경제과
418	사회적경제	해남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남군	제정	조례	제2673호	2017.8.28	2017.8.28	지역개발과
419	사회적경제	홍천군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홍천군	제정	조례	제2382호	2015.7.30	2015.7.30	경제협력과
420	사회적경제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일부개정	조례	제1208호	2017.6.22	2017.6.22	사회적공동체과
421	사회적경제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화순군	일부개정	조례	제2576호	2017.12.29	2017.12.29	산업경제과
422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일부개정	조례	제4018호	2017.12.28	2017.12.28	재무정보과
423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고양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	제정	조례	제1917호	2017.11.14	2017.11.14	일자리창출과
424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시	일부개정	조례	제2264호	2017.6.20	2017.6.20	일자리창출과
425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제정	조례	제4971호	2017.11.1	2017.11.1	일자리정책과
426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	일부개정	조례	제1347호	2018.2.9	2018.2.9	사회적경제팀
427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김포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김포시	제정	조례	제1144호	2014.10.10	2014.10.10	경제진흥과
428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남양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의 구매촉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일부개정	조례	제1490호	2017.11.9	2017.11.9	경제에너지정책과
429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제품 우선 구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제정	조례	제1158호	2016.5.19	2016.5.19	경제과
430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대전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제정	조례	제4499호	2015.8.14	2015.8.14	재정과
431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서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제정	조례	제1242호	2018.1.25	2018.1.25	일자리경제과
432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구로구	제정	조례	제1252호	2017.5.11	2017.5.11	일자리지원과
433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도봉구	제정	조례	제1004호	2013.6.13	2013.6.13	마을공동체과
434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마포구	제정	조례	제975호	2014.10.16	2014.10.16	일자리경제과
435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일부개정	조례	제5966호	2015.7.30	2015.7.30	사회적경제담당관
436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제정	조례	제1089호	2015.11.4	2015.11.4	일자리경제과
437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성북구	일부개정	조례	제1022호	2014.12.26	2014.12.26	사회적경제과
438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성북구	제정	규칙	제577호	2012.10.12	2012.10.12	사회적경제과
439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제정	조례	제5778호	2014.12.30	2014.12.30	교육재정과
440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서천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서천군	제정	조례	제2441호	2017.2.28	2017.2.28	지역경제과
441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타법개정	조례	제830호	2016.3.14	2016.3.14	재무과
442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아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	일부개정	조례	제1742호	2018.3.15	2018.3.15	사회적경제과
443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오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오산시	일부개정	조례	제1482호	2016.4.28	2016.4.28	지역경제과
444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완주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제정	조례	제2199호	2013.4.25	2013.4.25	농축협과 사회연대경제
445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인제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인제군	제정	조례	제2365호	2017.7.14	2017.7.14	경제협력과
446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제정	조례	제5774호	2017.3.6	2017.3.6	
447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일부개정	조례	제4606호	2017.12.28	2017.12.28	일자리정책실
448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전라남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일부개정	조례	제4570호	2017.12.28	2017.12.28	재무과

449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전라남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일부개정	조례	제4570호	2017.12.28	2017.12.28	재무과
450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정	조례	제1605호	2016.4.8	2016.4.8	교육재정과
451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천안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천안시	제정	조례	제1549호	2016.7.1	2016.7.1	지역경제과
452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제정	조례	제4141호	2016.6.10	2016.6.10	
453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충청남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제정	조례	제3893호	2014.3.20	2014.3.20	재무과
454	사회적경제기금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일부개정	조례	제5778호	2017.12.29	2017.12.29	
455	사회적경제기금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성동구	일부개정	조례	제1252호	2017.11.23	2017.12.1	일자리정책과
456	사회적경제기금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화성시	일부개정	조례	제999호	2015.6.10	2015.6.10	사회적공동체담당관
457	사회적경제활동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일부개정	조례	제4790호	2016.11.15	2016.11.15	일자리정책과
458	사회적경제활동	안동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안동시	일부개정	조례	제1282호	2017.11.17	2017.11.17	일자리경제과
459	사회적공동체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김해시	제정	조례	제1272호	2017.12.22	2017.12.22	일자리정책과
460	사회적공동체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김해시	제정	규칙	제609호	2017.12.22	2017.12.22	일자리정책과
461	사회적기업	가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평군	일부개정	조례	제2382호	2014.12.31	2014.12.31	경제과
462	사회적기업	강화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화군	제정	조례	제2033호	2011.3.2	2011.3.2	
463	사회적기업	거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거제시	일부개정	조례	제1401호	2016.9.27	2016.9.27	조선해양플랜트과
464	사회적기업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창군	일부개정	조례	제2328호	2016.7.20	2016.7.20	경제교통과
465	사회적기업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거창군	제정	규칙	제1064호	2010.8.13	2010.8.13	경제과
466	사회적기업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일부개정	규칙	제3641호	2014.9.25	2014.10.2	떡볶이공동체지원과
467	사회적기업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일부개정	조례	제5134호	2016.1.4	2016.1.4	재무담당관
468	사회적기업	경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산시	일부개정	조례	제913호	2015.6.8	2015.6.8	일자리경제과
469	사회적기업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일부개정	조례	제4401호	2017.12.21	2017.12.21	경제통합국 지역공동체과
470	사회적기업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	제정	규칙	제2942호	2011.1.6	2011.1.6	
471	사회적기업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경주시	일부개정	조례	제1114호	2016.5.2	2016.5.2	노사협력과
472	사회적기업	계룡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계룡시	제정	조례	제372호	2012.6.12	2012.6.12	지역경제과
473	사회적기업	고령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고령군	일부개정	조례	제1989호	2012.6.29	2012.6.29	경제교통과
474	사회적기업	고성군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성군	일부개정	조례	제2228호	2015.8.13	2015.8.13	경제진흥과
475	사회적기업	고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성군	일부개정	조례	제2266호	2016.7.4	2016.7.4	경제교통과
476	사회적기업	고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고창군	일부개정	조례	제2136호	2015.1.27	2015.1.27	민생경제과
477	사회적기업	공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공주시	일부개정	조례	제1084호	2016.11.1	2016.11.1	기업경제과
478	사회적기업	과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과천시	제정	조례	제1151호	2010.10.11	2010.10.11	
479	사회적기업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시	일부개정	조례	제2196호	2016.9.26	2016.9.26	일자리창출과
480	사회적기업	광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광양시	일부개정	조례	제1550호	2017.12.27	2018.1.1	투자일자리담당관
481	사회적기업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일부개정	조례	제4014호	2011.10.15	2011.10.15	일자리정책관
482	사회적기업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광주광역시	일부개정	규칙	제2962호	2014.9.1	2014.9.1	일자리정책관
483	사회적기업	괴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괴산군	일부개정	조례	제2197호	2015.6.5	2015.7.1	일자리창출팀
484	사회적기업	구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구리시	제정	규칙	제787호	2010.11.29	2010.11.29	
485	사회적기업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일부개정	조례	제1076호	2015.7.31	2015.7.31	노동복지과
486	사회적기업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군산시	일부개정	조례	제1072호	2013.5.1	2013.5.1	인력양성일자리계
487	사회적기업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군산시	제정	규칙	제455호	2010.5.17	2010.5.17	인력양성일자리계
488	사회적기업	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금산군	일부개정	조례	제2108호	2017.9.29	2017.9.29	지역경제과
489	사회적기업	김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제시	일부개정	조례	제856호	2013.8.19	2013.8.19	경제교통과

490	사회적기업	김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포시	전부개정	조례	제1390호	2017.4.18	2017.4.18	일자리경제과
491	사회적기업	남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일부개정	조례	제1247호	2015.5.14	2015.5.14	경제에너지정책과
492	사회적기업	남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남원시	일부개정	조례	제1126호	2014.11.14	2014.11.14	일자리지원담당
493	사회적기업	남해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	일부개정	조례	제2121호	2015.10.2	2015.10.2	경제과
494	사회적기업	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논산시	일부개정	조례	제1154호	2017.12.29	2017.12.29	사회적경제과
495	사회적기업	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단양군	일부개정	조례	제2213호	2015.5.1	2015.5.1	지역경제과
496	사회적기업	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단양군	제정	규칙	제1293호	2013.7.19	2013.7.19	지역경제과
497	사회적기업	당진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일부개정	조례	제499호	2015.12.15	2016.1.1	지역경제과
498	사회적기업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구	일부개정	조례	제964호	2014.11.20	2014.11.20	일자리창출담당
499	사회적기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달성군	일부개정	조례	제2484호	2017.5.10	2017.5.10	경제과
500	사회적기업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일부개정	조례	제990호	2014.12.30	2015.1.1	창조경제과
501	사회적기업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일부개정	조례	제1087호	2014.12.30	2015.1.9	도시재생과
502	사회적기업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일부개정	조례	제4291호	2011.11.10	2011.11.10	
503	사회적기업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일부개정	규칙	제2793호	2015.5.20	2015.5.20	
504	사회적기업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서구	제정	조례	제808호	2010.12.20	2010.12.20	경제과
505	사회적기업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성구	일부개정	조례	제1002호	2014.12.30	2015.1.1	일자리투자사업단
506	사회적기업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	일부개정	조례	제1094호	2017.11.10	2017.11.21	경제과
507	사회적기업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달서구	일부개정	조례	제1088호	2015.7.31	2015.7.31	일자리경제과
508	사회적기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대덕구	일부개정	조례	제1053호	2014.12.19	2014.12.19	경제과
509	사회적기업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일부개정	조례	제1148호	2016.3.11	2016.3.11	경제과
510	사회적기업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일부개정	조례	제4856호	2017.2.10	2017.2.10	
511	사회적기업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일부개정	규칙	제3003호	2015.7.17	2015.7.17	
512	사회적기업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서구	일부개정	조례	제1263호	2014.12.22	2015.1.1	일자리경제정책실
513	사회적기업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시행규칙	서구	제정	규칙	제879호	2012.10.8	2012.10.8	일자리경제정책실
514	사회적기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유성구	일부개정	조례	제1040호	2013.7.29	2013.7.29	일자리추진단
515	사회적기업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중구	일부개정	조례	제1188호	2016.7.11	2016.7.11	경제기업과
516	사회적기업	목포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목포시	일부개정	조례	제2930호	2015.8.3	2015.8.3	일자리정책과
517	사회적기업	무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무주군	일부개정	조례	제2103호	2014.11.26	2015.1.1	산업경제과(일자리담당)
518	사회적기업	문경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문경시	일부개정	조례	제924호	2013.7.15	2013.7.15	경제진흥과
519	사회적기업	밀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밀양시	일부개정	조례	제1198호	2017.12.28	2018.1.1	행정과(지역공동체담당)
520	사회적기업	보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보성군	일부개정	조례	제2267호	2017.6.27	2017.6.27	경제산업과
521	사회적기업	보은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보은군	일부개정	조례	제2232호	2015.2.13	2015.2.13	경제정책계
522	사회적기업	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봉화군	일부개정	조례	제2136호	2017.9.11	2017.9.11	새마을경제과
523	사회적기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강서구	일부개정	조례	제869호	2014.10.2	2014.10.6	창조경제과
524	사회적기업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금정구	제정	조례	제981호	2011.2.11	2011.2.11	일자리경제과
525	사회적기업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기장군	제정	조례	제643호	2010.12.30	2010.12.30	교통경제과
526	사회적기업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남구	일부개정	조례	제1202호	2018.3.1	2018.3.1	경제진흥과
527	사회적기업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일부개정	조례	제1091호	2017.9.15	2017.9.15	경제복지과 경제진흥과
528	사회적기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부산진구	일부개정	조례	제1045호	2014.12.26	2014.12.26	일자리사업담당
529	사회적기업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북구	일부개정	조례	제1161호	2016.6.22	2016.6.22	경제진흥과
530	사회적기업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상구	제정	조례	제563호	2010.10.18	2010.10.18	일자리경제과

531	사회적기업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사하구	제정	조례	제832호	2011.4.7	2011.4.7	경제진흥과
532	사회적기업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일부개정	조례	제5136호	2015.5.27	2015.7.1	
533	사회적기업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일부개정	규칙	제3791호	2013.10.30	2013.10.30	
534	사회적기업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서구	일부개정	조례	제1107호	2017.1.1	2017.1.1	복지정책과
535	사회적기업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수영구	제정	조례	제618호	2010.12.31	2010.12.31	지역경제과
536	사회적기업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영도구	제정	조례	제881호	2010.12.30	2010.12.30	경제진흥과
537	사회적기업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중구	제정	조례	제833호	2011.5.6	2011.5.6	경제진흥과
538	사회적기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해운대구	제정	조례	제927호	2010.5.10	2010.5.10	일자리창출과
539	사회적기업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타법개정	조례	제5265호	2015.11.4	2015.11.4	교육재정과
540	사회적기업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동래구	일부개정	조례	제937호	2010.12.20	2010.12.20	일자리창출계
541	사회적기업	부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안군	일부개정	조례	제2137호	2015.2.9	2015.2.9	미래창조경제과
542	사회적기업	부여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부여군	일부개정	조례	제2103호	2014.8.18	2014.8.18	경제교통과
543	사회적기업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천시	일부개정	조례	제1446호	2017.12.28	2018.1.1	투자유치과
544	사회적기업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산청군	일부개정	조례	제2207호	2016.3.1	2016.3.1	경제도시과 지역경제담당
545	사회적기업	상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상주시	일부개정	조례	제962호	2015.1.1	2015.1.1	경제기업과
546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남구	일부개정	조례	제1216호	2014.12.26	2015.1.1	일자리정책과 사회기업팀
547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강남구	제정	규칙	제660호	2010.11.26	2010.11.26	일자리정책과
548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악구	제정	조례	제893호	2011.6.16	2011.6.16	사회적경제과
549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진구	제정	조례	제714호	2011.3.14	2011.3.14	사회적경제팀
550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구로구	제정	조례	제919호	2010.12.30	2010.12.30	일자리지원과
551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구로구	제정	규칙	제625호	2011.3.10	2011.3.10	일자리지원과
552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금천구	일부개정	조례	제894호	2016.12.30	2016.12.30	지역혁신과
553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노원구	제정	조례	제902호	2010.12.30	2010.12.30	일자리경제과
554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노원구	제정	규칙	제629호	2011.2.17	2011.2.17	일자리경제과
555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봉구	제정	조례	제923호	2011.4.1	2011.4.1	마을공동체과
556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도봉구	제정	규칙	제702호	2011.5.26	2011.5.26	마을공동체과
557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동대문구	제정	규칙	제550호	2011.6.23	2011.6.23	
558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마포구	일부개정	조례	제1102호	2017.6.8	2017.6.8	일자리경제과
559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마포구	제정	규칙	제539호	2010.4.15	2010.4.15	일자리경제과
560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타법개정	조례	제6386호	2017.1.5	2017.1.5	사회적경제담당관
561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제정	규칙	제3703호	2009.11.12	2009.11.12	일자리정책담당관
562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서대문구	일부개정	조례	제1095호	2015.11.11	2015.11.11	일자리경제과
563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서대문구	제정	규칙	제599호	2011.6.15	2011.6.15	경제발전기획단
564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초구	일부개정	조례	제975호	2015.2.12	2015.2.12	일자리과
565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북구	일부개정	조례	제1083호	2015.11.5	2015.11.5	사회적경제과
566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송파구	일부개정	조례	제1238호	2014.12.30	2015.1.1	일자리정책과
567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양천구	일부개정	조례	제1182호	2015.6.19	2015.7.1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
568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양천구	제정	규칙	제592호	2010.9.20	2010.9.20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
569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은평구	제정	조례	제845호	2010.9.16	2010.9.16	사회적경제과 사회기업팀
570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은평구	일부개정	규칙	제717호	2015.6.25	2015.6.25	사회적경제과 사회기업팀
571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중구	제정	조례	제1081호	2011.7.22	2011.7.22	취업지원과

572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구	일부개정	규칙	제691호	2017.11.15	2017.11.15	취업지원과
573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랑구	제정	조례	제880호	2009.12.29	2009.12.29	일자리경제과
574	사회적기업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속초시	일부개정	조례	제2607호	2017.12.22	2017.12.22	경제진흥과
575	사회적기업	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순창군	제정	조례	제2011호	2010.11.1	2010.11.1	일자리 창출
576	사회적기업	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순창군	제정	규칙	제1053호	2010.12.31	2010.12.31	일자리창출
577	사회적기업	시흥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흥시	제정	규칙	제702호	2010.12.31	2010.12.31	
578	사회적기업	양구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양구군	일부개정	조례	제2068호	2014.12.15	2015.1.1	경제관광과 투자유치
579	사회적기업	양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양산시	일부개정	조례	제1158호	2015.12.31	2015.12.31	경제기업과일자리창출담당
580	사회적기업	양양군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양군	제정	조례	제2343호	2014.12.19	2014.12.19	경제도시과
581	사회적기업	연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연천군	제정	조례	제2963호	2010.12.30	2010.12.30	지역경제과
582	사회적기업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영동군	일부개정	조례	제2483호	2015.3.26	2015.3.26	경제과
583	사회적기업	영암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영암군	일부개정	조례	제2327호	2017.11.9	2017.11.9	일자리공동체팀
584	사회적기업	영양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영양군	일부개정	조례	제1997호	2015.3.13	2015.3.13	주민생활지원과
585	사회적기업	영월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영월군	일부개정	조례	제2394호	2016.7.1	2016.7.1	경제고용과
586	사회적기업	영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영주시	일부개정	조례	제908호	2014.12.29	2014.12.29	경제활성화실
587	사회적기업	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군	일부개정	조례	제2379호	2017.8.11	2017.8.11	경제과
588	사회적기업	예천군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예천군	일부개정	조례	제1967호	2011.10.12	2011.10.12	새마을경제과
589	사회적기업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옥천군	일부개정	조례	제2692호	2017.11.30	2017.11.30	경제정책실
590	사회적기업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	일부개정	조례	제2250호	2015.6.23	2015.6.23	일자리창출담당
591	사회적기업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제정	규칙	제682호	2012.7.6	2012.7.6	일자리정책과
592	사회적기업	울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릉군	일부개정	조례	제1787호	2015.6.23	2015.6.23	경제교통과
593	사회적기업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일부개정	조례	제971호	2017.5.11	2017.5.11	창조경제과
594	사회적기업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일부개정	조례	제1384호	2013.10.2	2013.10.2	
595	사회적기업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제정	규칙	제572호	2010.12.9	2010.12.9	
596	사회적기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주군	일부개정	조례	제989호	2017.6.15	2017.7.1	지역경제과
597	사회적기업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	일부개정	조례	제712호	2014.12.29	2014.12.29	경제일자리과
598	사회적기업	울진군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울진군	일부개정	조례	제2335호	2017.7.18	2017.7.18	일자리추진팀
599	사회적기업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원주시	일부개정	조례	제1374호	2015.1.2	2015.1.2	경제전략과
600	사회적기업	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일부개정	조례	제2328호	2016.9.5	2016.9.5	경제과
601	사회적기업	의령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령군	일부개정	조례	제2155호	2017.10.10	2017.10.10	일자리창출담당
602	사회적기업	의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의성군	일부개정	조례	제2590호	2017.12.29	2017.12.29	경제교통과
603	사회적기업	의왕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의왕시	일부개정	조례	제1419호	2015.4.3	2015.4.3	기업지원과
604	사회적기업	이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이천시	일부개정	조례	제1028호	2014.4.10	2014.4.10	기업지원과
605	사회적기업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구	제정	규칙	제760호	2011.2.11	2011.2.11	일자리지원과
606	사회적기업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타법개정	조례	제5357호	2014.5.19	2014.5.19	복지재정과
607	사회적기업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동구	제정	조례	제801호	2010.12.24	2010.12.24	전략사업추진실
608	사회적기업	임실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실군	일부개정	조례	제2115호	2014.12.31	2014.12.31	지역경제과
609	사회적기업	장수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장수군	일부개정	조례	제2048호	2014.12.29	2014.12.29	건설경제과
610	사회적기업	장흥군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장흥군	일부개정	조례	제2358호	2017.12.29	2017.12.29	기업지원과
611	사회적기업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라북도	일부개정	조례	제4457호	2017.9.22	2017.9.22	
612	사회적기업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라북도	일부개정	규칙	제2991호	2015.11.27	2015.11.27	

613	사회적기업	전라북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전라북도교육청	제정	조례	제3998호	2015.5.8	2015.5.8	재무과
614	사회적기업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주시	일부개정	조례	제3145호	2014.12.30	2015.1.1	사회적경제지원과
615	사회적기업	정읍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읍시	일부개정	조례	제1332호	2015.11.13	2015.11.13	공동체과
616	사회적기업	정읍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읍시	제정	규칙	제454호	2012.4.20	2012.4.20	지역공동체육성과
617	사회적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일부개정	조례	제1781호	2016.12.30	2016.12.30	경제정책과
618	사회적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제정	규칙	제241호	2010.6.9	2010.6.9	경제정책과
619	사회적기업	증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증평군	일부개정	조례	제412호	2012.2.24	2012.2.24	제5장 일자리공동체
620	사회적기업	진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진안군	일부개정	조례	제2281호	2017.6.30	2017.6.30	전략사업실
621	사회적기업	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주시	제정	조례	제1007호	2012.2.23	2012.2.23	지역경제과
622	사회적기업	진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천군	일부개정	조례	제2367호	2015.3.2	2015.3.2	경제과 지역경제팀
623	사회적기업	창녕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창녕군	일부개정	조례	제2175호	2015.2.12	2015.2.12	경제도시과
624	사회적기업	창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창원시	일부개정	조례	제826호	2015.12.28	2015.12.28	일자리창출과(박철선)
625	사회적기업	창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창원시	제정	규칙	제208호	2011.12.15	2011.12.15	일자리창출과
626	사회적기업	청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청도군	제정	조례	제1999호	2011.4.22	2011.4.22	
627	사회적기업	청양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청양군	제정	조례	제1826호	2012.2.22	2012.2.22	
628	사회적기업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시	일부개정	조례	제562호	2016.11.11	2016.11.11	행정지원과
629	사회적기업	춘천시 풀뿌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춘천시	일부개정	조례	제1077호	2014.8.8	2014.8.8	경제과
630	사회적기업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충주시	일부개정	조례	제1254호	2014.12.26	2014.12.26	경제과
631	사회적기업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일부개정	조례	제3710호	2014.10.31	2014.10.31	
632	사회적기업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	제정	규칙	제2682호	2010.9.6	2010.9.6	
633	사회적기업	태백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태백시	일부개정	조례	제1756호	2016.12.30	2016.12.30	경제정책과
634	사회적기업	태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태안군	일부개정	조례	제1110호	2015.1.6	2015.1.6	경제진흥과
635	사회적기업	통영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통영시	일부개정	조례	제1065호	2014.10.6	2014.10.6	지역경제과
636	사회적기업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파주시	일부개정	조례	제1008호	2012.2.13	2012.2.13	일자리정책과*
637	사회적기업	평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평창군	일부개정	조례	제2373호	2017.12.1	2017.12.1	경제체육과
638	사회적기업	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하동군	일부개정	조례	제2131호	2016.1.1	2016.1.1	경제수산과
639	사회적기업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함안군	일부개정	조례	제2336호	2017.1.9	2017.1.9	일자리담당
640	사회적기업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함양군	제정	조례	제1924호	2011.7.8	2011.7.8	경제과
641	사회적기업	함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함평군	일부개정	조례	제2188호	2014.12.31	2014.12.31	지역경제과
642	사회적기업	합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합천군	일부개정	조례	제2065호	2014.7.24	2014.7.24	경제교통과
643	사회적기업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홍성군	일부개정	조례	제2186호	2015.6.5	2015.6.5	일자리지원
644	사회적기업	화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화천군	제정	조례	제2049호	2011.11.25	2011.11.25	일거리창출
645	사회적자본	강진군 사회적 자본 증진 조례	강진군	제정	조례	제제2304호	2016.7.5	2016.7.5	총무과
646	사회적자본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대전광역시	일부개정	조례	제4833호	2016.12.30	2016.12.30	
647	사회적자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서구	일부개정	조례	제1502호	2017.12.18	2018.1.1	총무과
648	사회적자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자본 증진 조례	해운대구	제정	조례	제1022호	2012.12.20	2012.12.20	교육협력과
649	사회적자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제정	조례	제1058호	2013.7.17	2013.10.18	자치행정과
650	사회주택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일부개정	조례	제6779호	2018.1.4	2018.1.4	주택정책과
651	사회주택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일부개정	조례	제1666호	2017.7.13	2017.7.13	주택과
652	자활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일부개정	조례	제4987호	2015.8.3	2015.8.3	사회적일자리과
653	자활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일부개정	규칙	제3700호	2016.1.7	2016.1.7	사회적일자리과

654	자활	경상남도 자활자립상 조례	경상남도	일부개정	조례	제3930호	2014.10.10	2014.10.10	
655	자활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일부개정	조례	제4039호	2017.12.28	2017.12.28	
656	자활	고양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	제정	조례	제1564호	2014.1.3	2014.1.3	복지정책과
657	자활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활사업 지원 조례	광산구	일부개정	조례	제1192호	2015.9.25	2015.9.25	공동체복지과
658	자활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 조례	북구	일부개정	조례	제1247호	2015.12.24	2015.12.24	복지정책과
659	자활	광주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서구	일부개정	조례	제1270호	2016.10.10	2016.10.10	자활지원팀
660	자활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제정	조례	제4354호	2012.3.30	2012.3.30	
661	자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대덕구	제정	조례	제1106호	2015.10.8	2015.10.8	사회복지과
662	자활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	일부개정	조례	제1226호	2013.12.23	2013.12.23	사회복지과
663	자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유성구	제정	조례	제1128호	2015.10.2	2015.10.2	사회복지과
664	자활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	일부개정	조례	제1188호	2016.7.11	2016.7.11	사회복지과
665	자활	보령시 자활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보령시	제정	조례	제1287호	2016.6.10	2016.6.10	주민생활지원과
666	자활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제정	조례	제5686호	2018.1.10	2018.1.10	
667	자활	부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부천시	일부개정	조례	제3253호	2017.12.29	2017.12.29	복지정책과
668	자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강남구	제정	조례	제1008호	2011.3.4	2011.3.4	사회복지과 재활주거팀
669	자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로구	일부개정	조례	제1233호	2016.12.29	2016.12.29	사회복지과
670	자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활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은평구	제정	조례	제919호	2012.6.14	2012.6.14	생활복지과 재활지원팀
671	자활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타법개정	조례	제6386호	2017.1.5	2017.1.5	자활지원과
672	자활	안성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안성시	일부개정	조례	제1177호	2015.9.30	2015.9.30	사회복지과
673	자활	인천광역시 남구 자활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구	일부개정	조례	제1290호	2015.11.16	2015.11.16	복지정책과
674	자활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서구	일부개정	조례	제1481호	2016.7.8	2016.7.8	희망복지과
675	자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연수구	일부개정	조례	제987호	2016.12.26	2016.12.26	사회보장과
676	자활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전부개정	조례	제5213호	2013.2.21	2013.2.21	
677	자활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남구	제정	조례	제1290호	2015.11.16	2015.11.16	기획조정실
678	자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부평구	일부개정	조례	제1561호	2018.1.2	2018.1.2	사회보장과
679	자활	전라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제정	조례	제4417호	2017.9.28	2017.9.28	사회복지과
680	자활	전라북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라북도	일부개정	조례	제4159호	2015.12.11	2015.12.11	
681	자활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제정	조례	제1981호	2017.12.29	2017.12.29	복지청소년과
682	자활기금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릉시	일부개정	조례	제1231호	2017.11.15	2017.11.15	생활보장과
683	자활기금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강릉시	일부개정	규칙	제601호	2017.6.28	2017.6.28	생활보장과
684	자활기금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	강원도	일부개정	조례	제4235호	2017.12.29	2017.12.29	
685	자활기금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강원도	제정	규칙	제3059호	2016.12.30	2016.12.30	
686	자활기금	강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화군	일부개정	조례	제2337호	2017.6.30	2017.6.30	복지지원실
687	자활기금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거제시	일부개정	조례	제1544호	2017.9.30	2017.9.30	주민생활과
688	자활기금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산시	일부개정	조례	제936호	2015.11.27	2015.11.27	복지정책과
689	자활기금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주시	일부개정	조례	제969호	2013.12.10	2013.12.10	복지정책과
690	자활기금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경주시	일부개정	규칙	제519호	2015.10.28	2015.10.28	복지정책과
691	자활기금	계룡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계룡시	일부개정	조례	제549호	2016.12.30	2016.12.30	사회복지실
692	자활기금	고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고령군	일부개정	조례	제2145호	2016.11.14	2016.11.14	생활보장담당
693	자활기금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고성군	제정	조례	제2165호	2014.5.27	2014.5.27	기획감사실
694	자활기금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고성군	일부개정	규칙	제1159호	2015.2.17	2015.2.17	기획감사실

695	자활기금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고양시	일부개정	조례	제1890호	2017.9.29	2017.9.29	복지정책과
696	자활기금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고양시	일부개정	규칙	제832호	2011.11.8	2011.11.8	복지정책과
697	자활기금	곡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곡성군	전부개정	조례	제2041호	2016.1.18	2016.1.18	복지실
698	자활기금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명시	일부개정	조례	제2205호	2016.11.18	2016.11.18	사회복지과
699	자활기금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동구	일부개정	조례	제1147호	2016.11.23	2016.11.23	노인장애인복지과
700	자활기금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동구	일부개정	규칙	제723호	2016.2.11	2016.2.11	노인장애인복지과
701	자활기금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광주시	일부개정	조례	제955호	2018.3.9	2018.3.9	복지정책과
702	자활기금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광주시	일부개정	규칙	제353호	2018.1.8	2018.1.8	복지정책과
703	자활기금	구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구례군	일부개정	조례	제2234호	2018.3.23	2018.3.23	주민복지과
704	자활기금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군산시	일부개정	조례	제1454호	2017.4.25	2017.4.25	자활복지계
705	자활기금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군산시	일부개정	규칙	제634호	2017.4.25	2017.4.25	자활복지계
706	자활기금	군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군위군	일부개정	조례	제1845호	2015.11.5	2015.11.5	주민생활지원과
707	자활기금	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금산군	전부개정	조례	제2098호	2017.7.17	2017.7.17	주민복지지원실
708	자활기금	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금산군	제정	규칙	제1189호	2017.10.30	2017.10.30	주민복지지원실
709	자활기금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김제시	일부개정	조례	제1098호	2016.12.20	2016.12.20	주민복지과
710	자활기금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김제시	제정	규칙	제414호	2014.3.3	2014.3.3	주민복지과
711	자활기금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김천시	일부개정	조례	제1043호	2015.12.31	2015.12.31	행복나눔과
712	자활기금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남양주시	일부개정	조례	제1444호	2017.7.6	2017.7.6	일자리정책과
713	자활기금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남양주시	일부개정	규칙	제715호	2017.7.6	2017.7.6	일자리정책과
714	자활기금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남원시	일부개정	조례	제1347호	2017.6.16	2017.6.16	자활지원담당
715	자활기금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남원시	일부개정	규칙	제606호	2017.6.16	2017.6.16	자활지원담당
716	자활기금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남해군	일부개정	조례	제2121호	2015.10.2	2015.10.2	주민생활지원실
717	자활기금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남해군	일부개정	규칙	제1092호	2015.10.2	2015.10.2	주민복지실
718	자활기금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논산시	일부개정	조례	제1141호	2017.10.10	2017.10.10	주민생활지원과
719	자활기금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논산시	일부개정	규칙	제485호	2017.11.10	2017.11.10	주민생활지원과
720	자활기금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단양군	일부개정	조례	제2215호	2015.5.1	2015.5.1	주민복지실
721	자활기금	담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담양군	제정	조례	제2286호호	2016.10.10	2016.10.10	주민복지실 생활보장
722	자활기금	담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담양군	제정	규칙	제1319호	2016.10.10	2016.10.10	생활보장
723	자활기금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남구	일부개정	조례	제1060호	2016.10.31	2016.10.31	기초생활보장담당
724	자활기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달성군	일부개정	조례	제2487호	2017.5.10	2017.5.10	생활보장과
725	자활기금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동구	일부개정	조례	제1170호	2017.6.30	2017.6.30	복지정책과
726	자활기금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동구	제정	규칙	제788호	2017.3.30	2017.3.30	복지정책과
727	자활기금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북구	일부개정	조례	제1256호	2017.9.29	2017.9.29	주민행복과
728	자활기금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구	일부개정	조례	제1041호	2016.12.30	2016.12.30	생활보장과
729	자활기금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구	일부개정	조례	제1046호	2016.12.12	2016.12.12	생활지원과
730	자활기금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중구	제정	규칙	제741호	2013.6.10	2013.6.10	생활지원과
731	자활기금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달서구	전부개정	조례	제1249호	2017.10.23	2017.10.23	어르신장애인과
732	자활기금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달서구	제정	규칙	제879호	2017.10.23	2017.10.23	어르신장애인과
733	자활기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덕구	전부개정	조례	제1245호	2017.9.29	2017.9.29	사회복지과
734	자활기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대덕구	전부개정	규칙	제841호	2017.9.29	2017.9.29	사회복지과
735	자활기금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동구	일부개정	조례	제1123호	2015.11.9	2015.11.9	사회복지과



736	자활기금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동해시	일부개정	조례	제1865호	2016.10.10	2016.10.10	복지과
737	자활기금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동해시	일부개정	규칙	제978호	2016.10.28	2016.10.28	복지과
738	자활기금	목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목포시	전부개정	조례	제3017호	2016.4.11	2016.4.11	노인장애인과
739	자활기금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무주군	일부개정	조례	제2114호	2015.2.4	2015.2.4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담당)
740	자활기금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무주군	일부개정	규칙	제1017호	2011.12.1	2011.12.1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담당)
741	자활기금	문경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문경시	전부개정	조례	제1126호	2017.1.9	2017.1.9	사회복지과
742	자활기금	문경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문경시	제정	규칙	제525호	2017.1.9	2017.1.9	사회복지과
743	자활기금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밀양시	일부개정	조례	제1014호	2015.11.12	2015.11.12	주민생활지원과
744	자활기금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보령시	전부개정	조례	제1435호	2017.12.20	2017.12.20	주민생활지원과
745	자활기금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보령시	제정	규칙	제555호	2017.12.20	2017.12.20	주민생활지원과
746	자활기금	보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보성군	전부개정	조례	제2238호	2016.12.30	2017.1.1	주민복지실
747	자활기금	보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보성군	전부개정	규칙	제1114호	2016.12.30	2017.1.1	주민복지실
748	자활기금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봉화군	일부개정	조례	제2117호	2017.6.1	2017.6.1	주민복지과
749	자활기금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장군	일부개정	조례	제920호	2016.12.27	2017.1.1	복지정책과
750	자활기금	부산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동구	일부개정	조례	제1091호	2017.9.15	2017.9.15	경제복지국 생활보장과
751	자활기금	부산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동구	제정	규칙	제715호	2012.12.31	2012.12.31	경제복지국 생활보장과
752	자활기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산진구	일부개정	조례	제1132호	2016.10.11	2016.10.11	자활사업담당
753	자활기금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북구	일부개정	조례	제1173호	2016.9.28	2016.10.29	복지행정과
754	자활기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사하구	일부개정	조례	제1045호	2015.12.30	2015.12.30	생활보장과
755	자활기금	부산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구	일부개정	조례	제1095호	2016.11.7	2016.11.7	복지정책과
756	자활기금	부산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서구	일부개정	규칙	제775호	2016.11.7	2016.11.7	복지정책과
757	자활기금	부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조례	중구	일부개정	조례	제1006호	2016.8.12	2016.8.12	주민복지과
758	자활기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해운대구	일부개정	조례	제1309호	2018.2.22	2018.2.22	주민복지과
759	자활기금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동래구	일부개정	조례	제1075호	2015.4.1	2015.4.1	자활지원계
760	자활기금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안군	전부개정	조례	제2285호	2016.12.13	2016.12.13	주민행복지원실
761	자활기금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부안군	전부개정	규칙	제1109호	2016.12.13	2016.12.13	주민행복지원실
762	자활기금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여군	일부개정	조례	제2279호	2016.12.23	2017.1.1	가족행복지원실
763	자활기금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부여군	일부개정	규칙	제1320호	2016.12.23	2016.12.23	가족행복지원실
764	자활기금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천시	일부개정	조례	제2939호	2015.2.16	2015.2.16	복지정책과
765	자활기금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부천시	일부개정	규칙	제1785호	2015.2.16	2015.2.16	복지정책과
766	자활기금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사천시	일부개정	조례	제1238호	2015.12.3	2015.12.3	주민생활지원과
767	자활기금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산청군	일부개정	조례	제2223호	2016.6.28	2016.6.28	주민생활지원과
768	자활기금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산청군	일부개정	규칙	제1118호	2014.7.30	2014.7.30	주민생활지원과
769	자활기금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삼척시	일부개정	조례	제1116호	2017.11.17	2017.11.17	주민생활지원과
770	자활기금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삼척시	전부개정	규칙	제494호	2016.1.15	2016.1.15	주민생활지원과
771	자활기금	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상주시	일부개정	조례	제1095호	2016.11.23	2016.11.23	사회복지과
772	자활기금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산시	일부개정	조례	제1239호	2017.12.29	2017.12.29	사회복지과
773	자활기금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서산시	일부개정	규칙	제546호	2017.12.29	2017.12.29	사회복지과
774	자활기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남구	일부개정	조례	제1372호	2016.11.4	2016.11.4	사회복지과 자활주킴
775	자활기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북구	일부개정	조례	제1179호	2016.4.8	2016.4.8	생활보장과
776	자활기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서구	일부개정	조례	제1037호	2015.11.4	2015.11.4	생활보장과

777	자활기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강서구	일부개정	규칙	제612호	2012.6.5	2012.6.5	생활보장과
778	자활기금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관악구	일부개정	조례	제1113호	2016.12.29	2017.1.1	생활복지과
779	자활기금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구로구	일부개정	조례	제1323호	2018.2.22	2018.2.22	사회복지과
780	자활기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금천구	전부개정	조례	제769호	2013.12.31	2014.1.1	사회복지과
781	자활기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금천구	일부개정	규칙	제489호	2016.1.5	2016.1.5	복지지원과
782	자활기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노원구	일부개정	조례	제1236호	2016.12.30	2016.12.30	사회보장과
783	자활기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노원구	전부개정	규칙	제735호	2015.11.12	2015.11.12	사회보장과
784	자활기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봉구	일부개정	조례	제1261호	2017.12.28	2017.12.28	생활보장과
785	자활기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동대문구	일부개정	조례	제1167호	2017.6.22	2017.6.22	사회복지과
786	자활기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동작구	일부개정	조례	제1183호	2014.7.10	2014.7.10	사회복지과
787	자활기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마포구	일부개정	조례	제1023호	2015.11.19	2015.11.19	생활보장과
788	자활기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성동구	일부개정	조례	제1252호	2017.11.23	2017.12.1	어르신·장애인복지과
789	자활기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양천구	일부개정	조례	제1297호	2017.9.28	2017.9.28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790	자활기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영등포구	일부개정	조례	제1212호	2017.12.28	2017.12.28	사회복지과
791	자활기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영등포구	일부개정	규칙	제640호	2013.10.24	2013.10.24	사회복지과
792	자활기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용산구	일부개정	조례	제1203호	2017.7.7	2017.7.7	복지조사과
793	자활기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용산구	일부개정	규칙	제630호	2015.9.11	2015.9.11	복지조사과
794	자활기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종로구	일부개정	조례	제1178호	2016.9.30	2016.9.30	자활추거팀
795	자활기금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구	일부개정	조례	제1340호	2016.10.19	2016.10.19	사회복지과
796	자활기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랑구	일부개정	조례	제1185호	2017.1.12	2017.1.12	사회복지과
797	자활기금	서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천군	일부개정	조례	제2310호	2015.8.10	2015.8.10	사회복지실
798	자활기금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성남시	일부개정	조례	제3003호	2016.6.20	2016.6.20	복지지원과
799	자활기금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일부개정	규칙	제1826호	2016.6.20	2016.6.20	복지지원과
800	자활기금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성주군	일부개정	조례	제2205호	2017.11.16	2017.11.16	주민복지과
801	자활기금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일부개정	조례	제949호	2016.12.20	2016.12.20	복지정책과
802	자활기금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세종특별자치시	일부개정	규칙	제155호	2016.3.21	2016.3.21	복지정책과
803	자활기금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순창군	일부개정	조례	제2404호	2017.9.29	2017.9.29	통합보장
804	자활기금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순창군	일부개정	규칙	제1153호	2015.12.15	2015.12.15	통합보장
805	자활기금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순천시	전부개정	조례	제1795호	2017.10.30	2017.10.30	사회복지과
806	자활기금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순천시	전부개정	규칙	제802호	2018.2.5	2018.2.5	사회복지과
807	자활기금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아산시	일부개정	조례	제1647호	2017.6.5	2017.6.5	사회복지과
808	자활기금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아산시	제정	규칙	제529호	2012.12.17	2012.12.17	사회복지과
809	자활기금	안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안동시	일부개정	조례	제1159호	2016.11.18	2016.11.18	사회복지과
810	자활기금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양구군	일부개정	조례	제2172호	2016.11.21	2016.11.21	주민생활지원실
811	자활기금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양구군	일부개정	규칙	제1079호	2016.9.19	2016.9.19	주민생활지원실
812	자활기금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양산시	일부개정	조례	제1222호	2016.7.18	2016.7.18	주민생활지원과
813	자활기금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양산시	일부개정	규칙	제589호	2015.9.9	2015.9.9	주민생활지원과
814	자활기금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양양군	일부개정	조례	제2431호	2016.6.10	2016.6.10	주민생활지원과
815	자활기금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양양군	일부개정	규칙	제1265호	2016.6.10	2016.6.10	주민생활지원과
816	자활기금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양평군	전부개정	조례	제2484호	2017.5.10	2017.5.10	행복돌봄과
817	자활기금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양평군	제정	규칙	제1437호	2017.8.16	2017.8.16	행복돌봄과

818	자활기금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여주시	일부개정	조례	제588호	2017.8.4	2017.8.4	복지정책과
819	자활기금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영동군	제정	조례	제2522호	2015.10.26	2016.1.1	주민복지과
820	자활기금	영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영월군	일부개정	조례	제2398호	2016.10.21	2016.10.21	주민생활지원과
821	자활기금	영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영월군	일부개정	규칙	제1078호	2015.10.30	2015.10.30	주민생활지원과
822	자활기금	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영주시	일부개정	조례	제1041호	2016.9.26	2016.9.26	사회복지과
823	자활기금	영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영천시	일부개정	조례	제828호	2016.12.26	2016.12.26	주민생활지원과
824	자활기금	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천군	일부개정	조례	제2191호	2016.11.7	2016.11.7	주민복지과
825	자활기금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완주군	전부개정	조례	제2526호	2016.12.22	2016.12.22	사회복지과 복지일자리
826	자활기금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완주군	전부개정	규칙	제1204호	2016.12.22	2016.12.22	사회복지과 복지일자리
827	자활기금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용인시	일부개정	조례	제1713호	2017.10.2	2017.10.2	복지정책과
828	자활기금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전부개정	규칙	제883호	2017.9.29	2017.9.29	복지정책과
829	자활기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울주군	전부개정	조례	제986호	2017.5.4	2017.5.4	사회복지과
830	자활기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울주군	전부개정	규칙	제455호	2017.5.4	2017.5.4	사회복지과
831	자활기금	울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울진군	제정	규칙	제1316호	2016.12.28	2016.12.28	복지기획팀
832	자활기금	울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울진군	일부개정	조례	제2335호	2017.7.18	2017.7.18	복지기획팀
833	자활기금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음성군	전부개정	조례	제2361호	2017.5.12	2017.5.12	주민지원과
834	자활기금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음성군	제정	규칙	제1332호	2017.4.14	2017.4.14	주민지원과
835	자활기금	익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익성군	일부개정	조례	제2503호	2016.11.28	2016.11.28	사회복지과
836	자활기금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전부개정	조례	제2823호	2017.11.15	2017.11.15	복지정책과
837	자활기금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정부시	일부개정	규칙	제1466호	2017.9.5	2017.9.5	복지정책과
838	자활기금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이천시	제정	조례	제1259호	2016.8.9	2017.1.1	사회복지과
839	자활기금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제정	규칙	제592호	2016.8.9	2016.8.9	사회복지과
840	자활기금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익산시	일부개정	조례	제1643호	2017.1.10	2017.1.23	기초생활과
841	자활기금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익산시	일부개정	규칙	제751호	2017.7.21	2017.7.21	기초생활과
842	자활기금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평구	일부개정	조례	제1473호	2017.1.2	2017.1.2	사회보장과
843	자활기금	임실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임실군	제정	조례	제2194호	2015.10.30	2015.10.30	주민복지과
844	자활기금	임실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임실군	일부개정	규칙	제1145호	2018.1.15	2018.1.15	주민복지과
845	자활기금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라북도	일부개정	조례	제4458호	2017.9.22	2017.9.22	
846	자활기금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일부개정	조례	제1851호	2017.5.1	2017.5.1	복지청소년과
847	자활기금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천시	일부개정	조례	제1317호	2015.12.31	2015.12.31	희망복지팀
848	자활기금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진안군	전부개정	조례	제2319호	2017.12.8	2017.12.8	사회복지과
849	자활기금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진안군	제정	규칙	제1199호	2017.12.29	2017.12.29	사회복지과
850	자활기금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진주시	일부개정	조례	제1298호	2016.12.21	2016.12.21	행복지원과
851	자활기금	진주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진주시	일부개정	규칙	제575호	2013.11.8	2013.11.8	행복지원과
852	자활기금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진천군	일부개정	조례	제2488호	2016.12.23	2016.12.23	주민복지과
853	자활기금	창녕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창녕군	일부개정	조례	제2201호	2015.8.7	2015.8.7	주민복지지원실
854	자활기금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창원시	일부개정	조례	제637호	2013.12.30	2013.12.30	사회복지과김세영
855	자활기금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창원시	전부개정	규칙	제295호	2013.12.30	2013.12.30	사회복지과김세영
856	자활기금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천안시	일부개정	조례	제1579호	2016.11.11	2016.11.11	복지정책과
857	자활기금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천안시	일부개정	규칙	제702호	2016.11.11	2016.11.11	복지정책과
858	자활기금	철원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철원군	제정	조례	제2389호	2017.7.7	2017.7.7	통합조사관리

859	자활기금	철원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철원군	제정	규칙	제1229호	2017.7.7	2017.7.7	통합조사관리
860	자활기금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도군	전부개정	조례	제2219호	2017.11.30	2017.11.30	주민복지과
861	자활기금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청도군	제정	규칙	제1340호	2017.11.30	2017.11.30	주민복지과
862	자활기금	청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송군	일부개정	조례	제1986호	2016.2.22	2016.2.22	권생활지원과
863	자활기금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양군	제정	조례	제2093호	2016.12.13	2016.12.13	주민복지실
864	자활기금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주시	일부개정	조례	제464호	2015.12.24	2015.12.24	복지정책과
865	자활기금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춘천시	제정	규칙	제668호	2016.4.7	2016.4.7	복지정책과
866	자활기금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주시	일부개정	조례	제1450호	2017.1.1	2017.1.1	복지정책과
867	자활기금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충청북도	일부개정	조례	제4013호	2017.3.22	2017.3.22	
868	자활기금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칠곡군	일부개정	조례	제2380호	2016.12.30	2016.12.30	주민생활지원과
869	자활기금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칠곡군	일부개정	규칙	제1334호	2014.9.30	2014.9.30	주민생활지원과
870	자활기금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태백시	전부개정	조례	제1796호	2017.9.21	2017.9.21	주민생활지원실
871	자활기금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태백시	전부개정	규칙	제989호	2017.9.21	2017.9.21	주민생활지원실
872	자활기금	통영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통영시	일부개정	조례	제1173호	2016.2.12	2016.2.12	주민생활복지과
873	자활기금	파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파주시	전부개정	조례	제1403호	2017.12.22	2017.12.22	복지정책과*
874	자활기금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포항시	일부개정	조례	제1472호	2017.6.7	2017.6.7	주민복지과
875	자활기금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하남시	일부개정	조례	제1466호	2017.7.11	2017.7.11	복지정책과
876	자활기금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하동군	제정	규칙	제1149호	2016.8.5	2016.8.5	주민행복과
877	자활기금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하동군	일부개정	조례	제2259호	2018.1.29	2018.1.29	주민행복과
878	자활기금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함안군	일부개정	규칙	제1203호	2018.3.27	2018.3.27	기초생활담당
879	자활기금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함안군	일부개정	조례	제2363호	2017.9.29	2017.9.29	기초생활담당
880	자활기금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시행규칙	함양군	일부개정	규칙	제1036호	2012.12.28	2012.12.28	주민행복지원실
881	자활기금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함양군	일부개정	조례	제2324호	2017.7.21	2017.7.21	주민행복지원실
882	자활기금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해남군	일부개정	조례	제2687호	2017.12.19	2017.12.19	주민복지과
883	자활기금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홍천군	일부개정	조례	제2410호	2015.11.30	2015.11.30	주민복지과
884	자활기금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홍천군	일부개정	규칙	제1194호	2015.11.30	2015.11.30	주민복지과
885	자활기금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화순군	일부개정	조례	제2580호	2017.12.29	2018.1.1	사회복지과
886	자활기금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화순군	일부개정	규칙	제1296호	2016.1.11	2016.1.11	사회복지과
887	자활기금	화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화천군	일부개정	조례	제2316호	2017.1.10	2017.1.10	주민생활지원과
888	학교협동조합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제정	조례	제4938호	2017.8.1	2017.8.1	교육자치과
889	학교협동조합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타법개정	조례	제6358호	2016.12.29	2016.12.29	참여협력담당관
890	학교협동조합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제정	조례	제5823호	2017.7.17	2017.7.17	정책기획조정관
891	학교협동조합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교육청	제정	조례	제4446호	2017.8.11	2017.8.11	정책공보담당관
892	협동조합	거제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제시	일부개정	조례	제1559호	2017.11.9	2017.11.9	조선해양플랜트과
893	협동조합	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거창군	일부개정	조례	제2228호	2014.12.31	2014.12.31	경제교통과
894	협동조합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경상남도	일부개정	조례	제4222호	2016.12.29	2016.12.29	경제통상국 지역공동체과
895	협동조합	고령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고령군	제정	조례	제2021호	2013.7.31	2013.7.31	일자리창출담당
896	협동조합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과천시	제정	조례	제1265호	2013.8.2	2013.8.2	
897	협동조합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시	제정	조례	제1953호	2013.10.8	2013.10.8	일자리창출과
898	협동조합	광양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일부개정	조례	제1550호	2017.12.27	2018.1.1	투자일자리담당관
899	협동조합	광주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일부개정	조례	제4452호	2015.1.1	2015.1.1	일자리정책과

900	협동조합	구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일부개정	조례	제1588호	2018.1.9	2018.1.9	고용복지과
901	협동조합	군산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제정	조례	제1099호	2013.7.26	2013.7.26	지역경제계
902	협동조합	김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김포시	제정	조례	제1430호	2017.9.27	2017.9.27	일자리경제과
903	협동조합	남양주시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제정	조례	제1133호	2013.9.12	2013.9.12	창조경제과
904	협동조합	단양군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단양군	제정	조례	제2164호	2014.4.11	2014.4.11	지역경제과
905	협동조합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수성구	제정	조례	제970호	2013.12.30	2014.1.1	경제환경과
906	협동조합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일부개정	조례	제4649호	2014.12.22	2014.12.22	
907	협동조합	대구광역시달서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달서구	제정	조례	제1106호	2015.9.21	2015.9.21	경제과
908	협동조합	대전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일부개정	조례	제1256호	2017.6.30	2017.6.30	경제과
909	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	일부개정	조례	제1264호	2014.12.22	2014.12.22	일자리경제정책실
910	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유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유성구	제정	조례	제1027호	2013.4.12	2013.4.12	일자리추진단
911	협동조합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대전광역시	일부개정	조례	제4792호	2016.10.20	2016.10.20	
912	협동조합	목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	제정	조례	제2829호	2013.12.23	2013.12.23	일자리경제과
913	협동조합	밀양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밀양시	제정	조례	제907호	2013.11.14	2013.11.14	경제투과과(기업지원담당)
914	협동조합	보성군 협동조합 지원 조례	보성군	제정	조례	제2149호	2015.10.1	2015.10.1	경제산업과
915	협동조합	부산광역시 강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강서구	일부개정	조례	제890호	2015.1.1	2015.1.1	창조경제과
916	협동조합	부산광역시 금정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금정구	일부개정	조례	제1133호	2015.10.30	2015.10.30	일자리경제과
917	협동조합	부산광역시 기장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장군	제정	조례	제796호	2015.1.13	2015.1.13	교통경제과
918	협동조합	부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일부개정	조례	제1145호	2016.3.23	2016.3.23	경제진흥과
919	협동조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해운대구	일부개정	조례	제1103호	2014.12.22	2015.1.1	경제진흥과
920	협동조합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일부개정	조례	제5136호	2015.5.27	2015.7.1	
921	협동조합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	사천시	일부개정	조례	제1456호	2018.2.28	2018.2.28	지역경제과
922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노원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노원구	제정	조례	제1120호	2015.1.8	2015.1.8	일자리경제과
923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서대문구	일부개정	조례	제1083호	2015.10.1	2015.10.1	일자리경제과
924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성북구	일부개정	조례	제1103호	2016.3.1	2016.3.1	사회적경제과
925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중랑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랑구	제정	조례	제995호	2013.5.23	2013.5.23	일자리경제과
926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타법개정	조례	제6061호	2016.1.7	2016.1.7	사회적경제담당관
927	협동조합	순창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순창군	제정	조례	제2241호	2014.4.10	2014.4.10	지역경제
928	협동조합	양구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양구군	제정	조례	제2017호	2013.8.6	2013.8.6	경제관광과 투자유치
929	협동조합	양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양산시	제정	조례	제1276호	2016.12.30	2016.12.30	경제기업과
930	협동조합	연천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연천군	제정	조례	제3411호	2017.9.14	2017.9.14	지역경제과
931	협동조합	완도군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	제정	조례	제2193호	2014.10.24	2014.10.24	일자리창출담당
932	협동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일부개정	조례	제911호	2016.9.13	2016.9.13	창조경제과
933	협동조합	울산광역시 중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	일부개정	조례	제712호	2014.12.29	2014.12.29	경제일자리과
934	협동조합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제정	조례	제1384호	2013.10.2	2013.10.2	
935	협동조합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원주시	일부개정	조례	제1474호	2016.1.8	2016.1.8	경제전략과
936	협동조합	의왕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의왕시	일부개정	조례	제1587호	2017.9.27	2017.9.27	기업지원과
937	협동조합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익산시	제정	조례	제1370호	2014.1.8	2014.1.8	민생경제과
938	협동조합	임실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실군	제정	조례	제2070호	2013.10.15	2013.10.15	지역경제과
939	협동조합	전라북도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일부개정	조례	제4457호	2017.9.22	2017.9.22	
940	협동조합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전주시	제정	조례	제3064호	2013.8.19	2013.8.19	사회적경제지원과

941	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일부개정	조례	제1781호	2016.12.30	2016.12.30	경제일자리정책과
942	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일부개정	조례	제1781호	2016.12.30	2016.12.30	경제일자리정책과
943	협동조합	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진주시	제정	조례	제1114호	2014.3.5	2014.3.5	지역경제과
944	협동조합	진천군 협동조합 지원 조례	진천군	제정	조례	제2315호	2014.1.7	2014.1.7	경제과
945	협동조합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창원시	일부개정	조례	제826호	2015.12.28	2015.12.28	경제기업사랑과혁신위
946	협동조합	춘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춘천시	제정	조례	제1020호	2013.5.9	2013.5.9	경제과
947	협동조합	충주시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충주시	제정	조례	제1173호	2013.8.2	2013.8.2	경제과
948	협동조합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충청북도	일부개정	조례	제3760호	2015.3.27	2015.3.27	
949	협동조합	통영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통영시	제정	조례	제1250호	2017.4.10	2017.4.10	지역경제과
950	협동조합	파주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파주시	일부개정	조례	제1220호	2015.7.28	2015.7.28	지역경제과
951	협동조합	함안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함안군	일부개정	조례	제2336호	2017.1.9	2017.1.9	지역경제담당